

2025. 교육공무원 평정업무 처리요령
(중등교원·교육전문직원)

<표지가 완성되면 이 페이지는 교체됩니다>



CONTENTS

I. 다면평가 및 근무성적 평정(전체)	1
[자료 1.1.1] 평정사항	10
[자료 1.2] 평정인원 배분표	15
[자료 1.3] 등급별 평정점 배분표	16
II. 명부 작성	17
[자료 2.1] 승진후보자 평정점 일람표	21
III. 근무성적 평정(명부작성대상자)	22
IV. 경력 평정(명부작성대상자)	24
[자료 4.1] 경력의 등급 및 종별	28
[자료 4.2] 기본경력 평정점 조건표	29
[자료 4.3] 초과경력 평정점 조건표	30
V. 연수성적 평정(명부작성대상자)	31
[자료 5.1] 연구대회 입상실적 참고자료	37
[자료 5.2] 전국 교육연구대회 일람표	39
[자료 5.3] 2023. 경남 교육연구대회 일람표	40
VI. 가산점 평정[명부작성대상자]	41
[자료 6.1] 교육부 지정 연구·시범·실험학교 일람표	56
[자료 6.2] 교육감 지정 연구·시범·실험학교 일람표	58
[자료 6.3] 교육실습 대용학교·협력학교 일람표	66
[자료 6.4] 도서·벽지·준벽지 교육기관 일람표	69
[자료 6.5] 농어촌학교 등 일람표	70
[자료 6.6] 특수교육 일람표	72
VII. 행정 사항	74
[자료 7.1] 평정업무 기관번호(공립)	81
[자료 7.2] 평정업무 기관번호(사립)	83
[부록]	109
교육공무원승진규정	111
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중등)	133



CONTENTS

서 식

<서식 1> 근무성적 평정결과 보고서	84
<서식 1.1> 교감/장학사/교육연구사 근무성적 평정표	85
<서식 1.1.1> 교감/장학사/교육연구사 자기실적 평가서	86
<서식 1.1.2> 교감 교육경력 평정자료	87
<서식 1.1.3> 교감/장학사/교육연구사 근무성적평정 확인자료	88
<서식 1.1.4> 중학교 교감 근무실적 평정자료	89
<서식 1.2> 교사 다면평가 합산표	90
<서식 1.2.1> 정성평가 방법에 따른 교사 다면평가표	91
<서식 1.2.2> 정성평가 평가자별 평가표	92
<서식 1.2.3> 정성평가 평가요소별 집계표	93
<서식 1.2.4> 정량평가 방법에 따른 교사 다면평가표	94
<서식 1.2.5> 서약서	95
<서식 1.3> 교사 근무성적 평정표	96
<서식 1.3.1> 교사 자기실적 평가서	97
<서식 1.3.2> 파견교사 근무성적 평정자료	98
<서식 1.4> 교사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표	99
<서식 2.1> 교장/장학관/교육연구관 승진후보자 명부	100
<서식 2.2> 교감 승진후보자 명부	101
<서식 3> 종합 평정표	102
<서식 4> 경력 평정표	103
<서식 4.1> 휴직기간 경력인정 확인서	104
<서식 5> 연수성적 평정표	105
<서식 6.1> 경력 가산점 평정표	106
<서식 6.2> 실적 가산점 평정표	107
<서식 6.3> 농어촌 가산점 평정표	108

교육공무원 평정업무 처리요령

경상남도교육청(중등교육과)

I

다면평가 및 근무성적 평정(전체)

1. 평정 기준 (규정 제16조, 제28조의2)

- 1) 평정시기 : 매학년도 종료일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실시 (규정 제19조)
- 2) 평정사항 : 근무실적, 근무수행능력, 근무수행태도를 평가함
교감[자료 1.1.1], 장학사/교육연구사[자료 1.1.2], 교사[자료 1.1.3]
- 3) 평정자는 대상자의 자기실적평가서를 참작하여 평정함
- 4) 교사는 다면평가를 실시함[자료1.1.4][자료1.1.5]

2. 대상자 : 교감, 장학사/교육연구사, 교사

- 1) 평정학년도(3.1.~다음년도 2월말일)에 2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은 평정해야 함
- 2) 원로교사, 보건교사, 특수교사, 실기교사는 일반교사에 포함하여 평정함
(중등교육과-28511, 2014.7.21.)
- 3) 영양교사, 전문상담(순회)교사, 사서교사는 일반교사와 분리하여 평정함
- 4) 2월 말일 퇴직(면직)자는 근무성적을 평정하고, 2월 말일 전 퇴직(면직)자는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다면평가만 실시함

3. 평정자, 확인자 및 조정자(매년 실시하는 근무성적평정) (규정 제18조)

- 1) 평정자와 확인자는 동일인이 되어서는 아니 됨 (인사관리규정 제6조)
- 2) 일반적인 경우

기관별		대상자		평정자	확인자	조정자
교육기관	학 교	교사	중	교감	교장	부교육감
			고	교감	교장	
		교감		교장	부교육감	
	직속기관	교육연구사		인사업무 부(과)장	원장	
교육행정기관	도교육청	장학사/교사		소속 과장	부교육감	부교육감
	교육지원청	장학사/교사		인사업무 국(과)장	교육장	
교육연구기관	직속기관	교육연구사		인사업무 부(과)장	원(관)장	

※ 교육행정기관의 교사는 전문상담교사 및 특수교사

3) 특수한 경우(교감/과장/부장이 없는 기관)

기관별	대상자	평정자	확인자	조정자
중학교	교사	교장	교육장	교육지원청국(과)장
고등학교	교사	교장	중등교육과장	부교육감
예술교육원 해봄	교육연구사	교육장	부교육감	

4) 통합운영학교 교사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각각 겸임교감과 겸임교장임

5) '경상남도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 확인 및 조정위원회 규정'에 의거 경상남도 교육청 소속 직속기관 분원 근무 교육연구사의 근무성적 평정은 2019학년도 부터는 본원에 포함하여 평정함(관련 : 중등교육과-10430. 2017.3.17.)

4. 평정의 예외 (규정 제20조, 제28조의5)

1) 평정제외자

- ① 휴직, 직위해제, 기타 사유(휴가, 교원특별연수 등)로 평정학년도에 2개월 미만 근무한 사람(규정 제20조제1항)
- ② 10개월을 초과하는 연수나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외의 기관에의 파견 사유로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규정 제20조제2항)
- ③ 2월 27일 이전 퇴직(면직)한 사람, 단 윤년인 경우 2월 28일 이전 퇴직(면직)한 자
- ④ 수석교사 : 직위가 다르므로 평가 대상자와 평가자에서 모두 제외

2) 평정해당자(겸임/연수외 파견) : 다음의 경우 근무기관의 장은 1월 3일(금)까지 소속 기관의 장에게 평가/평정 자료를 통보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겸임/파견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정함

- ① 2개월 이상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다른 직위를 겸임 근무한 경우(규정 제20조제3항)
- ② 2개월 이상 연수 이외의 사유로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파견 근무한 경우
- ③ 타시도 간 교원 교환 근무자

3) 대상자가 신규 임용된 경우 : 2개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 정기 평정일에 평정해야 함

4) 교사로 강임된 자가 승진 임용된 경우 : 강임 되기 이전의 직위에 있어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즉시 평정해야 함

5) 상위의 교원자격을 취득한 때 : 그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에 상위의 교원자격 취득 이전의 평정을 참작하여 평정해야 함

5. 등급별 평정인원 배분 (규정 제21,40조, 제28조의6)

1) 평가자, 평정자, 확인자 각각은 대상자들을 비율에 맞게 평가/평정해야 함

등급	평정점	비율	인원
수	95점 이상	30%	배분표 활용 [자료1.2]
우	90점 이상 95점 미만	40%	
미	85점 이상 90점 미만	20%	
양	85점 미만	10%	

- ① 양에 해당자가 없거나 그 비율 이하일 때 양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이 경우 양의 비율은 미에 가산함(규정 제21조제1항)
- ② 주의 : 양으로 평정된 자는 6개월간 승급이 제한됨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 2) [자료 1.2] 평정인원 배분표 활용 : 복수교감은 점수를 달리하여 둘 다 수로 평정할 수 있음
- 3) 평정 후 <서식 1> 근무성적 평정결과 보고서 작성 제출

6. 주체별 평정만점 및 반영비율

대상자	다면평가자	평정자	확인자	근무성적	조정점
교감 등	•	100점 (50%)	100점 (50%)	100점 (100%)	100점
교사	100점 (40%)	100점 (20%)	100점 (40%)	100점 (100%)	100점

7. 교감 등의 근무성적 평정

- 1) 근무성적 평정표 작성 <서식 1.1>

대상자		평정 주체	평정요소				평 정 점	환 산 점	총 점	조 정 점	순 위
			태도	연구	지원	행정					
소속	성명		20	40	20	20					
		평정자							미기재	미기재	미기재
		확인자									

- ① [평정점] : 대상자를 100점 만점으로 평정함 (규정 제28조의7)
 - 평정자와 확인자 각각은 분포비율을 지켜 평정해야 함 (규정 제21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지 아니하여야 함 (규정 제21조)
 - 공정한 평정을 위하여 <평정점 배분표>를 적용함 (도교육청 방침)
- ② [환산점] : 평정자와 확인자 각각 [평정점]에 0.5를 곱한 값
- ③ [총점] : 평정자의 [환산점] + 확인자의 [환산점] (규정 제22조)
- ④ [총점], [조정점], [순위] : 미기재
- 2) **근무성적평정확인위원회** (승진규정 제22조)
 - ① 확인자가 교감 등의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조정**를 거쳐야 함
 - ② 교육장이 확인자인 경우 : 교육장이 5~7인으로 구성

- ③ 부교육감이 확인자인 경우 : 교육감이 5~7인으로 구성(위원장 : 부교육감)
- 3)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 조정 (규정 제24조)
 - ① 교육감이 5~7인으로 구성(위원장 : 부교육감)
 - ② 조정 대상자 : 중등학교 교감, 장학사, 교육연구사 (중등12110-1479, 2002.5.23.)
 - ③ 교육전문직원은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직속기관 포함)을 분리하여 조정함
 - ④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교감 등의 평정점을 조정할 수 있음
 - 평정대상 교감등 전원의 분포비율
 - 소속기관간 및 보조기관간의 균형
 - 기타 근무성적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⑤ 교육감은 조정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요구 가능

8. 교사 다면평가 절차 및 방법 (규정 제28조의2~제28조의9)

- 1) 사전교육 : 사전교육을 통해 다면평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갖도록 함
 - ① 중점내용 : 다면평가 의의, 내용, 일정, 절차 및 방법, 결과 처리 등
 - ② 강조사항 : 부실정보, 편견/주관, 학연/지연, 情實/私感, 보안, 정보유출
- 2) 다면평가(제28조의4)
 - ①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 :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정함.
 - ② 다면평가자 선정 인원(대통령령 제33528호, 2023.6.13.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
 - 평가대상자가 15명 이하인 경우: 3명 이상
 - 평가대상자가 16명 이상 20명 이하인 경우: 4명 이상
 - 평가대상자가 21명 이상 25명 이하인 경우: 5명 이상
 - 평가대상자가 26명 이상 30명 이하인 경우: 6명 이상
 - 평가대상자가 31명 이상 35명 이하인 경우: 7명 이상
 - 평가대상자가 36명 이상인 경우: 8명 이상
 - ③ 다면평가관리위원회 : 근무성적의 확인자가 평가대상자의 동료 교사 중 3명 이상 7명 이하로 위원 구성·운영(교육지원청에서는 관내 교사로 구성)
 - ④ 다면평가관리위원회 위원장 : 근무성적의 평정자
 - ⑤ 다면평가관리위원회의 업무
 - 다면평가자의 선정기준 마련
 - 정성(定性)평가 학습지도 평가지표의 추가·삭제 및 수정(단, 영양, 보건, 전문상담, 사서 교사 등 학생에 대한 수업이 주된 업무가 아닌 평가대상자에 대한 평가지표로 한정)
 - 정량(定量)평가에 따른 다면평가 평가지표의 추가·삭제 및 수정
 - ⑥ 평가자는 서약서 작성 제출 <서식 1.2.5>

- ⑦ 2월 27일 퇴직(면)한 사람, 단, 윤년인 경우 2월 28일 퇴직(면직)한 교육 공무원 중 실제 근무 기간이 2개월 이상인 자에 대해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다면평가 개별 실시

3) 정성평가 방법에 따른 교사 다면평가표 작성 <서식 1.2.1>

대상자		태도	학습	생활	전문성	업무	평가점 100	환산점 32
No	성명	10	40	30	5	15		
1	홍길동	9.4	39.7	28.3	4.0	14.5	95.9	30.69
2	홍길서	9.8	39.9	30.0	4.9	15.0	99.6	31.87
3	홍길남	9.4	40.0	27.4	4.1	14.8	95.7	30.62

- ① 수업을 담당하지 않는 대상자의 [학습] : 학생들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 되는 각종 교육자료와 교육활동으로 평가하되 교과교사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평가함 ※ 예시: 학습(40)=생활(30)×1.3+1
- ② [평가점] : 평가자 각각은 반드시 분포비율을 지켜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지 않아야 함(규정 제28조의6제1,2항)
- ③ [환산점] : [평가점]×0.32(32%)

4) 정량평가 방법에 따른 교사 다면평가표 작성 <서식 1.2.4>

- ※ 정량평가는 정성평가 방식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대상자가 제출한 정량 자료를 다면평가 위원들이 심의하여 점수를 인정함
- ※ 다면평가 반영 시 특별휴가(육아시간 등) 사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할 것(국가공무원법 제71조④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44조④항 준용)
- ※ 교사 정량평가 기준 및 채점표는 학교별로 구안하여 활용

대상자		학습	생활	전문성	업무	평가점 100	환산점 8
No	성명	30	30	10	30		
1	홍길동	29.4	29.7	8.3	29.0	96.4	7.71
2	홍길서	28.3	27.5	9.2	28.6	93.6	7.49
3	홍길남	29.4	30.0	7.4	29.1	95.9	7.67

- ① 수업을 담당하지 않는 대상자의 [학습] 점수 : [생활] 점수를 그대로 반영함
- ② [평가점] : 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것
- ③ [환산점] : [평가점]×0.08(8%)

5) 교사 다면평가 합산표 <서식 1.2>

교사 다면평가 합산표								
① 평가기간		② 확인자			③ 평정자			
. . .부터 . . .까지		직위 성명 (인)			직위 성명 (인)			
소속		성명		평가 종류		점수	④ 환산점	⑤ 총점
O O O		홍길동		다면평가	정성	00.0	00.000	00.00
					정량	00.0	00.000	

- ① [점 수] : 앞 단계 정성평가, 정량평가의 평가점을 그대로 모은 것
 ② [환산점] : 앞 단계 정성평가, 정량평가의 환산점을 그대로 모은 것
 ③ [총 점] : 정성과 정량의 환산점을 합산한 것(소수셋째자리에서 반올림)

9. 교사 근무성적평정표 작성 <서식 1.3>

교사 근무성적평정표										
① 평정기간			② 확인자				③ 평정자			
. . .부터 . . .까지			직위 성명 (인)				직위 성명 (인)			
소속		평정사항	근무수행 태도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				⑨ 평 정 점	⑩ 환 산 점	⑪ 총 점
		평정요소	④ 교육 공무원으로 서의 태도 (10점)	⑤ 학습 지도 (40점)	⑥ 생활 지도 (30점)	⑦ 전문성 개발 (5점)	⑧ 담당 업무 (15 점)			
		평정자	10.0	39.5	29.5	5.0	15.0	99.0	19.80	58.60
		확인자	10.0	39.0	30.0	4.0	14.0	97.0	38.80	

- 1) [평정점] : 대상자를 100점 만점으로 평정함 (규정 제28조의7)
 ① 평정자와 확인자 각각은 분포비율을 지켜 평가해야 함 (규정 제28조의6)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지 아니하여야 함 (규정 제28조의6)
 ③ 수업을 담당하지 않는 대상자의 [학습] : 학생들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되는 각종 교육자료와 교육활동으로 평가하되 교과교사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평가함.
 2) [환산점] : [평정점]에 평정자는 0.2, 확인자는 0.4를 곱한 값
 3) [총점] : 만점은 60점 = 평정자(20%) + 확인자(40%) (규정 제28조의7)

10. 교사 다면평가 및 근무성적의 합산과 조정 <서식 1.4>

교사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표							
① 평정기간		② 평정 분포비율		③ 조정자	④ 확인자	⑤ 평정자	
. . .부터 . . .까지		◦ 수(95점 이상) 30% ◦ 우(90점 이상 95점 미만) 40% ◦ 미(85점 이상 90점 미만) 20% ◦ 양(85점 미만) 10%		직위 성명 (인)	직위 성명 (인)	직위 성명 (인)	
소속 성명		점수 및 순위		⑥ 환산점	⑦ 총점	⑧ 조정점	⑨ 순위
		평정 종류					
○○○	홍길복	근무성적 평정	평정자	19.80	96.60	95.90	5(수)
			확인자	38.80			
		다면평가		38.00			

- 1) [총점] : 100점 = 다면평가자(40%) + 평정자(20%) + 확인자(40%) (규정 제28조의7)
 - ① 반드시 분포비율을 지켜야 함 (규정 제28조의6)
 -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지 아니하여야 함 (규정 제28조의6)
 - ③ 최고 100점이 안 될 수도 있음. (특정 대상자를 모두가 100점 평가한 경우에만 100)
 - ④ 등차 점수로 산출되지 않음. (들쭉날쭉한 세 값에 비율마저 다른 합산 값들이므로)
- 2) [조정점] : 조정위원회가 제정한 <평정점배분표>를 적용하여 점수를 배분함 (교직 발전기획과-3801, 2008.9.17)
- 3) 근무성적평정 및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 (규정 제28조의8)
 - ① 평정자와 확인자가 교사의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의 결과를 합산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야 함
 - ② 도교육청 : 교육감이 5~7인으로 구성(위원장 : 부교육감)
 - ③ 교육지원청 : 교육장이 5~7인으로 구성(위원장 : 교육국장/교육지원과장)
 - ④ 조정대상자
 - 도교육청 : 고등학교 교사 및 전문상담순회교사
 - 교육지원청 : 중학교 교사
 - ⑤ 위원회는 규정 제24조를 준용하여 교사의 평정점을 조정할 수 있음

11. 감점 처리 (중등교육과-62829, 2009.11.25.)

- 1) 징계 및 행정처분의 종류와 건수에 따라 감점함(승진규정 적용 이후 부가 조치)
- 2) 행정감사 결과 처분에 따른 감점 기준 (감사16160-173, 2003.4.28.)

강등·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	경고	주의
1건당 -5	1건당 -3	1건당 -1	1건당 -0.5	1건당 -0.3	2건 -0.10 (추가건당 -0.05)

- 3) 적용방법 : 건당 적용하되, 주의 처분이 1건일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4) 적용학년도 : 행정행위 처분일이 포함된 학년도의 평정에 적용함
- 5) 적용단계 및 처리방법

① 교감 등 : 평정자가 [평정점]에서 감점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환산함

소 속	성 명	평정주체	~	평정점	환산점	총점	조정점	순위
○○○	홍길북	평정자	~	99.85 100 (주의 3건)	49.93	미기재	미기재	미기재
		확인자	~					

② 교사 : [조정점]만 감점하고, 순위와 (평어)는 그대로 둠

소 속	성 명	평 정		환산점	총점 (합산점)	조정점	순 위
○○○	홍길북	근무성적	평정자	28.47	94.84	94.8	19(우)
		평정	확인자	37.96		94.9 (주의 2건)	
		다면평가		28.41			

- ③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시에는 교사, 교감, 장학사(교육연구사) 모두 조정점에서 감점 처리함(감사관-2634, 2016.4.18.)
- ④ 4대 비위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자 : 상위 30% 근평 부여 금지(감사관-2634, 2016.4.18.)

12. 기타사항

- 1) 평정 요소별 평정점

① 평정 요소별 평정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8조) 안에서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가능 (규정 제17조)

② 최저 1점, 최고 만점 사이로 하고,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소수 첫째자리까지
평정점을 줄 수 있음 (교직01101-788, 1987.12.22)

2) 평정결과의 보고 : 확인자는 10일 이내에 보고 (규정 제25조, 제28조의9)

3) 평정결과의 활용 : 전보, 포상 등 인사관리에 반영 (규정 제27조, 제28조의9)

4) 평정결과의 공개 (규정 제26조, 제28조의9)

① 평정 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조정점을 알려
주어야 함

② 공개처 및 담당 : 중학교 교사는 소속 교육지원청 인사담당 장학사,
고등학교 교사는 도교육청 인사담당(복무) 장학사

③ 업무메일로 신청하면, 5.1. 이후 확인 가능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

‘근평 결과 공개 간접강제’관결 관련 업무지침 알림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정책과-1896, 2007. 11. 15.)

-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최종 근무성적 평정점을 알려주어야 함
- 공개 내용 : 평어, 총점, 조정점, 순위 중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내용
- 공개 주체 : 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 유의 사항 : 청구인 ‘본인’의 정보에 한해 공개하며, 청구와 관계없이 일괄공지 하거나,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음

☞ 특별한 사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최종근무성적평정점을 조정하고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등 일련의 과정
중에 최종근무성적평정점을 공개할 경우 인사업무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3월 1일부터 4월 말일까지)

5) 국립학교/다른 시도 전출 등 대상자가 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
된 때 : 확인자는 다면평가표, 근무성적평정표,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합산
표를 지체 없이 해당 기관에 이관해야 함(규정 제20조, 제82조의5제2항)

[자료 1.1.1]

평정사항(교감)

구분	평정사항	평정요소	평정내용
1. 교감	가. 근무수행 태도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태도 (20점)	가) 교육자로서 품성을 갖추고 직무에 충실 한가?
			나) 공직자로서 사명감과 직무에 관한 책임 감을 갖고 솔선수범하는가?
	나.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 능력	1) 교육활동 및 교육 연구 지원(40점)	가) 학교가 처한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적절한가?
			나) 교사와 학생의 교육활동에 대한 교육적 배려가 적절한가?
			다) 교사의 자질·능력·경험에 따라 학년 및 업무를 적절하게 배치하고 지원하는가?
			라) 교원연구·연수 활동의 추진 및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는가?
		2) 교원지원(20점)	가) 교사들에게 필요한 장학활동의 추진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실시하는가?
			나) 교직원의 복무·복지후생 등에 관하여 필요한 배려를 하고 있는가?
			다) 수업개선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효율적 으로 지원하는가?
			라) 교원의 인사와 관련한 의견을 적절하고 공정하게 반영하고 있는가?
		3) 행정·사무관리 (20점)	가) 사무처리가 합리적이고 정확하며 적절한가?
			나) 교내의 모든 규정을 적절히 적용하며 잘 정비하는가?
			다) 교육시설·설비를 교육활동에 효과적으로 운영하는가?
			라) 학교 안전관리 및 보안에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는가?

[자료 1.1.2]

평정사항(장학사/교육연구사)

구분	평정사항	평정요소	평정내용
2. 장학사· 교육연구사	가. 근무수행 태도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태도 (20점)	가) 교육자로서 품성을 갖추고 직무에 충실 한가?
			나) 공직자로서 사명감과 직무에 관한 책임 감을 갖고 솔선수범하는가?
	나.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 능력	1) 교육활동 및 교육 연구 지원(40점)	가) 교육정책의 추진 및 교육활동의 지원이 적극적이고 합리적인가?
			나) 장학(연구)업무를 조직적으로 기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는가?
			다) 교육현장에 필요한 장학(연구)활동을 자발적으로 추진하는가?
			라) 장학(연구)활동에 대한 현장의 반응은 적정한가?
		2) 교원지원(20점)	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이 적절 하고 공정한가?
			나) 교원의 장학(연구)활동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가?
			다) 교육현장에 대한 장학(연구)활동의 자세가 바람직한가?
			라) 장학(연구)활동의 결과를 적절하게 평가 하고 개선하는가?
		3) 행정·사무관리 (20점)	가) 모든 규정을 숙지하고 적절히 적용하는가?
			나) 적극적이고 봉사적인 공무수행을 하는가?
			다) 사무처리가 합리적이고 정확하며 공정 한가?
			라)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수행능 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가?

[자료 1.1.3]

근무성적 평정사항(교사)

구분	평정사항	평정요소	평정내용
교사	1. 근무수행 태도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태도(10점)	1) 교육자로서 품성을 갖추고 직무에 충실한가?
			2) 공직자로서 사명감과 직무에 관한 책임감을 갖고 솔선수범하는가?
	2. 근무실적 및 근무 수행능력	가. 학습지도(40점)	1) 수업교재 연구를 충실히 하는가?
			2) 학생 수준에 적합한 수업계획을 수립하는가?
			3)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가?
			4) 학생의 능력과 수준에 적합한 질문을 제시하는가?
			5) 학생들을 학습활동이나 과제 수행에 적절히 참여시키는가?
			6) 학생 특성과 요구에 적합한 수업자료 및 매체를 활용하는가?
			7) 학생의 이해도와 참여도를 수시로 점검하는가?
			8) 평가 결과를 수업개선을 위한 자료로 적극 활용하는가?
		나. 생활지도(30점)	1)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하는가?
			2) 상담을 통해 학생이 당면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가?
			3) 학생의 적성과 특기를 고려하여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는가?
			4) 학생들이 학급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려 생활 하도록 지도하는가?
			5)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가?
			6) 학생들이 올바른 기본생활습관(언어, 행동, 예절, 질서 등)을 기르도록 지도하는가?
			7) 학생들이 건전한 가치관과 도덕성을 갖추도록 지도하는가?
		다. 전문성 개발(5점)	1)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활동에 적극적인가?
			2)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수활동에 적극적인가?
		라. 담당업무(15점)	1) 담당 업무를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는가?
			2) 담당 업무를 창의적으로 개선하고 조정하는가?

※ 학습지도 평정내용은 비교과 교사에 한하여 학교자율로 수정 및 추가할 수 있음

[자료 1.1.4]

교사 다면평가 평정사항(정성평가)

구분	평가사항	평가요소	평가내용
교사	1. 근무수행 태도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태도(10점)	1) 교육자로서 품성을 갖추고 직무에 충실한가?
			2) 공직자로서 사명감과 직무에 관한 책임감을 갖고 솔선수범하는가?
	2.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 능력	가. 학습지도(40점)	1) 수업교재 연구를 충실히 하는가?
			2) 학생 수준에 적합한 수업계획을 수립하는가?
			3)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가?
			4) 학생의 능력과 수준에 적합한 질문을 제시하는가?
			5) 학생들을 학습활동이나 과제 수행에 적절히 참여 시키는가?
			6) 학생 특성과 요구에 적합한 수업자료 및 매체를 활용하는가?
			7) 학생의 이해도와 참여도를 수시로 점검하는가?
			8) 평가 결과를 수업개선을 위한 자료로 적극 활용 하는가?
		나. 생활지도(30점)	1)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하는가?
			2) 상담을 통해 학생이 당면한 문제를 원만히 해결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가?
			3) 학생의 적성과 특기를 고려하여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는가?
			4) 학생들이 학급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려 생활 하도록 지도하는가?
			5)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가?
			6) 학생들이 올바른 기본생활습관(언어, 행동, 예절, 질서 등)을 기르도록 지도하는가?
			7) 학생들이 건전한 가치관과 도덕성을 갖추도록 지도하는가?
		다. 전문성개발(5점)	1)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활동에 적극적인가?
			2)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수활동에 적극적인가?
		라. 담당업무(15점)	1) 담당 업무를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는가?
			2) 담당 업무를 창의적으로 개선하고 조정하는가?

[자료 1.1.5]

교사 다면평가 평정사항(정량평가)

구분	평가사항	평가요소	평가내용
교사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	가. 학습지도 (30점)	1) 주당 수업시간
			2) 수업공개 횟수(연구수업, 학부모 공개수업)
			3) 교내외 수업컨설팅 횟수
			4) 교내외 교과연구회 활동 참여 실적
		나. 생활지도 (30점)	1) 학생 또는 학부모 상담실적
			2) 생활지도 곤란도(담임/비담임)
			3) 학년 곤란도(상/중/하)
		다. 전문성개발 (10점)	1) 교과서 및 지도서 집필
			2) 장학 자료 개발
			3) 공연 및 전시회 참가
			4) 학생경연대회 지도
			5) 학술지 게재
			6) 교육관련 학회 등 활동 실적
		라. 담당업무 (30점)	1) 업무 곤란도(상/중/하)
			2) 업무 추진(보직/학년대표/교과대표/일반교사)

※ 평가내용은 학교 자율로 수정 및 추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세부 기준은 해당 학교에서 정함

[자료 1.2]

평정인원 배분표

대상자	수	우	미	양	대상자	수	우	미	양	대상자	수	우	미	양
1	1				41	12	17	8	4	81	24	33	16	8
2	1	1			42	13	17	8	4	82	25	33	16	8
3	1	1	1		43	13	17	9	4	83	25	33	17	8
4	1	2	1		44	13	18	9	4	84	25	34	17	8
5	2	2	1		45	14	18	9	4	85	26	34	17	8
6	2	2	1	1	46	14	18	9	5	86	26	34	17	9
7	2	3	1	1	47	14	19	9	5	87	26	35	17	9
8	2	3	2	1	48	14	19	10	5	88	26	35	18	9
9	3	3	2	1	49	15	19	10	5	89	27	35	18	9
10	3	4	2	1	50	15	20	10	5	90	27	36	18	9
11	3	5	2	1	51	15	21	10	5	91	27	37	18	9
12	4	5	2	1	52	16	21	10	5	92	28	37	18	9
13	4	5	3	1	53	16	21	11	5	93	28	37	19	9
14	4	6	3	1	54	16	22	11	5	94	28	38	19	9
15	5	6	3	1	55	17	22	11	5	95	29	38	19	9
16	5	6	3	2	56	17	22	11	6	96	29	38	19	10
17	5	7	3	2	57	17	23	11	6	97	29	39	19	10
18	5	7	4	2	58	17	23	12	6	98	29	39	20	10
19	6	7	4	2	59	18	23	12	6	99	30	39	20	10
20	6	8	4	2	60	18	24	12	6	100	30	40	20	10
21	6	9	4	2	61	18	25	12	6	101	30	41	20	10
22	7	9	4	2	62	19	25	12	6	102	31	41	20	10
23	7	9	5	2	63	19	25	13	6	103	31	41	21	10
24	7	10	5	2	64	19	26	13	6	104	31	42	21	10
25	8	10	5	2	65	20	26	13	6	105	32	42	21	10
26	8	10	5	3	66	20	26	13	7	106	32	42	21	11
27	8	11	5	3	67	20	27	13	7	107	32	43	21	11
28	8	11	6	3	68	20	27	14	7	108	32	43	22	11
29	9	11	6	3	69	21	27	14	7	109	33	43	22	11
30	9	12	6	3	70	21	28	14	7	110	33	44	22	11
31	9	13	6	3	71	21	29	14	7	111	33	45	22	11
32	10	13	6	3	72	22	29	14	7	112	34	45	22	11
33	10	13	7	3	73	22	29	15	7	113	34	45	23	11
34	10	14	7	3	74	22	30	15	7	114	34	46	23	11
35	11	14	7	3	75	23	30	15	7	115	35	46	23	11
36	11	14	7	4	76	23	30	15	8	116	35	46	23	12
37	11	15	7	4	77	23	31	15	8	117	35	47	23	12
38	11	15	8	4	78	23	31	16	8	118	35	47	24	12
39	12	15	8	4	79	24	31	16	8	119	36	47	24	12
40	12	16	8	4	80	24	32	16	8	120	36	48	24	12

※ 복수교감의 평정 : 점수를 달리하여 둘 다 수로 평정할 수 있음 (교직01540-513, 1987.9.5.)

※ 계산 : 대상자수에 분포비율을 곱하여 정수로 환산하되 소수는 다음과 같이 처리함

1. 반올림함(단, 5명까지는 예외)
2. 대상자수를 초과하면 가장 작은 소수를 버림
3. 두 항목 0.5일 때는 상위항목을 올림
4. 모든 항목이 0.4 이하일 때는 0.4를 올림

[자료 1.3]

등급별 평정점 배분표

1. 등급별 최고점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최고점	수	우	미	양
	100	94.9	89.9	84.9

2. 등급별 평정인원수에 따라 최고점에서 차감할 점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등급별 인원수	수	우	미	양
1명	0.0	0.0	0.0	0.0
2~5명	0.9	0.9	0.9	1.0
6명	0.8	0.8	0.8	1.0
7명	0.7	0.7	0.7	1.0
8명	0.6	0.6	0.6	1.0
9명	0.5	0.5	0.5	•
10명	0.5	0.4	0.4	•
11~12명	0.4	0.4	0.4	•
13~16명	0.3	0.3	0.3	•
17~24명	0.2	0.2	0.2	•
25명	0.2	0.1	0.1	•
26~50명	0.1	0.1	0.1	•

3. 최고점에서 차감한 점수들로 구성된 <평정점 배분표>를 제정하여 활용한다.

* 교감 등 : <서식 1.1> 근무성적 평정표의 [총점]에 기재함

* 교사 : <서식 1.4> 합산표의 [조정점]에 기재함

4. (적용예시) : 평정 대상자가 10명인 기관의 평정점 산출 및 배분

* 등급별 인원수는 강제배분법에 따라 수 3명, 우 4명, 미 3명으로 배분됨

* 1(수)의 조정점은 최고 100점이 되고,

* 2(수)의 조정점은 0.9를 차감한 99.1점이 되고,

* 3(수)의 조정점은 또 0.9를 차감한 98.2점이 되고,

* 4(우)의 조정점은 최고 94.9점이 되고,

* 5(우)의 조정점은 0.9를 차감한 94.0점이 되고,

* 6(우)의 조정점은 또 0.9를 차감한 93.1점이 되고,

* 7(우)의 조정점은 또 0.9를 차감한 92.2점이 되고,

* 8(미)의 조정점은 최고 89.9점이 되고,

* 9(미)의 조정점은 0.9를 차감한 89.0점이 되고,

* 10(미)의 조정점은 또 0.9를 차감한 88.1점이 된다.

1. 관련근거

- 1) 교육공무원승진규정(대통령령 제33528호, 2024.3.1.)
- 2) 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경상남도교육청고시 제2024-20호, 2024.07.10.)
- 3) 초·중등교육법(제21조)
- 4) 교육공무원법(제2,10,13,15조)
- 5) 교육공무원임용령(제14,15,16조)
- 6)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제1,2,5,6,7,8,9,12,15,31조)
- 7)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제6조)
- 8)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4조)
- 9) 교원연수이수실적의기록 및 관리요령(제4,5조)
- 10) 연구대회관리에관한훈령(제2,5조)

2. 일러두기

- 1) 이 문서에서 ‘규정’이라 하면 위의 1) 또는 2)를 말함
- 2) 위의 두 규정과 이 요령을 숙독하여 정확하게 평정해야 함
- 3) 요령을 읽다가 애매한 사항은 규정부터 해독하고 질의하여 처리해야 함
- 4) 평정은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별, 자격별, 직위별로 실시함
 - ※ 파견근무자는 근무기관이 아니라, 소속기관에서 평정함
- 5) 교감 등 : 교감/장학사/교육연구사를 통칭함
- 6) 해당직위 : 전직 이전의 직위도 포함하되(승진규정 제32조 2항),
 - ① 교육전문직원 경력이 있는 교감 : 교감자격 취득 이후로 한정(교사 직위 실적은 제외)
 - ② 교육전문직원 : 교감 등의 직위로 한정(교사 직위 실적은 제외)
- 7) 대상자의 NEIS 인사기록 등 실증에 따라 평정해야 함 : 확인 및 정비
 - ※ NEIS 인사기록 중 사진, 주소지, 생활근거지, 가족 관계 등을 현행화할 것
- 8) 대상자, 평정자 및 확인자는 서류작성에 착오가 없도록 해야 함
- 9) 이 평정업무 처리요령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소관 법령과 공문에 따름

3. 작성할 명부 : 직위별/자격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8개 명부를 작성함

승진	자격연수
① 교장승진후보자명부	⑤ 교감의 교장자격연수대상자명부
② 장학관승진후보자명부	⑥ 장학사(관)/교육연구사(관)의 교장자격연수대상자명부
③ 교육연구관승진후보자명부	⑦ 교사의 교감자격연수대상자명부
④ 교감승진후보자명부	⑧ 장학사/교육연구사의 교감자격연수대상자명부

4. 작성 절차 및 방법

- 1) 대상자 선정하기
- 2) 평정자와 확인자 구성하기
- 3) 대상자 평정하기 : 매 학년도 종료일 기준
- 4) 평정 결과에 따라 명부 작성 <서식 2.1> <서식 2.2>

5. 대상자 (규정 제2조)

- 1) 교장 자격증을 소지한 교감
 - 2) 장학관 자격기준에 달한 장학사(현 장학사로서 전문직 2년 이상 경력자)
 - 3) 교육연구관 자격기준에 달한 교육연구사(현 교육연구사로서 전문직 2년 이상 경력자)
 - 4) 교감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
 - 5) 교장 자격연수대상자 선정기준에 달한 교감
 - 6) 교장 자격연수대상자 선정기준에 달한 장학사/교육연구사
 - 7) 교감 자격연수대상자 선정기준에 달한 교사
 - 8) 교감 자격연수대상자 선정기준에 달한 장학사/교육연구사
- ※ 수석교사 : 명부작성대상자, 평정대상자, 다면평가대상자, 평가자 모두 아님(규정 제2조)
- ※ 교육공무원 승진임용의 제한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승진임용의 제한)
- ※ 2015.1.27. 「경상남도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기타 인사 현안 자료
- 중등 교감 승진/자격연수 명부의 기등재자 임용 계획(개선안) : 국립학교에서 교감 자격 취득자 및 교감 자격연수 지명자의 기등재자 원년 산정 방법 추가 개선

구분	당초 (2014.7.25.인사위원회)	결정사항
교감자격취득자	공립학교 전입 3년 이후부터	공립학교 전입 3년 이후부터
교감자격연수지명자	없음	공립학교로 전입하여 승진명부 등재 3년 이후부터

6. 평정자와 확인자(승진/자격연수 후보자 종합 평정표(102p)의 근무성적·경력·연수성적·가산점 평정)

※ 매년 실시하는 근무성적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1쪽에 있음

1) 일반적인 경우

기관별		대상자		평정자	확인자	조정자
교육기관	학 교	교사	중	교감	교장	교육지원청국(과)장 부교육감
			교	교감	교장	
		교감		교장	부교육감	
	직속기관	교육연구사	인사업무 부(과)장	원장		
교육행정기관	도교육청	장학사/교사	소속 과장		부교육감	
	교육지원청	장학사/교사	인사업무 국(과)장	교육장		
교육연구기관	직속기관	교육연구사	인사업무 부(과)장		원장	

※ 직속기관 분원의 교육연구사는 본원에 포함하여 평정함

2) 특수한 경우(교감/과장/부장이 없는 기관)

기관별	대상자	평정자	확인자	조정자
중학교	교사	교장	교육장	교육지원청국(과)장
고등학교	교사	교장	중등교육과장	부교육감
덕유학생교육원	교육연구사	원장	부교육감	
예술교육원 해봄	교육연구사	교육장	부교육감	

7. 평정하기 : 영역 및 배점 등 [자료 2.1]

평정영역			만 점		비 고
			교감 등	교사	
Ⅱ. 근무성적			100	100	교감 등 : 최근 3년 교사 : 최근 5년 중 3년
Ⅲ. 경력			70	70	최근 20년
Ⅳ. 연수성적	교육 성적	자격연수성적	9	9	최근 10년 2개월
		직무연수성적	6	18	
	연구 실적	연구대회입상실적 학위취득실적	3	3	
Ⅴ. 가산점		공통가산점			* 직무연수실적
		선택가산점			

1) 교감 등의 교장 자격연수대상자/승진후보자 평정점 : 188점(가산점 별도)

2) 교사의 교감 자격연수대상자/승진후보자 평정점 : 200점(가산점 별도)

8. 명부 작성

1) 평정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명부에 등재함

2) 동점자 순위결정 기준 (규정 제45조)

- 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 ② 현 직위에 장기근무한 자

- ③ 교육공무원으로서 계속 장기근무한 자
- ④ 위 기준으로도 순위가 가려지지 않을 경우에는 명부작성권자가 결정함
- 3) 중등 교감 승진대상자 명부의 기등재자 임용 계획(개선안)(2014.7.25. 경상남도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 ① 명부 순위 상위자 50% : 기등재자 50%
 - (단, 기등재자는 승진 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승진 임용(제청)할 수 있다.)
 - ② 기등재자 임용 순위 결정 방법
 - ㉠ 1순위: 교감자격취득년도가 빠른 자
 - ㉡ 2순위: 정년 잔여 연수가 짧은 자
 - ㉢ 3순위: 명부 순위 상위자

9. 기타사항

- 1) 명부의 작성 시기 : 매년 3월 31일 정기적으로 작성 (규정 제43조)
- 2) 명부의 조정 (규정 제44조)
- 3) 명부의 제출 (규정 제46조)
 - ① 명부작성권자는 명부작성 시기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
 - ② 명부를 조정한 경우 조정한 부분에 관하여도 또한 같음
- 4)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명부에서 삭제하고, 그 사유를 기재함 (규정 제47조)
 - ①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승진·강임·전직된 경우
 - ② 명부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 ③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승진임용의 제한)에 해당될 경우
- 5) 명부 순위의 공개 (규정 제48조)
 - ① 명부에 등재된 교육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명부작성권자는 본인의 명부 순위를 알려 주어야 함
 - ②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공개(자세한 내용은 공문으로 안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 6)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유의 사항(교육부주관(2024.3.), 시도교육청 교원인사 담당과장 회의 자료)
 -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근거하여 인사행정의 적법성·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승진희망자만을 대상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거나 승진포기원을 제출하였다는 사유로 승진 가능 배수 범위 산정 시 제외하지 않도록 함(※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또는 승진가능 범위 산정 시 승진 불원자도 포함할 것)
- 7) 중등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방식 개선사항(인사위-2023-02(2023.7.10.))

순	관련조항	현행기준(2023)	개정사항(2024)
1	최종점수	기준점수의 99.5%에 해당하는 점수	기준점수의 99.7%에 해당하는 점수

[자료 2.1]

승진후보자 평정점 일람표

평정영역			평정기준	상한점			
근무성적 평정점			교감 등: 최근 3년, 교사: 최근 5년중 유리한 최근 연도순(3년) (제1년도:34%, 제2년도:33%, 제3년도:33%)	100			
경력 평정점			기본경력 15년, 초과경력 5년	70			
연수 성적 평정점	교육 성적	자격연수성적	해당직위	9	30 (18)		
		직무연수성적	최근 10년 2개월 이내(단, 2017년부터 학년도 기준)	18(6)			
	연구 실적	연구대회입상실적	전국 1등급 1.50점, 2등급 1.25점, 3등급 1.00점 시도 1등급 1.00점, 2등급 0.75점, 3등급 0.50점	3			
		학위취득실적	박사 직무관련 3.00점, 기타 1.50점 석사 직무관련 1.50점, 기타 1.00점				
가산점 평정점	연구학교 등 근무경력 (실험/시범/대용/협력학교)		(공통)교육부 월 0.018점 교육청 월 0.0129점	1.00			
	파견 근무경력		(공통)재외국민교육기관 월 0.015점	0.50	0.50	1.80	
			남해분원/낙동강학생교육원/한국교육방송공사 (EBS)/진산분원/칠북분원/특수교육원 월 0.017점				0.40
			도내 교육/ 행정/연구기관	월0.0105점(2016.2.28.이전)			0.25
				월0.015점(2016.3.1.이후)			0.30
	도서/벽지 근무경력		월 가 0.042점, 나 0.034점, 다 0.025점	0.90			
			월 라 0.017점	0.60			
	준벽지 근무경력		2014.1.1.이후 월 0.0084점	0.30			
	농어촌학교 근무경력		1995.3.1.이후 월 0.015점 2009.1.1.이후 가 0.015점, 나 0.012점 2014.1.1.이후 가 0.018점, 나 0.015점, 다 0.012점 2016.1.1.이후 라 월 0.009점	1.25			
	창원과학고 근무경력		2011.3.1.이후 월 0.015점				
	마이스터고 근무경력		2011.9.1.이후 월 0.015점				
	교육활동우수교사		2016.3.1.이후 월 0.005점	0.06			
	도심지역 학교 등 근무경력		2017.3.1.이후 월 0.004점	0.48			
	특수학교(학급) 근무경력		월 0.018점(0.009점)	1.00			
	보직교사 경력		월 0.021점	1.25	1.25		
	장학사/교육연구사 경력		월 0.015점	0.75			
	담임/사감 경력		2012.9.1.이후 36월을 공제한 담임 경력 월 0.00595점	0.50			
	(공통)직무연수실적		연 0.08점	1.00			
	(공통)학교폭력예방대응실적		연 0.1점	1.00			
	교육연구대회		연 0.05점	0.20	0.5	0.80	
	영재교육실적		연 0.1점	0.20			
	발명교육실적		연 0.1점/연 0.05점	0.20			
	전국기능경기대회실적		금 0.10점, 은 0.05점, 동 0.025점	0.20			
	학력향상유공실적		연 0.05점	0.25			
	청소년단체지도실적		연 0.04점	0.074			
	경로효행실적		1회 0.10점	0.10			
	기술자격취득실적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1·2급 등	0.30			
			워드프로세서 2급, 3급, 컴활능력 3급 등	0.10			

※ 특수교육원(월 0.017점): 2023.3.1.이후 경력부터 적용

Ⅲ

근무성적 평정(명부작성대상자)

영역	만점		비고
	교감 등	교사	
근무성적	100	100	교감 등 : 최근 3년 교사 : 최근 5년 중 3년

1. 평정 절차 및 방법

- 1) 대상자 선정하기
- 2) 평정(학)년도 선정하기
- 3) 평정할 근무성적 확인하기
- 4) 평정 예외 파악하기
- 5) 종합평정표(엑셀서식) 작성하기 <서식 3>
- 6) 평정점 계산하기(엑셀 프로그램)

2. 평정(학)년도 선정

교감 등	교사
최근 3년	최근 5년
2024, 2023, 2022년	2024, 2023, 2022, 2021, 2020년

3. 근무성적 확인 : 현재 직위가 아니라, 해당 직위에서 평정한 것

4. 평정의 예외 (규정 제20조제2항, 제28조의5)

- 1) 평정기간 최근(학)년도에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는 때 : 직무에 복귀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이 있는 때까지는 파견 전 2회의 근무성적의 평균을 그 (학)년도의 평정점으로 간주함
 - ① 최근(학)년도의 모든 기간 동안(1년 내내) 연수를 받은 사람
 - ② 최근(학)년도의 모든 기간 동안(1년 내내)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이외의 기관에 파견근무한 사람
- 2)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 (학)년도가 있는 경우 : 그 평정단위 (학)년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을 그 (학)년도의 평정점으로 간주함 (규정 제40조제5항)

- 3) 평정점이 없는 (학)년도의 전년의 평정점이 없는 경우 : 전년의 평정점은 85점으로 간주함
- 4) 전직된 경우

- ① 교감 : 해당직위에서 받은 근무성적을 그대로 인정함
- ② 교육전문직원 : 해당직위에서 받은 근무성적을 그대로 인정함
- ③ 교육전문직원의 교사 직위에서 받은 근무성적 평정점은 85점으로 간주함
- 5)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특채)된 경우 : 사립학교 교원의 직위에서 받은 근무성적 평정점은 85점으로 간주함
- 6) 상위의 교원자격을 취득한 때 : 그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에 상위 자격 취득 이전의 평정을 참작하여 평정함

5. 종합평정표(엑셀) 작성하기 : 〈서식 3〉

교 감 등	교 사
근무성적 3개 입력	근무성적(합산점) 5개 모두 입력

6. 평정점 계산하기 : 프로그램

- 1) 교감 등 : 다음 수식으로 계산한 값들을 합산하여 평정함
 - ① 2024학년도의 근무성적 $\times$ 0.34 (34% 반영)
 - ② 2023년도의 근무성적 $\times$ 0.33 (33% 반영)
 - ③ 2022년도의 근무성적 $\times$ 0.33 (33% 반영)
- 2) 교사 : 다음 수식으로 계산한 값들을 합산하여 평정함
 - ① 본인에게 유리한 최근 제1연도의 합산점 $\times$ 0.34 (34% 반영)
 - ② 본인에게 유리한 최근 제2연도(제1연도 보다 전년)의 합산점 $\times$ 0.33 (33% 반영)
 - ③ 본인에게 유리한 최근 제3연도(제2연도 보다 전년)의 합산점 $\times$ 0.33 (33% 반영)
- 3) (학)연도별 근무성적(합산점)에 반영비율을 적용할 때 : 소수점 이하는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 계산함

7. 기타사항

- 1) 평정대상 : 명부 작성 대상자
- 2) 평정시기 : 매 학년도 종료일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실시
- 3) 평정결과의 공개 (규정 제15조)
 - ① 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알려주어야 함
 - ② 업무메일로 신청하면 2025.5.1. 이후에 확인 가능(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

IV

경력 평정(명부작성대상자)

영역	만점		비고
	교감 등	교사	
경력	70	70	기본경력 15년 초과경력 5년

1. 경력 :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교육연구경력, 기타경력

2. 경력 평정의 기초 : 당해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나이스 인사기록)에 의해 평정

3. 평정 절차 및 방법

- 1) 평정기간 설정하기
- 2) 경력별 등급 분류하기
- 3) 경력평정표(엑셀) 작성하기 <서식 4>
- 4) 평정점 계산하기(프로그램)

4. 평정기간 설정 (규정 제7,8조)

종류	평정기간	월수	(예시) 제외기간이 없는 대상자의 경우
기본경력	기본경력 15년	180월	2010.3.1. ~ 2025.2.28.
초과경력	기본경력 전 5년	60월	2005.3.1. ~ 2010.2.28.

1) 평정 대상이 아닌 기간을 제외하고 평정기간이 충족되는 시점까지 설정함

2) 전임강사나 기간제교원 등의 경력이 있는 경우 (교정81081-1042, 1998.12.2)

※ 당사자에게 유리한 경력을 우선 평정기간으로 하여 전임강사나 기간제교원 등의 경력기간을 제외하고 경력평정시점으로부터 경력평정기간이 충족되는 시점까지 도달하여 평정할 수 있음

- (예시1) 정규 8년, 기간제 2년, 정규 12년의 순으로 근무한 교사

기본경력 : 가 경력 12년 + 3년

초과경력 : 가 경력 5년

- (예시2) 기간제 3년, 정규 9년, 기간제 3년, 정규 6년으로 근무한 교사
 기본경력 : 가경력 13년, 나경력 2년
 초과경력 : 가경력 2년, 나경력 3년

3) 제외하는 기간

- ① 일반질병 · 생사불명 · 가사 · 동반 사유의 휴직기간
- ② 직위해제 기간, 정직 기간
- ③ 임용 전 장교 복무기간 중 3년 이외의 경력(3년 이내만 인정)
- ④ 임용 전 무관후보생 경력(사병 복무 중 장교 임관의 경우 무관 후보생 기간이 병적증명서상 '병'이라도 제외)
- ⑤ 6월 미만인 실역 미필된 보충역(1985.12.31. 이전 방위 소집자)
- ⑥ 채용보고 승인 없는 사립학교 경력(도교육청민원실 발행 경력증명서 첨부)
- ⑦ 특례보충역으로 방위 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기간
- ⑧ 대학의 조교경력(단, 장학사/교육연구사에게만 다 경력으로 인정)
- ⑨ 중 · 고 · 대학의 시간강사 경력

4) 포함하는 기간

- ① 전임 강사 및 기간제교사(임시교사)의 경력 (관리02128-26, 1989.1.9.)
 - 교육장, 교육감이 적법하게 임용한 경우 경력 인정
 - 학교장이 임용한 경우에는 1989.1.9. 이후의 경력만 인정
- ②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휴직한 기간(연금카드 확인)
- ③ 임신 · 출산 또는 자녀양육, 입양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
- ④ 견책, 감봉(단,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유의)
- ⑤ 교원 임용 후 군복무 휴직기간(3년 초과해도 인정)
- ⑥ 병역법에 의한 징집/소집/근무한 때의 군 경력(교사에게는 가 경력, 교감 등에게는 나 경력으로 인정, 3년 이내)
- ⑦ 1986.1.1. 이후 방위소집 입영자의 병적상 실역 복무기간
- ⑧ 1985.12.31. 이전 방위소집자의 실역복무 기간이 12월 이상이거나 해제 사유가 만기인 경우는 1년 인정
- ⑨ 기타 복무단축사유(의가사, 질병 등)로 실역을 필한 경우 6월 인정
- ⑩ 6월 미만 복무도 대학생 복무단축에 따라 실역을 필한 경우 6월 인정
- ⑪ 의무경찰, 전투경찰 경력

- ⑫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직무를 이탈한 기간
- ⑬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 처분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법원의 판결로 무효·취소 확정된 경우(징계의결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포함)의 그 직위해제 기간[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 가]
- ⑭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로 무죄 확정된 경우(검찰 무혐의 포함)의 그 직위해제 기간[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 나]
- ⑮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 다]에 해당하는 기간
- ⑯ 사면된 경우(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자,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의 비위, 불법집단행동을 범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
- ⑰ 교원노조전임자로 종사하게 되어 휴직한 기간
- ⑱ 국제기구, 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 기관에 상근으로 근무한 기간
(1994.9.21. 이전의 고용휴직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10할을 인정함)

5) 5할만 포함하는 기간

- ①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 ②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 휴직한 기간
- ③ 교육부장관 지정 국내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 휴직한 기간
- ④ 국제기구, 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서 비상근으로 근무한 기간
 - 1994.9.22. 이후 : 상근은 주 10시간 이상, 비상근은 주당 9시간 이하
 - 2000.4.1. 이후 : 상근은 주 15시간 이상, 비상근은 주당 6시간 이상 14시간 이하(주 5시간 이하는 인정하지 아니함)를 적용함

6) 기간계산에서 일수와 일수를 합산할 때에는 30일을 1월로 계산함

5. 경력별 등급 분류 : [자료 4.1] (규정 제9조)

- 1) 임용 전 병역법 등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징집/소집/근무한 경력
 - ① 교사에게는 가 경력으로
 - ② 교감 등에게는 나 경력으로 분류함
- 2)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대학의 장이 임용한 대학조교의 경력
 - ※ 장학사·교육연구사에게만 인정하고, 다 경력으로 분류함
- 3) 특수한 경력을 가진 대상자는 규정, 법령, [자료 4.1]을 정독하여 분류함

6. 경력평정표(엑셀) 작성하기 : <서식 4>

7. 평정점 계산하기 : 프로그램 (규정 제10조)

종 류	등 급	만 점	월평정점	일평정점
기본경력(15년)	가경력	64.00	0.3555	0.0118
	나경력	60.00	0.3333	0.0111
	다경력	56.00	0.3111	0.0103
초과경력(5년)	가경력	6.00	0.1000	0.0033
	나경력	5.00	0.0833	0.0027
	다경력	4.00	0.0666	0.0022

- 1) 종류별, 등급별로 평정점을 계산하여 이를 합산함
- 2) 평정점은 월단위로 계산한 값과 일단위로 계산한 값을 합산함
- 3) 소수점이하는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 계산함
- 4) 기본경력 가경력 180월, 초과경력 가경력 60월인 경우 만점으로 평정함
- 5) 경력평정점 조건표 활용 확인 : [자료 4.2] [자료 4.3]
- 6) 평정점의 채점 : 기본경력 평정점과 초과경력 평정점을 합산함 (규정 제12조)

8. 기타사항

- 1) 평정시기 (규정 제6조)
 - ① 매학년도 종료일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실시
 - ② 신규채용/승진/전직/강임된 자나 상위자격 취득자가 있는 때
(그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정기 평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정)
- 2) 경력평정표 (규정 제13조)

※ 평정자와 확인자가 서명 날인하고, 평정자가 보관
- 3) 평정결과의 보고 (규정 제14조)
 - ① 확인자는 평정 후 1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보고
 - ② 중학교 교감과 교사의 경력평정표는 교육장을 거쳐야 함
- 4) 임용결격과 평정 (교원07000-36, 2000.1.12., 임용결격공무원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은 2008.6.5. 삭제)

※ 임용결격 공무원이 사실상 근무한 기간의 교육경력, 연수성적, 가산점은 인정 될 수 없음

경력의 등급 및 종별

대상자	등 급	경력종별
교감	가경력	1. 각급학교 교장 또는 교감의 경력 2.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의 경력
	나경력	1. 각급학교 교사(전임강사 이상의 대학교원 및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인정되는 사회교육시설에서 동등급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한 경력을 포함한다)의 경력 2.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인 교육연구기관에서 당해 직위와 상응한 직무를 담당한 경력 3. 교사의 가 경력 제3호와 동일한 경력
	다경력	교사의 나 경력과 동일한 경력 및 평정법
교사	가경력	1. 각급학교 교장·교감 또는 각급학교 교사(전임강사 이상의 대학교원 및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인정되는 사회교육시설에서 동등급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한 경력을 포함한다)의 경력 2.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의 경력 3.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근무한 경력
	나경력	임용권자가 임용하여 전임으로 근무한 강사(대학의 전임강사는 제외한다) 또는 기간제교원(임시교원의 경력을 포함한다)의 경력. 다만,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교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은 해당 교원이 근무한 시간을 합산하여 1일 단위(근무한 시간을 8로 나누어 산정하되, 8시간미만의 나머지는 버린다)로 경력 평정
장학사 교육연구사	가경력	1.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의 경력 2. 각급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의 경력
	나경력	1. 교감의 나 경력 제1호와 동일한 경력(각급학교 교사의 경력) 2. 5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 경력 3.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인 교육연구기관에서 당해 직위와 상응한 직무를 담당한 경력 4. 교사의 가 경력 제3호와 동일한 경력
	다경력	1. 교사의 나 경력과 동일한 경력 및 평정법 2. 5급 이하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의 경력 (나 경력 제2호를 제외한다) 3.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교의 경력

[자료 4.2]

기본경력 평정점 조건표

월 평정점												일 평정점			
월수	가경력	나경력	다경력	월수	가경력	나경력	다경력	월수	가경력	나경력	다경력	일수	가경력	나경력	다경력
1	0.3555	0.3333	0.3111	61	21.6855	20.3313	18.9771	121	43.0155	40.3293	37.6431	1	0.0118	0.0111	0.0103
2	0.7110	0.6666	0.6222	62	22.0410	20.6646	19.2882	122	43.3710	40.6626	37.9542	2	0.0236	0.0222	0.0206
3	1.0665	0.9999	0.9333	63	22.3965	20.9979	19.5993	123	43.7265	40.9959	38.2653	3	0.0354	0.0333	0.0309
4	1.4220	1.3332	1.2444	64	22.7520	21.3312	19.9104	124	44.0820	41.3292	38.5764	4	0.0472	0.0444	0.0412
5	1.7775	1.6665	1.5555	65	23.1075	21.6645	20.2215	125	44.4375	41.6625	38.8875	5	0.0590	0.0555	0.0515
6	2.1330	1.9998	1.8666	66	23.4630	21.9978	20.5326	126	44.7930	41.9958	39.1986	6	0.0708	0.0666	0.0618
7	2.4885	2.3331	2.1777	67	23.8185	22.3311	20.8437	127	45.1485	42.3291	39.5097	7	0.0826	0.0777	0.0721
8	2.8440	2.6664	2.4888	68	24.1740	22.6644	21.1548	128	45.5040	42.6624	39.8208	8	0.0944	0.0888	0.0824
9	3.1995	2.9997	2.7999	69	24.5295	22.9977	21.4659	129	45.8595	42.9957	40.1319	9	0.1062	0.0999	0.0927
10	3.5550	3.3330	3.1110	70	24.8850	23.3310	21.7770	130	46.2150	43.3290	40.4430	10	0.1180	0.1110	0.1030
11	3.9105	3.6663	3.4221	71	25.2405	23.6643	22.0881	131	46.5705	43.6623	40.7541	11	0.1298	0.1221	0.1133
12	4.2660	3.9996	3.7332	72	25.5960	23.9976	22.3992	132	46.9260	43.9956	41.0652	12	0.1416	0.1332	0.1236
13	4.6215	4.3329	4.0443	73	25.9515	24.3309	22.7103	133	47.2815	44.3289	41.3763	13	0.1534	0.1443	0.1339
14	4.9770	4.6662	4.3554	74	26.3070	24.6642	23.0214	134	47.6370	44.6622	41.6874	14	0.1652	0.1554	0.1442
15	5.3325	4.9995	4.6665	75	26.6625	24.9975	23.3325	135	47.9925	44.9955	41.9985	15	0.1770	0.1665	0.1545
16	5.6880	5.3328	4.9776	76	27.0180	25.3308	23.6436	136	48.3480	45.3288	42.3096	16	0.1888	0.1776	0.1648
17	6.0435	5.6661	5.2887	77	27.3735	25.6641	23.9547	137	48.7035	45.6621	42.6207	17	0.2006	0.1887	0.1751
18	6.3990	5.9994	5.5998	78	27.7290	25.9974	24.2658	138	49.0590	45.9954	42.9318	18	0.2124	0.1998	0.1854
19	6.7545	6.3327	5.9109	79	28.0845	26.3307	24.5769	139	49.4145	46.3287	43.2429	19	0.2242	0.2109	0.1957
20	7.1100	6.6660	6.2220	80	28.4400	26.6640	24.8880	140	49.7700	46.6620	43.5540	20	0.2360	0.2220	0.2060
21	7.4655	6.9993	6.5331	81	28.7955	26.9973	25.1991	141	50.1255	46.9953	43.8651	21	0.2478	0.2331	0.2163
22	7.8210	7.3326	6.8442	82	29.1510	27.3306	25.5102	142	50.4810	47.3286	44.1762	22	0.2596	0.2442	0.2266
23	8.1765	7.6659	7.1553	83	29.5065	27.6639	25.8213	143	50.8365	47.6619	44.4873	23	0.2714	0.2553	0.2369
24	8.5320	7.9992	7.4664	84	29.8620	27.9972	26.1324	144	51.1920	47.9952	44.7984	24	0.2832	0.2664	0.2472
25	8.8875	8.3325	7.7775	85	30.2175	28.3305	26.4435	145	51.5475	48.3285	45.1095	25	0.2950	0.2775	0.2575
26	9.2430	8.6658	8.0886	86	30.5730	28.6638	26.7546	146	51.9030	48.6618	45.4206	26	0.3068	0.2886	0.2678
27	9.5985	8.9991	8.3997	87	30.9285	28.9971	27.0657	147	52.2585	48.9951	45.7317	27	0.3186	0.2997	0.2781
28	9.9540	9.3324	8.7108	88	31.2840	29.3304	27.3768	148	52.6140	49.3284	46.0428	28	0.3304	0.3108	0.2884
29	10.3095	9.6657	9.0219	89	31.6395	29.6637	27.6879	149	52.9695	49.6617	46.3539	29	0.3422	0.3219	0.2987
30	10.6650	9.9990	9.3330	90	31.9950	29.9970	27.9990	150	53.3250	49.9950	46.6650	30	0.3555	0.3333	0.3111
31	11.0205	10.3323	9.6441	91	32.3505	30.3303	28.3101	151	53.6805	50.3283	46.9761				
32	11.3760	10.6656	9.9552	92	32.7060	30.6636	28.6212	152	54.0360	50.6616	47.2872				
33	11.7315	10.9989	10.2663	93	33.0615	30.9969	28.9323	153	54.3915	50.9949	47.5983	•	•	•	•
34	12.0870	11.3322	10.5774	94	33.4170	31.3302	29.2434	154	54.7470	51.3282	47.9094				
35	12.4425	11.6655	10.8885	95	33.7725	31.6635	29.5545	155	55.1025	51.6615	48.2205				
36	12.7980	11.9988	11.1996	96	34.1280	31.9968	29.8656	156	55.4580	51.9948	48.5316				
37	13.1535	12.3321	11.5107	97	34.4835	32.3301	30.1767	157	55.8135	52.3281	48.8427				
38	13.5090	12.6654	11.8218	98	34.8390	32.6634	30.4878	158	56.1690	52.6614	49.1538	•	•	•	•
39	13.8645	12.9987	12.1329	99	35.1945	32.9967	30.7989	159	56.5245	52.9947	49.4649				
40	14.2200	13.3320	12.4440	100	35.5500	33.3300	31.1100	160	56.8800	53.3280	49.7760				
41	14.5755	13.6653	12.7551	101	35.9055	33.6633	31.4211	161	57.2355	53.6613	50.0871				
42	14.9310	13.9986	13.0662	102	36.2610	33.9966	31.7322	162	57.5910	53.9946	50.3982	•	•	•	•
43	15.2865	14.3319	13.3773	103	36.6165	34.3299	32.0433	163	57.9465	54.3279	50.7093				
44	15.6420	14.6652	13.6884	104	36.9720	34.6632	32.3544	164	58.3020	54.6612	51.0204				
45	15.9975	14.9985	13.9995	105	37.3275	34.9965	32.6655	165	58.6575	54.9945	51.3315				
46	16.3530	15.3318	14.3106	106	37.6830	35.3298	32.9766	166	59.0130	55.3278	51.6426				
47	16.7085	15.6651	14.6217	107	38.0385	35.6631	33.2877	167	59.3685	55.6611	51.9537				
48	17.0640	15.9984	14.9328	108	38.3940	35.9964	33.5988	168	59.7240	55.9944	52.2648	•	•	•	•
49	17.4195	16.3317	15.2439	109	38.7495	36.3297	33.9099	169	60.0795	56.3277	52.5759				
50	17.7750	16.6650	15.5550	110	39.1050	36.6630	34.2210	170	60.4350	56.6610	52.8870				
51	18.1305	16.9983	15.8661	111	39.4605	36.9963	34.5321	171	60.7905	56.9943	53.1981				
52	18.4860	17.3316	16.1772	112	39.8160	37.3296	34.8432	172	61.1460	57.3276	53.5092	•	•	•	•
53	18.8415	17.6649	16.4883	113	40.1715	37.6629	35.1543	173	61.5015	57.6609	53.8203				
54	19.1970	17.9982	16.7994	114	40.5270	37.9962	35.4654	174	61.8570	57.9942	54.1314				
55	19.5525	18.3315	17.1105	115	40.8825	38.3295	35.7765	175	62.2125	58.3275	54.4425				
56	19.9080	18.6648	17.4216	116	41.2380	38.6628	36.0876	176	62.5680	58.6608	54.7536				
57	20.2635	18.9981	17.7327	117	41.5935	38.9961	36.3987	177	62.9235	58.9941	55.0647	•	•	•	•
58	20.6190	19.3314	18.0438	118	41.9490	39.3294	36.7098	178	63.2790	59.3274	55.3758				
59	20.9745	19.6647	18.3549	119	42.3045	39.6627	37.0209	179	63.6345	59.6607	55.6869				
60	21.3300	19.9980	18.6660	120	42.6600	39.9960	37.3320	180	64.0000	60.0000	56.0000				

[자료 4.3]

초과경력 평정점 조건표

월 평정점								일 평정점			
월수	가경력	나경력	다경력	월수	가경력	나경력	다경력	일수	가경력	나경력	다경력
1	0.1000	0.0833	0.0666	31	3.1000	2.5823	2.0646	1	0.0033	0.0027	0.0022
2	0.2000	0.1666	0.1332	32	3.2000	2.6656	2.1312	2	0.0066	0.0054	0.0044
3	0.3000	0.2499	0.1998	33	3.3000	2.7489	2.1978	3	0.0099	0.0081	0.0066
4	0.4000	0.3332	0.2664	34	3.4000	2.8322	2.2644	4	0.0132	0.0108	0.0088
5	0.5000	0.4165	0.3330	35	3.5000	2.9155	2.3310	5	0.0165	0.0135	0.0110
6	0.6000	0.4998	0.3996	36	3.6000	2.9988	2.3976	6	0.0198	0.0162	0.0132
7	0.7000	0.5831	0.4662	37	3.7000	3.0821	2.4642	7	0.0231	0.0189	0.0154
8	0.8000	0.6664	0.5328	38	3.8000	3.1654	2.5308	8	0.0264	0.0216	0.0176
9	0.9000	0.7497	0.5994	39	3.9000	3.2487	2.5974	9	0.0297	0.0243	0.0198
10	1.0000	0.8330	0.6660	40	4.0000	3.3320	2.6640	10	0.0330	0.0270	0.0220
11	1.1000	0.9163	0.7326	41	4.1000	3.4153	2.7306	11	0.0363	0.0297	0.0242
12	1.2000	0.9996	0.7992	42	4.2000	3.4986	2.7972	12	0.0396	0.0324	0.0264
13	1.3000	1.0829	0.8658	43	4.3000	3.5819	2.8638	13	0.0429	0.0351	0.0286
14	1.4000	1.1662	0.9324	44	4.4000	3.6652	2.9304	14	0.0462	0.0378	0.0308
15	1.5000	1.2495	0.9990	45	4.5000	3.7485	2.9970	15	0.0495	0.0405	0.0330
16	1.6000	1.3328	1.0656	46	4.6000	3.8318	3.0636	16	0.0528	0.0432	0.0352
17	1.7000	1.4161	1.1322	47	4.7000	3.9151	3.1302	17	0.0561	0.0459	0.0374
18	1.8000	1.4994	1.1988	48	4.8000	3.9984	3.1968	18	0.0594	0.0486	0.0396
19	1.9000	1.5827	1.2654	49	4.9000	4.0817	3.2634	19	0.0627	0.0513	0.0418
20	2.0000	1.6660	1.3320	50	5.0000	4.1650	3.3300	20	0.0660	0.0540	0.0440
21	2.1000	1.7493	1.3986	51	5.1000	4.2483	3.3966	21	0.0693	0.0567	0.0462
22	2.2000	1.8326	1.4652	52	5.2000	4.3316	3.4632	22	0.0726	0.0594	0.0484
23	2.3000	1.9159	1.5318	53	5.3000	4.4149	3.5298	23	0.0759	0.0621	0.0506
24	2.4000	1.9992	1.5984	54	5.4000	4.4982	3.5964	24	0.0792	0.0648	0.0528
25	2.5000	2.0825	1.6650	55	5.5000	4.5815	3.6630	25	0.0825	0.0675	0.0550
26	2.6000	2.1658	1.7316	56	5.6000	4.6648	3.7296	26	0.0858	0.0702	0.0572
27	2.7000	2.2491	1.7982	57	5.7000	4.7481	3.7962	27	0.0891	0.0729	0.0594
28	2.8000	2.3324	1.8648	58	5.8000	4.8314	3.8628	28	0.0924	0.0756	0.0616
29	2.9000	2.4157	1.9314	59	5.9000	4.9147	3.9294	29	0.0957	0.0783	0.0638
30	3.0000	2.4990	1.9980	60	6.0000	5.0000	4.0000	30	0.1000	0.0833	0.0666



연수성적 평정(명부작성대상자)

평정영역			만점		비고
			교감 등(18)	교사(30)	
연수성적	교육성적	1. 자격연수성적	9	9	
		2. 직무연수성적	6	18	최근 10년 2개월*
	연구실적	3. 연구대회입상실적			
		4. 학위취득실적	3	3	

* 직무연수 적용 기간(최근 10년 2개월, 단, 2017년부터 학년도로 변경): 2015.1.1.~2025.2.28.

1. 자격연수성적 평정 절차 및 방법 (규정 제32조)

1) 명부별로 평정할 성적 선정하기

- ① 교장승진후보자명부: 교장 자격연수 성적
- ② 장학관승진후보자명부: 최근에 이수한 자격연수 성적
- ③ 교육연구관승진후보자명부: 최근에 이수한 자격연수 성적
- ④ 교감승진후보자명부: 교감 자격연수 성적
- ⑤ 교감의 교장자격연수대상자명부: 교감 자격연수 성적
- ⑥ 장학사/교육연구사의 교장자격연수대상자명부: 최근에 이수한 자격연수 성적
- ⑦ 교사의 교감자격연수대상자명부 (인사관리규정 제12조)
 - 1급정교사 자격연수 성적 또는
 - 전문상담(교도)교사 자격연수 성적 또는
 - 1급정교사 자격 취득 이후의 사서교사 자격연수 성적 (개정 1999.2.1.)
 - 1급정교사 자격연수를 이수하여 1급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교사는 반드시 1급정교사 자격연수 성적으로 자격연수성적을 평정해야 함
 - 1급정교사 자격연수를 석사학위로 대체하여 1급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교사만 석사과정 학점으로 자격연수성적을 평정할 수 있음
 - 전문상담 석사학위로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을 취득한 경우 석사과정 학점으로 자격연수성적을 평정할 수 있음
- ⑧ 장학사/교육연구사의 교감자격연수대상자명부: 최근에 이수한 자격연수 성적

2) 연수성적평정표(엑셀) 작성하기 : 〈서식 5〉

3) 평정점 계산하기 : 프로그램 (규정 제33조, 연수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4조)

- ① 교장승진후보자: 9점 - (연수성적만점 - 연수성적) × 0.050
- ② 교장자격연수대상자: 9점 - (연수성적만점 - 연수성적) × 0.050
- ③ 교감승진후보자: 9점 - (연수성적만점 - 연수성적) × 0.050
- ④ 교감자격연수대상자: 9점 - (연수성적만점 - 연수성적) × 0.025

※ 해당직위 또는 [자료 4.1]에 따른 가경력으로 평정되는 직위에서 방송통신 대학교 초등교육과를 졸업하였거나,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취득한 석사학위로 1급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의 자격 연수성적은 학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산하여 평정함 (규정 제33조)

- A 학점 이상 : 만점의 90퍼센트
- B 학점 이상 : 만점의 85퍼센트
- D 학점 이상 : 만점의 80퍼센트

4) 유의사항

- ① 하나의 자격연수를 분할 이수하여 그 성적이 둘 이상인 경우 : 분할 시간을 고려한 성적의 평균값을 연수성적으로 간주하여 평정 (규정 제33조 제2항)
 - 120,60,60시간으로 분할하여 이수한 성적이 각각 86,90,81점인 경우
 - 평정 : $86 \times 120 / 240 + 90 \times 60 / 240 + 81 \times 60 / 240 = 85.75$
- ② 2회 분할이수한 자격연수에서 1회분 성적이 확인불능인 경우 : 확인 가능한 1회분의 성적만으로 평정함 (교원81801-113, 2000.1.31.)
- ③ 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인 경우 : 평정하지 아니함 (규정 제33조)
- ④ 이수하고도 성적이 없거나 만점의 8할 미만인 경우 : 8할로 평정함
- ⑤ 평어(등급)로 평가된 성적 : 평어(등급)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정함
 - 최상위 등급의 평어 : 만점의 90퍼센트
 - 차상위 등급의 평어 : 만점의 85퍼센트
 - 삼등급 이하의 평어 : 만점의 80퍼센트
- ⑥ 평어(등급)와 평점(점수)으로 평가된 성적 : 평점(점수)을 기준으로 평정

2. 직무연수성적 평정 절차 및 방법 (규정 제32조)

1) 평정할 성적의 요건 파악하기

① 해당직위(규정 제32조제2항)에서 이수한 직무연수

※ 교육전문직원 경력이 있는 교감

- 교장 자격/승진을 위한 평정 : 전직 전의 직위에서 받은 직무연수성적을 포함 하되, 교감 자격 취득 후의 것으로 한정

※ 교육전문직원

- 교감 자격/승진을 위한 평정 : 교감 등의 직위에서 이수한 것으로 한정
- 교장 자격/승진을 위한 평정 : 교감 자격 취득 후의 것으로 한정

교사 -----> [교감]자격/승진 -----> [교장]자격/승진
교사직위 것 교감직위 것

교육전문직원 -----> [교감]자격/승진 -----> [교장]자격/승진
교육전문직위 것 교감자격취득후의 것

② 공인기관에서 이수한 직무연수

-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에 따른 연수기관
-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연수기관

③ 10년 2개월 이내에 이수한 것 (이수증 발급일이 2015.1.1. 이후의 것)

④ 60시간 이상 이수한 직무연수의 성적을 대상으로 평정함

- 120시간, 18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도 성적은 하나임(분할 불가)

※ 교육성적(직무연수성적)으로 평정한 연수는 공통가산점(직무연수실적)으로 중복하여 평정할 수 없음

2) 성적 선정하기 : 교감 등은 1개를, 교사는 3개를 선정함(교사는 교육감이 지정한 경남교육정책연수 1개 필수 선정, 경남교육정책연수는 평정기준일(2월말) 3년 이내 이수 실적만 인정, ※ 중등교육과-10363(2021.5.3.), 중등교육과-10883(2021.5.11.))

3) 직무연수 성적 하나를 다음과 같이 환산함

직무연수성적	환산성적
95점 초과	100점
90점 초과 ~ 95점 이하	95점
85점 초과 ~ 90점 이하	90점
85점 이하	85점

※ 교사의 경우 나머지 둘은 연수성적에 관계없이 100점으로 환산함

4) 연수성적평정표(엑셀) 작성하기 : <서식 5>

5) 평정점 계산하기 : 프로그램

$$\textcircled{1} \text{ 교감 등} : 6\text{점} \times \frac{\text{환산성적}}{100} \leftarrow \text{하나만으로 평정함}$$

$$\textcircled{2} \text{ 교사} : 6\text{점} \times \frac{\text{환산성적}}{100} + 12\text{점}(6\text{점} \times 2\text{개}) \leftarrow \text{두 개는 만점으로 평정함}$$

6) 유의사항

① 직무연수를 평정할 때

- 제Ⅴ장 연수성적(직무연수성적) : 이수한 성적을 기준으로 평정하는 것
- 제Ⅵ장 가산점(직무연수실적) : 이수한 시간을 기준으로 평정하는 것
- 직무연수성적으로 평정한 것을 또다시 직무연수실적으로 평정 불가

② 평어(등급)로 평가된 성적 : 평어(등급)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정함

- 최상위 등급의 평어 : 만점의 90퍼센트
- 차상위 등급의 평어 : 만점의 85퍼센트
- 삼등급 이하의 평어 : 만점의 80퍼센트

③ 평어(등급)와 평점(점수)으로 평가된 성적 : 평점(점수)을 기준으로 평정

3. 연구대회입상실적 평정 절차 및 방법 (규정 제35, 제37조)

1) 평정할 실적의 요건 파악하기

① 해당 직위에서 입상한 것

② 공인대회에서 입상한 것

-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국규모연구대회에서 입상한 것 [자료 5.2]
- 교육감이 인정하는 시·도 규모연구대회에서 입상한 것 [자료 5.3]

2) 입상 학년도별로 1회만 인정함

① 연구연도와 입상연도가 다른 경우에는 입상연도를 기준으로 평정함

② 가산점의 교육연구대회와 중복 인정하지 않음

③ 연수성적 평정점의 연구대회입상실적과 가산점 평정점의 교육연구대회실적 중 학년도별 1회만 실적 인정

예) 2023학년도에 전국교육자료전에 입상, 기능경기대회 학생지도실적 연구대회에 입상(2곳)하였다면 연수성적 평정점(105페이지의 4. 연구대회입상실적 평정)이나 가산점 평정점(107페이지의 3. 기타실적 평정 중 교육연구대회) 중 1개만 선택해서 1개의 실적만 사용할 수 있음

3) 등급별 평정점 : 공동연구(2인:7할, 3인:5할, 4인 이상:3할 인정)

입상등급	전국대회	시·도대회
1등급	1.50점	1.00점
2등급	1.25점	0.75점
3등급	1.00점	0.50점

4) 연수성적평정표(엑셀) 작성하기 : <서식 5>

5) 평정점 계산하기 : 프로그램

6) 유의사항

① 입상등급이 다른 방식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인사관리규정 제9조)

- 최상위 입상 : 1등급
- 차상위 입상 : 2등급
- 입상등급이 없거나 등급을 구분할 수 없는 입상 : 3등급

② 푸른기장증 (총무200-18752, 1977.11.23)

- 푸른기장증(한국교총)에 등급표시가 없는 경우 : 3등급
- 푸른기장증과 표창(교육부장관)이 동일자로 수여된 경우 : 1등급

③ 학생을 지도한 공적으로 받은 지도교사 상이나 표창 : 연구실적 아님

4. 학위취득실적 평정 절차 및 방법 (규정 제36조)

1) 평정대상 : 해당직위에서 취득한 석사/박사 학위

2) 석사와 박사 둘 다 취득한 경우 : 하나만 평정함

3) 직무 관련성을 고려한 학위별 평정점

구분	박사	석사
직무와 관련 있는 학위	3.0점	1.5점
그 밖의 학위	1.5점	1.0점

※ 직무 관련성 : 직접 수업을 담당하는 교과목, 학생생활지도, 특별활동, 학교 또는 학급 경영, 교무업무, 기타 학생교육 활동과 관련된 내용일 것

4) 연수성적평정표(엑셀) 작성하기 : <서식 5>

5) 평정점 계산하기 : 프로그램

6) 유의사항

① 석사학위가 2개인 경우 (교원정책과-3378, 2004.12.29.)

- 2005년 1학기에 대학원 입학자까지 : 2개 학위를 모두 평정 대상으로 인정함
(단, 동일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2회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2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1개의 학위만 인정함)

- 2005년 2학기 대학원 입학자부터 : 1개 학위만을 인정함

② 평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 교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에 취득한 학위
- 자격연수성적으로 평정한 학위
- 소속기관장(학교장)의 승인 없이 주간대학원 수강 후 취득한 학위
- 유학휴직(출국) 이외의 방법으로 국외대학(원) 수강 후 취득한 학위
- 교육관련법외 무인가대학(원)에서 발급한 학위(교육부 등록여부 확인)

③ 수강이 인정되는 것

- 주간대학원 수강 : 기관장(학교장)의 승인서를 첨부한 경우
- 국외대학(원) 수강 : 출국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④ 석사 학위 (교직01101-353, 1986.8.25.) 승진규정 제36조, 제37조제2항

- 정교사(1급) 자격연수로 대체한 석사 학위는 자격연수성적으로 평정가능하나, 학위취득실적으로 중복평정은 불가함
- 정교사(1급) 자격연수로 대체하지 아니한 석사 학위는 학위취득실적으로 평정 가능함
- 교감승진후보자명부/교감자격연수대상자명부 둘 다 동일하게 적용함
- (예시) 석사 학위와 전문상담교사 자격연수 성적이 있는 교사의 경우
 - 전문상담교사 자격연수 성적을 자격연수성적으로 평정하고
 - 석사 학점을 자격연수성적으로 평정하지 않았으므로
 - 석사 학위는 학위취득실적으로 평정할 수 있음

5. 평정점 채점하기 : 프로그램

- 1) 교육성적과 연구실적으로 나누어 평정한 값들을 합산함 (규정 제29,32,33조)
- 2) 연구실적 평점점은 3점을 초과할 수 없음 (규정 제37조)

[자료 5.1]

연구대회 입상실적 참고자료

연번	대회명	주관	시작	종료	등 급
1	현장교육연구원연구발표대회	교육과학연구원	81		1,2,3
2	학급·교과경영연구대회	교육과학연구원	86		1,2,3
3	교과용지역도서개발연구발표대회	교육과학연구원	90	91	1,2,3
4	경남교원전통예능경진대회 (교원기능경진대회)	교육과학연구원	73	99	1,2,3 (특,우량,장려)
5	교육연구회우수교원연구발표대회	교육과학연구원	85		1,2,3
6	교육미담사례실천연구발표대회 (88.이전은 정화수범사례)	교육과학연구원	84	91	1,2,3
7	학습지도안연구대회	교육과학연구원	79	85	1,2,3
8	교육평가문항공모	교육과학연구원	80	85	1,2,3
9	알찬교육바른생활수기	교육과학연구원	81	85	1,2,3
10	경남교육자료전시회	교육과학연구원	69		1,2,3
11	전국교육자료전시회	교육과학연구원	69		1,2,3
12	(99까지는 경남과학전시회) 경남과학전람회과학작품대회	과학교육원	58		(특,우량(2),노력) 특,우수,장려
13	전국과학전람회학생지도실적연구대회	과학교육원	58		1,2,3
14	컴퓨터S/W개발대회	교육과학연구원	89	91	1,2,3
15	우수선수육성연구대회	체육보건교육과	79		1,2,3
16	실과교원현장연구발표대회(논문) (농·공·상·수)	평생교육과	79	89	1,2,3
17	실과교원현장연구작품전시회 (농업과교사)	평생교육과	80	89	특,우량(2),노력
18	새마을교육우수사례 공모발표대회	평생교육과	86	90	최우수,우수,우량(3)
19	실과교사현장연구발표대회 (농업부문)	교육부	80		1,2,3
20	경남교원컴퓨터경진대회 (초·중·고 전교원 대상)	과학기술과	84		1,2,3

연번	대회명	주관	시작	종료	등 급
21	과학교육개선및탐구지도우수사례 발표대회(중·고과학교사)	교육부	89	91	최우수, 우수, 우량(3)
22	중등교원학습지도연구대회	중등교육과	79	14	최우수, 우수, 우량(3)
23	진로교육및생활지도연구발표대회	평생직업교육과	87		최우수, 우수, 우량(3)
24	새질서새생활노래공모대회	중등교육과	90	91	최우수, 우수, 우량(3)
25	경남교육연구대회	경남교총	72		최우수, 우수, 우량(3)
26	전국교육연구대회	한국교총	72		최우수, 우수, 우량(3)
27	1중도서집필자	교육부	79	86	전국 3등급
28	야영수련활동프로그램개발 연구대회	평생직업교육과	92		1,2,3
29	93년도전산이용기술개발경진대회	행정관리담당관실	93		전국 1,2,3
30	경남교육용소프트웨어공모전	교육정보화과	92	06	전국 1,2,3
31	경남ICT활용연구대회	교육정보화과	94	06	1등급(대상, 금상) 2등급(은상) 3등급(동상, 장려)
32	경남교육정보화연구대회	교육연구정보원	07		1,2,3
33	전국기능경기대회지도우수사례 발표대회	평생직업교육과	89		1,2,3
34	경남교원인터넷경진대회	교육정보화과	01	01	1,2,3
35	경남과학전람회학생작품지도논문 연구대회	과학교육원	07		1,2,3 특, 우수, 장려
36	교원컴퓨터프로그래밍경진대회	과학정보교육과	04	20	1,2,3
37	특별연구교사발표대회	교육연구정보원	96		1,2,3
38	대학수학능력시험평가문항개발 공모대회	교육연구정보원	00		1,2,3
39	경남교육자료개발연구대회	교육연구정보원	70		1,2,3
40	한국정보올림피아드학생지도실적 연구대회	과학정보교육과			1,2,3

[자료 5.2]

전국 교육연구대회 일람표

연번	대회명	개최조직
1	전국학교체육연구대회 (종전 전국학교체육연구논문 발표대회)	대한체육회
2	전국교육자료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3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4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5	인성교육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6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종전 교실수업개선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	교육부
7	전국과학전람회학생작품지도논문연구대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
8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관련 학생작품지도논문연구대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
9	전국교원발명연구대회	특허청
10	과학교육연구대회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
11	전국농업 교사현장연구대회	한국농업교육협회
12	교육방송연구대회	한국교육방송공사
13	교육정보화연구대회 (종전 전산개발경진대회, 전국교육용소프트웨어공모전, ICT활용교육연구대회)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4	전국특수교육연구대회 (종전 특수교육용소프트웨어공모전)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15	진로교육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	교육부
16	학교통일교육 연구대회	교육부, 국립통일교육원
17	자유학기제 실천사례 연구대회(2023.3.9.자 종료)	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

* 관련 : 「연구대회관리에관한훈령」(교육부고시 제403호, 2022.4.8. 일부개정) [별표1]

* 대한민국미술전람회(1991년까지, 한국미술협회, 종전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 통합된 동일기관 (교육부훈령 제720호, 2007.3.12.)

* 시·도 교원단체연합회 주최 교육자료전 : 시·도 규모 연구대회임

* 시·도 과학전시 / 전람회 : 시·도 규모 연구대회임

* 전국교과교육연구발표대회(2021년까지, 한국미래교육연구협의회, 종전 한국열린교육협의회)

* 전국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교경영 및 교수학습 연구대회(2021년까지,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학교교수학습혁신과-2406(2023.3.9.) ‘자유학기제 실천사례 연구대회’ 종료 알림

[자료 5.3]

2024. 경남 교육연구대회 일람표

순	연구대회명	주관부서
1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	초등교육과
2	진로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진로교육과
3	전국영농학생(FFK)전진대회 학생지도실적 연구대회	진로교육과
4	기능경기대회 학생지도실적 연구대회	진로교육과
5	상업경진대회 학생지도실적 연구대회	진로교육과
6	농업교사 현장연구발표대회	진로교육과
7	경남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교수·학습 연구대회	진로교육과
8	독서교육 실천사례 연구대회	창의인재과
9	학교체육 연구대회	체육예술건강과
10	우수선수 지도실적 평정대회	체육예술건강과
11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대회	민주시민교육과
12	제18회 경남 디지털교육 연구대회(구. 경남 교육정보화 연구대회)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13	제32회 경남교육방송연구대회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14	제55회 경남교육자료전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15	2024.(제66회)경남과학전람회 학생작품지도논문연구대회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
16	2024. 과학탐구 학생지도실적연구대회(구. 전국학생지도실적연구대회)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
17	69회 경남현장교육 연구대회	경상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

※ K-에듀파인 → 업무지원 → 알림판 → 일반게시판 → 교육연구대회 계획 →
게시번호(24-105236), 2024. 경남교육청 교육연구대회 계획(전체)

VI

가산점 평정(명부작성대상자)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가산점) －

영역		만점		비고
		교감 등	교사	
가산점	공통가산점	6.35	8.35	
	선택가산점			

1. 평정 절차 및 방법

- 1) 대상자 선정하기
- 2) 경력 및 실적 파악하기
- 3) 경력의 중복평정 금지사항 파악하기
- 4) 공통가산점 평정하기
- 5) 선택가산점 평정하기
- 6) 가산점평정표(엑셀) 작성하기 : 〈서식 6.1〉 〈서식 6.2〉 〈서식 6.3〉
- 7) 평정점 계산하기(프로그램)

2. 경력 및 실적

- 1) 해당 직위에서 쌓은 경력 및 실적 (규정 제1항) (교원정책과-3504, 2007.7.26.)
 - ※ 교육전문직원 경력이 있는 교감
 - 교장 자격/승진을 위한 평정 : 전직 이전의 직위에서 쌓은 경력 및 실적을 포함하되, 교감 자격 취득 후의 경력 및 실적으로 한정함
 - ※ 교육전문직원
 - 교감 자격/승진을 위한 평정 : 교감 등의 직위에서 쌓은 경력 및 실적
 - 교장 자격/승진을 위한 평정 : **교감자격 취득후의 것**
 - **장학관/교육연구관 승진을 위한 평정 : 교육전문직위 것**

- ▷ 교사 -----> [교감]자격/승진 -----> [교장]자격/승진
교사직위 것 교감직위 것

▷ 교육전문직원 -----> [교감]자격/승진 -----> [교장]자격/승진
교육전문직위 것 **교감자격 취득후의 것**

▷ 교육전문직원(장학사/교육연구사) -----> [장학관/교육연구관]승진
교육전문직위 것

- 2) 경력에서 제외되는 기간 :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기간 (인사관리규정 제11조)
- 3) 임용권자가 임용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9조 별표1의 경력에 포함되는 기간제 교사(교원으로서 학습자를 전임으로 교육한 종전의 임시교사, 임시강사 등 포함)가 동규정 제41조 제3항, 제5항의 가산점 취득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가산점을 평정의 대상으로 할 수 있음 (교육부교정07000-107(2000.1.29.))

3. 경력의 중복평정 금지사항 <개정 2010.8.23.>

- 1) 경력이 중복될 때는 공통가산점 경력이 선택가산점 경력에 우선함
- 2) 선택가산점 경력이 중복될 때는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함
 - ① 연구학교 / 교육실습협력학교 / 꿈나르미학교 경력 <개정 2012.7.11.>
 - ② 보직교사 / 한센병환자자녀학교학급 경력
 - ③ 장학사·교육연구사 / 도서·벽지학교근무 경력
 - ④ 도서·벽지학교 / 한센병환자자녀학교학급 경력
 - ⑤ 도서·벽지학교 / 특수교육 경력
 - ⑥ 한센병환자자녀학급 / 특수교육 경력
 - ⑦ 농어촌학교 등/ 한센병환자자녀학교학급 경력
 - ⑧ 농어촌학교 등/ 특수교육 경력
 - ⑨ 도내과전 / 도서·벽지 / 농어촌학교 등 / 준벽지학교 / 도심지역 학교
 - ⑩ 창원과학교 / 농어촌학교 경력
 - ⑪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 / 농어촌학교 경력
 - ⑫ 담임교사 / 보직교사 / 기숙사 사감 경력
 - ⑬ 준벽지학교 / 특수교육 경력 <신설 2012.7.11.>

4. 공통가산점 평정 (규정 제3항)

- 1) 교육부장관 지정 연구·시범·실험학교 근무경력 [자료 6.1]

구 분	연	월	일	상한점
교육부장관~	•	0.018	0.0006	1.00

- ① 교육실습대용학교(2000.3.1.~2004.2.29.)에서 교육실습생을 직접 지도하거나 현장직용 연구 등에 참여한 교원 포함
- ② 2004.3.1.이후 교육실습대용학교 운영 폐지
- ③ 단, 중등 특수 교육실습대용학교는 2005.3.1.이후 폐지
- ④ 교육부장관 지정 연구·시범·실험학교는 2010.3.1.이후 폐지

2)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 근무경력

구 분	연	월	일	상한점
재외국민~	•	0.015	0.0005	0.50

3) 직무연수 실적

구 분	연	월	일	상한점
직무연수 실적	0.08	•	•	1.00

※ 2015.12.31.이전 (1.1.-12.31.) / 2016.1.1.-2017.2.28. / 2017.3.1.이후(3.1.-다음 해 2월 말일)

① 직무연수 학점당(15시간) 0.02점 (단, 연수시간 합산 가능)

② 교육성적(직무연수성적)으로 이미 평정한 연수는 공통가산점(직무연수실적)으로 중복하여 평정할 수 없음

③ 자격연수, 연구실적, 자격취득 실적 학점, 부전공과목 연수, 해외연수, 특수 분야연수기관 지정(교육부장관, 교육감)을 받지 못한 연수는 평정대상에서 제외함

④ 대학원 학위 취득의 연수 학점화 : 연구실적(교육성적 포함)으로 평정하지 않은 학위취득 실적에 대하여 대학원에서 매년 취득한 학점별로 각각 4학점 이내에서 인정함(인정시기는 학위 취득 이후 일괄 인정, 2012.6.14. 교육부예규 제47호 교원연수이수실적의기록 및 관리요령, 2013.4.4. 교원인사과-8500)

⑤ 직무연수 실적 인정 기준 (교원인사과-8500(2013.4.4.)), 교육부 교육복지연수과-5960 (2013.11.14.), -6011(2013.11.15.), 경상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12396(2013.11.25.)

※ 동일과정 인정 제한기간 : 2001.2.21. 이후, 동일기관이 주관하는 동일과정의 연수를 2년 이내에 반복 이수(전문상담교사 자격연수포함)한 모든 연수에 대하여 교육성적평정 및 연수학점인정 대상에서 제외함. (정책 81840-367, 2002.2.8)

※ 동일·유사과정 중복 : (원칙) 2강좌 중 1강좌 인정

* (예외) 해당 연수생이 동일·유사과정이 아님을 증명할 경우 2강좌 모두 인정 (연수생 입증책임)

* 2개 강좌명이 동일·유사하여도 해당 연수과정표 등을 통해 과목의 70% 이상 다른 과정임을 증명할 경우 2강좌 모두 인정

* 적용시기 : 2013.1.1. 이후 이수하는 연수이수 실적(연수종료일 기준)

2013.1.1.이후 이수한 연수와 2012.12.31.이전에 이수한 연수와 중복도 불인정

※ 학기 중 기간 중복 : (원칙) 원격연수와 집합(원격)연수의 중복 시 연수기간이 짧은 연수를 기준으로 연수기간의 1/4 이하인 경우 2강좌 모두 인정(기간 중복이 1/4 초과인 경우 2강좌 중 1강좌만 인정)

* (예외1) 교육부 및 교육청에서 긴급하게 실시되는 정책연수는 중복 허용 (2012.3.1.부터)

- 이수증 좌측상단에 “중복허용”문구를 삽입하거나,
- 교육청에서 이수번호“직무”→“직무(중복허용)”등 방법으로 별도 표기
[예시] 본래 매주 토요일 특수분야 지정된 학교단위 연수를 받는 교사가 학교 폭력 관련하여 긴급하게 15시간 집합연수한 경우, 예외 적용

* (예외2) 휴업일(토·일 등 주말 포함)에 실시하는 연수의 경우 ‘방학 중 기간 중복’을 준용하여 2강좌 중복 허용(주5일제 미실시학교 포함)

[예시] 연수과정명에 휴업일 실시 여부를 표기할 것 : 창의적 체험활동의 실제(주말반)

※ 방학 중 기간 중복 : 원격연수와 집합(원격)연수의 경우 2강좌 중복 허용

※ 연수 기간 중복 허용(변경됨)

* 기존의 기간 중복 금지는 2013.12.31.까지 받은 연수에 적용하고, 2014.1월 이후 “개설”되는 연수과정부터 기간 중복 금지 폐지

- * 같은 기간 중에 다양한 원격연수과정 수강 가능
 - 기존에는 학기 중 기간 중복의 경우 1강좌만 인정하고, 방학기간 중에는 2강좌만 허용하였으나, 연수기간에 관계없이 이수한 모든 과정을 허용

- *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
 - 같은 기간 동안에 서로 다른 집합연수를 2개 이상 이수하는 등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함(사례 : 대학원 연수 파견 기간 중 교감 자격연수 이수 등)

⑥ 자격 취득의 학점화 된 연수 실적

* 학점화 대상 및 인정 학점

대상 자격			인정 학점	직무 관련 학점인정기준
국가기술 자격법령에 의한 자격	기술계 및 기능계 기술 자격	기능사 (기능사보 제외)	3	- 직무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 인정학점 전부 - 직무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 인정학점의 1/2
		기사	5	
		기능장 및 기술사	10	
	서비스계 기술자격		3	
기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직무능력 인증 자격			3	

-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상의 동일종목의 자격증이 2개 이상의 경우는 인정 학점이 가장 많은 자격증 하나만을 학점화 대상으로 함
 - * 자격증 취득일 기준 학점 인정
 <예시>2011.3.26. 워드프로세서1급 자격증 ⇒ 2011년 3학점
 - * 직무 관련 자격 인정 기준
 - 직무 직접 관련 : 경상남도교육공무원 가산점 평정규정 참조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증(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서비스) 또는 선박직원법에 의한 해기사면허증을 소지하고, 특성화고교(마이스터고 포함)에서 관련있는 과목의 수업을 직접 담당하거나, 담당했던 자에 한함.(단, 공업계 이외에는 1994.9.22. 이후 수업 담당자에 한함)
 - * 정보관련 자격증(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및 2012.1.1이후 취득한 워드프로세서 단일등급 자격증(구1급) 및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 직무 간접 관련 : 직무 직접 관련 외의 경우
 - * 유의사항 : 선택가산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및 정보화 관련 자격증으로 사용한 자격증은 교원연수 학점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산점을 인정하지 않음(중복 불가)
- ⑦ 기록란이 부족할 경우 같은 연도 연수 여럿을 묶어서 ‘○○연수 등 60시간’ 식으로 작성하고, 나이스 증빙자료 각각에 모두 형광펜으로 표시

4)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실적(2013년부터 적용)

구 분	연	월	일	상한점
학교폭력~	0.1	•	•	1.00

5. 선택가산점 평정 (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

1) 교육감지정 연구·시범·실험학교 근무경력 등 [자료 6.2, 6.3]

구 분	연	월	일	상한점
①	•	0.0129	0.00043	1.00
②	•	0.0129	0.00043	
③	•	0.0129	0.00043	

- ① 연구·시범·실험학교 : 1973.1.1.부터
- ② 교육실습협력학교 : 2005.3.1.부터, 교육실습대용학교 근무경력 가산점과 합산하여 0.58점을 초과할 수 없음 [자료 6.3] 참고
- ③ 꿈나르미학교 근무경력 <신설 2012.7.11>
- ④ 교육부장관 지정 연구·시범·실험학교 근무경력 가산점과 합산하여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⑤ 인정절차 : 학교장 추천, 교육감 승인
- ⑥ 연구·시범·실험학교 근무경력 가산점 인정범위

구 분	시책분야	교과분야
1990.2.28. 이전	학교장 추천 교원 5명	
1990.3.1. 이후	학교장 추천 교원 7명	학교장 추천 교원 3명, 학교장 추천 해당과목교사 (경남과학고 : 과학/수학)
1993.3.1. 이후	학교장 추천 교원 10명	
1998.3.1. 이후	학교장 추천 교원 정원의 60% 이내	해당과목교사, 학교장 추천 연구지원 교감, 참여 보직교사, 특수전문영역 담당교사
2000.3.1. 이후	학교장 추천 교원 정원의 100% 이내	학교장 추천 교원 정원의 70% 이내

- 학교급식 : 1979년부터 1981년까지만 적용
- 종전의 학교급식법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교육부장관, 교육감이 지정한 학교 급식시범학교 근무 교원도 포함 (중등81430-268, 2000.2.9.)
- 시책분야에서 특정교과목을 연구영역에 포함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과분야로 간주하고 대상자를 추천 승인
- 추천 인원을 산정할 때 소수는 버림(12.5명일 때 12명만 추천)

타시도 전입 교원의 연구·시범·실험학교 근무 가산점: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본도 평정년도의 기준으로 인정(중등교육과-18, 2020.1.2.)

2) 파견 근무경력(각 기관별 확인)

구 분	연	월	일	상한점
①	•	0.0105	0.00035	0.25(2016.2.29이전)
		0.015	0.0005	0.30(2016.3.1이후)
②	•	0.0170	0.00057	0.40
③	•	0.0170	0.00057	0.40

- ① 2002.1.1.이후 경상남도교육감소속 교육, 교육행정, 교육연구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한 교원

단, 아래 기관에 파견된 경우는 제외

- 2017.3.1.이후 행복교육지원센터·교육정책연구 영역(중등교육과-39831, 2016.10.31.)
- 2018.3.1.이후 행복학교·교육정책연구·수업혁신지원팀 영역(중등교육과-35860, 2017.11.6.)
- 2019.3.1.이후 교육정책연구·사립학교정책연구 영역(중등교육과-32854, 2018.10.30./ 중등교육과-33087, 2018.11.1.)
- 행복마을학교 2018.3.1.~2020.2.29.(중등교육과-35860, 2017.11.6.)
- 경남수학문화관·수학교육연구센터 2019.3.1. ~2020.2.29.(중등교육과-33087, 2018.11.1.)

- ② 2005.3.1. 이후 경상남도교육청 학생교육원 남해분원
2009.3.1. 이후 경상남도교육청 낙동강학생교육원
2014.3.1. 이후 경상남도교육청 낙동강학생교육원 진산분원에 파견되어 근무한 교원
2019.3.1. 이후 경상남도교육청 낙동강학생교육원 칠북분원에 파견되어 근무한 교원
- ③ 2012.3.1. 이후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파견되어 교육과 관련된 업무(교재 연구, 강의, 특강, 연수 등)를 직접 수행한 교원 (고시 제2011-8호, 2011.7.7.)
- ④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 근무경력과 합산하여 0.50점을 초과할 수 없음

3) 도서·벽지 근무경력

구 분	1967.4.1~1997.2.28.		1997.3.1~1997.12.31.		1998.1.1.이후		상한점
	월평정점	일평정점	월평정점	일평정점	월평정점	일평정점	
가지역	0.125	0.00417	0.084	0.00280	0.042	0.00140	0.9
나지역	0.096	0.00320	0.068	0.00227	0.034	0.00113	
다지역	0.066	0.00220	0.050	0.00167	0.025	0.00083	
라지역	0.037	0.00123	0.034	0.00113	0.017	0.00057	0.6

- ① 지정기간과 근무기간이 겹치는 기간에서 제외기간을 제외한 기간
- ② 주의 : 급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급지별로 평정
- ③ 2006.3.1. 이후 타 시·도 전입자는 1998.1.1.이후 기준을 준용하여 평정함
- 타 시·도에서 근무한 도서·벽지 근무경력(해당 시·도 교육감(교육장)의 경력확인서 제출(도서·벽지 지정 연월일, 급지, 평정점, 학교 소재지명 기록))

4) 준벽지 근무경력 [자료 6.4]

구분	연	월	일	상한점
준벽지~	•	0.0084	0.00028	0.3

- ① 특수교육 근무경력(중복평정 불가)
- ② 도서·벽지 근무경력, 파견근무 경력, 농어촌학교 등, 도심지역 학교 등(가산점평정규정⑥의2) 근무경력(중복평정 불가)

5) 농어촌학교 근무경력 [자료 6.5]

구분	1998.3.1~2008.12.31.		2009.1.1~2013.12.31.		2014.1.1.이후		2016.1.1.이후		상한점
	월평정점	일평정점	월평정점	일평정점	월평정점	일평정점	월평정점	일평정점	
가지역	0.015	0.0005	0.015	0.0005	0.018	0.0006	0.018	0.0006	1.25
나지역	•	•	0.012	0.0004	0.015	0.0005	0.015	0.0005	
다지역	•	•	•	•	0.012	0.0004	0.012	0.0004	
라지역	•	•	•	•	•	•	0.009	0.0003	

- ① 상한점 1.2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② 단, 다음은 월 0.015점, 일 0.0005점으로 평정함
- 1995.3.1.부터 1998.2.28.까지 명부 등재자
 - 1998.3.1.부터 2008.12.31.까지 농어촌학교 등 근무경력자
- ③ 인정요건
- 1995.3.1.부터 1998.2.28.까지 : 학교 소재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 교원에 한함.
 - 1998.3.1.부터 : 지정학교에 실제로 근무한 교원
- ④ 지역구분 : 2009.1.1.부터 가/나, 2014.1.1.부터 가/나/다지역으로 구분, 2016.1.1.부터 가/나/다/라지역으로 구분

타시도 또는 전입 교원의 농어촌 지역 학교 근무 가산점: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본도 평정년도 “다”급지에 준하여 적용(중등교육과-22437, 2019.12.31.)

6) 창원과학고등학교 근무경력

구분	연	월	일	상한점
창원과학고~	•	0.015	0.0005	1.25

- ① 농어촌학교 등 근무경력 가산점과 합산하여 1.2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② 학년도 내내 파견근무한 교원은 평정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파견근무경력과 중복하여 평정할 수 없음(택1)
- ③ 2011.3.1. 이후 휴직, 파견 등으로 학생을 지도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하고 평정함 (고시 제15호, 2010.8.23.)

7)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근무경력

구분	연	월	일	상한점
산업수요~	•	0.015	0.0005	1.25

- ① 농어촌학교 등 근무경력 가산점과 합산하여 1.2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② 학년도 내내 파견근무한 교원은 평정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파견근무경력과 중복하여 평정할 수 없음(택1)
- ③ 2011.9.1. 이후 휴직 및 파견 등으로 학생을 지도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하고 평정함 (고시 제257호, 2010.11.30.)

8) 특수교육 근무경력 [자료 6.6]

구분	연	월	일	상한점
학교(69.3.1)	•	0.018점	0.0006점	1.00
학급(73.3.1)	•	0.009점	0.0003점	

① 평정 대상 교원

- * 특수교사 자격을 가지고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 * 특수교사 자격을 가지고 일반학교에서 특수학급을 직접 담당(학습지도 포함)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호에 따라 수당을 받는 교원

② 다음 교원은 1995.2.28.까지 특수학교 기준에 따라 평정함

- * 1994.9.22. 이전 특수학급 담당자
- * 1994.9.22. 당시 특수학급을 담당하고 있던 교원

③ 평정 대상 학교 : 창원천광, 경남혜림, 진주혜광, 경남은광, 경남은혜, 통영잠포, 양산희망, 밀양아리솔 및 특수학급 설치학교

9) 보직교사, 담임교사, 기숙사 사감 경력

구분	연	월	일	상한점
보직교사	•	0.021	0.0007	1.25
담임교사 등	•	0.00595	0.000198	0.50

① 보직교사 근무경력(장학사·교육연구사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1.25점을 초과할 수 없음)

② 보직교사 경력, 담임교사 경력, 기숙사 사감경력이 중복될 경우 택일[교육공무원가산점 평정규정(중등) 제6조제⑩항 참고]

③ 담임교사 등의 경력 및 인정기준

가. 2012.9.1. 이후 담임교사 경력 중 통산 3년을 초과하는 경력

나. 2016.3.1. 이후 부장교사 경력 중 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중등) 제6조 제⑧항 경력으로 평정하지 아니한 경력

단, 2012.9.1.이후 담임교사, 2016.3.1.이후 부장 또는 기숙사 사감 경력 중 통산 3년을 초과하는 경력

다. 2016.3.1. 이후 기숙사 사감 경력, 단 2012.9.1.이후 담임교사, 2016.3.1. 이후 부장 또는 기숙사 사감 경력 중 통산 3년을 초과하는 경력

④ 사감경력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운영하는 기숙형 공립고 13개교(거창여고, 고성중앙고, 남해제일고, 산청고, 영산고, 의령고, 하동고, 함안고, 함양고, 합천고, 거제옥포고, 김해대청고, 진해고), 거점기숙형 중학교 4개교(미리벌중, 소가야중, 한다사중, 거창덕유중)의 기숙사 사감에 한함(2018.2.28.까지)

⑤ 2018.3.1.부터는 경상남도교육청공유재산으로 등록된 기숙사를 운영하는 국·공립학교의 기숙사 사감에 한함(2023.02.28.까지)

⑥ 2023.3.1.부터는 경상남도교육청내에서 기숙사를 운영하는 국·공립학교의 기숙사 사감에 한함

- ⑦ 사감 경력 인정 인원은 3월에 보고된 수용 학생수를 기준으로 학생수 50명 미만은 3명, 50명이상 100명 미만은 4명, 100명 이상 150명 미만은 5명,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은 6명, 200명 이상은 7명으로 함(가산점평정규정 6조10항)

10) 장학사/교육연구사 경력

구분	연	월	일	상한점
장학사~	•	0.015	0.0005	0.75

○ 보직교사 경력과 합산하여 1.25점을 초과할 수 없음 (2014.1.1.이후 적용)

11) 영재교육원 강사 근무경력

구분	연	월	일	상한점
영재교육원~	0.1	0.0084	0.0003	0.20

- ① 2006.3.1. 이후
- ②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기관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 강사로 임명되어
- ③ 6개월 이상 학급담임을 맡아
- ④ 연 34시간 이상 영재교육을 담당한 교사

12) 발명교육 지도교사 근무경력

구분	연	월	일	상한점
발명교육(~2021.2.28.) ③의 가,나,다 또는 가,나,라 충족	0.1	0.0084	0.0003	0.20
발명교육(2021.3.1.~2022.2.28.) ③의 가,나,마 충족	0.1	0.0084	0.0003	
발명교육(2022.3.1.~) ③의 가,나,사 충족	0.1	0.0084	0.0003	
발명교육(2021.3.1.~2022.2.28.) ③의 가,나,바 충족	0.05	0.0042	0.00015	
발명교육(2022.3.1.~) ③의 가,나,아 충족	0.05	0.0042	0.00015	

- ① 2006.3.1 이후
- ② 지도교사 인정 요건
 -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기관에서 운영하는
 - 나. 영재교육원 발명영재학급의
 - 다. 수업을 연 34시간 이상 지도하고
 - 라. 실적물 전시회(지도교사 성명이 포함된 공문이 경상남도교육청에 보고된 것)를 연 1회 이상 운영하고
 - 마. 다음 학생을 직접 지도한 교사에 한함

③ 학생 인정 요건

- 가. 영재교육원 발명영재학급의 학생이거나
- 나. 영재교육원 발명영재학급 지도교사가 소속된 학교의 재학생으로서
- 다.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장려상 또는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동상 이상을 수상한 학생에 한한다.
- 라. 경남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금상을 수상하고, 동일연도에 동일학생 동일 작품으로 출원하여,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등록한 학생에 한한다.
- 마.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우수상 또는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우수상 이상(특별상 포함)을 수상한 학생에 한한다.(개정 2021.3.1. ~ 2022.2.28. 실적)
- 바. 경남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금상 또는 전국학생발명품경진대회 장려상 또는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장려상을 수상한 학생에 한한다.(개정 2021.3.1. ~ 2022.2.28. 실적)
- 사.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우수상 또는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은상 이상(특별상 포함)을 수상한 학생에 한한다.(개정 2022.3.1. 이후 실적)
- 아. 경남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금상 또는 전국학생발명품경진대회 장려상 또는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동상을 수상한 학생에 한한다.(개정 2022.3.1. 이후 실적)

④ 특허권 등은 출원연도별로 1건만 인정함(2021.3.1.폐지)

⑤ 특허권 등은 등록연도의 실적으로 보고 평정함(2021.3.1.폐지)

⑥ 단,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5조에 따라 연구대회입상 실적으로 평정한 실적은 가산점 평정에서는 제외함

13)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학생 지도실적

구분	연	월	일	상한점
금	0.100	●	●	0.20
은	0.050	●	●	
동	0.025	●	●	

- ①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학생의 지도교사
- ② 교육연구, 영재, 발명, 학력향상 가산점과 합산하여 0.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③ 1년에 2개 이상의 메달을 수상한 경우 상위 하나만 인정함
- ④ 단,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5조에 따라 연구대회입상 실적으로 평정한 실적은 가산점 평정에서는 제외함

14)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근무경력

구분	연	월	일	상한점
청소년단체~	0.04	0.0034	●	0.074

- ① 지도교사 정원 및 (평정인원) : 등록시점을 기준으로 가입학생 수에 따라

- 20~50명 단체는 2명(1명)
(단, 6학급 이하 학교의 10~50명 단체도 이에 따름)
- 51~80명 단체는 3명(2명)
- 81~120명 단체는 4명(2명)
- 121명 이상 단체는 5명(2명)

② 지도교원의 인정 요건

- 2010.3.1. 이후 3년 이상(비연속 허용) : 2013.3.1.- 2014.12.31.(최대 22개월 인정)(단절기간이 없는 경우 2013학년도는 0.04, 2014학년도는 0.034)
- 청소년단체 지도교사로 등록되고
- 등록 이후에 연수를 30시간 이상 이수하고
- 학교에서 청소년단체 업무 담당자로 분장되어
- 학교 대원(단원)을 연간 100시간 이상 직접 지도한 교원에 한함

③ 연수의 인정 요건

- 경상남도교육청 주관 야영수련직무연수와
- 경상남도교육청 지정 특수분야 연수기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단체 지도자 연수를 포함함
- 원격연수는 제외함

④ 지도시간 인정 요건

- 지도시간 산정기간은 평정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으로 함
- 지도교사 1명당 10명 이상의 대원/단원을 지도한 경우에 한함
- 숙박 포함 1일 8시간 이내, 1월 32시간 이내로 함
- 학교의 연간지도계획에 따른 지도교원 회의시간과
- 지역(지구) 또는 전국(중앙) 단위 회의 참석시간(1일 2시간 이내, 연 5회까지)을 포함함
- 순수한 청소년단체활동이 아닌 시간, 수련원 등을 이용한 위탁교육 시간, 특별 활동 등 교육과정에 포함된 시간은 제외함

15) 경로효행 입상실적

구분	연	월	일	상한점
경로효행 실적	•	•	•	0.1

① 2010.3.1.부터 2012.2.29.까지

② 경상남도교육감이 시상하는 경로효행상을 수상한 교원

③ 1인 1회에 한함

16) 학력향상우수학교 유공실적

구분	연	월	일	상한점
학력향상~	0.05	0.00417	•	0.25

- ① 2010.3.1.부터 2015.2.28.까지
- ② 학교급별 국·공립학교수의 20%의 학교(소수는 올림)
- ③ 교사 정원의 25%의 인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반올림을 해도 1명이 되지 않는 학교도 1명)
- ④ 파견근무경력과 중복평정 불가(택1)
- ⑤ 학년도 내내 파견근무한 교사는 평정 대상자가 될 수 없으며,
- ⑥ 휴직 및 파견 등으로 현임교에서 학생을 지도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

17)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실적

자격증	평정점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증(기술사, 기능장, 기사1/2급, 산업기사, 기능사 1급, 서비스1급/1단) 또는 선박직원법에 의한 해기사면허증(1~3급)을 소지하고, 실업계고교에서 관련있는 과목의 수업을 직접 담당하거나, 담당했던 자에 한함(공업계외의 실업계는 1994.9.22. 이후 담당자에 한함) 2. 정보관련 자격증(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전문가, 사무자동화산업기사) <개정 2024.7.8.> 단, 멀티미디어콘텐츠전문가,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자격증은 2025.3.1.이후 취득부터 적용 3. 워드프로세서 1급 자격증 또는 2012.1.1. 이후 취득한 워드프로세서 단일등급 자격증 <개정 2012.10.23.> 4.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자격증 <개정 2017.7.10.>	0.30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증(기능사2급 및 등급이 없는 경우, 서비스2,3급) 또는 선박직원법에 의한 해기사 면허증(4~6급)을 소지하고, 실업계고교에서 관련 있는 과목의 수업을 직접 담당하거나, 담당했던 자에 한함(공업계외의 실업계는 1994.9.22. 이후 담당자에 한함) 2. 정보관련 자격증(정보처리기능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단,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자격증은 2025.3.1.이후 취득부터 적용 3. 워드프로세서 2,3급 자격증 4. 컴퓨터활용능력 3급 자격증(교원86010-852, 2000.8.22.)	0.10

-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에 한함(단, 선박직원법에 따른 해기사 면허증은 포함하되, 1997.7.9. 이후 취득 실적부터 평정)
- ② 국가공인기관이라 할지라도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에 규정하지 않은 종목의 자격증은 평정 대상에서 제외함
- ③ 자격증이 2개 이상일 경우는 점수가 높은 것 하나만 평정함
- ④ 인정요건
 - 기술분야 : 자격증(해기사 면허증 포함)을 소지하고, 특성화고교 및 마이스터고교에서 관련 있는 과목의 수업을 직접 담당해야 함
 - 정보/사무분야 : 교육공무원가산점 평정규정 제7조제8항 1호, 2호에 따름
- ⑤ 교원정보활용능력인증 취득실적 가산점은 국가기준이 마련되면 시행

18) 교육활동우수교사 실적

구분	연	월	일	상한점
교육활동우수교사	0.06	0.005	•	0.06

① 2016.3.1.부터 2017.2.28.까지

19) 교육연구대회 실적

구분	연	월	일	상한점
교육연구대회 실적	0.05	•	•	0.2

① 2016.1.1.부터 적용

② 평정점 : 공동연구(2인:7할, 3인:5할, 4인 이상:3할 인정. 2017.3.1.부터 적용)

※ 연수성적의 연구대회 입상실적과 중복인정 하지 않음

※ 입상 학년도별 1회만 인정함

20) 도심지역 학교 근무실적

구분	연	월	일	상한점
도심지역 학교 근무실적	0.048	0.004	0.00013	0.48

① 2017.3.1.부터 교사만 적용

② 단, 도서벽지, 준벽지, 파견기관 근무 경력 제외

※ 농어촌학교 등 경력가산점이 1.25점에 도달한 교사가 농어촌 학교 등에 근무한 경력도 2017.3.1.부터 2020.2.29.까지는 최대 3년간 도심지역 경력가산점으로 평정

※ 농어촌학교 등 경력가산점이 1.25점에 도달한 전문교과 교사가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에 근무한 경력도 2017.3.1.부터 월 0.004점으로 평정(상한점 0.48점)

※ 거제, 양산 지역의 농어촌 지역 학교 일부를 해지하여 도심지역 학교로 전환한다.

〈시행일: 2026.3.1.〉

- 거제(6개교): 거제상문고, 거제중앙고, 고현중, 거제중앙중, 계룡중, 신현중

- 양산(7개교): 물금고, 범어고, 증산고, 신주중, 물금중, 양산중앙중, 금오중

6. 가산점평정표(엑셀) 작성하기 : 〈서식 6.1〉 〈서식 6.2〉

7. 평정점 채점하기 : 프로그램

1)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으로 나누어 평정한 값을 합산함 (규정 제41조)

2) 중복평정 금지경력과 합산상한점에 유의하여 평정표를 작성해야 함

8. 기타사항

- 1) 평정시기 : 매학년도 종료일 또는 승진후보자명부 조정 시기 (규정 제43조)
- 2) 평정자, 확인자 : 경력평정과 동일함 (인사관리규정 제6조)
- 3) 그 밖에 교육발전과 교육과정 운영·생활지도·특별활동 등과 관련된 교육활동에 있어서 명부작성권자가 인정하는 경력 및 실적이 있는 경우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를 시행할 때는 6개월 전에 예고해야 함 (규정 제41조 5항)
- 4) 한국사 능력 검정 및 한국사 연수 관련 안내

① 근거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6항**

② 적용일 : 2023.11.16.부터(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5477(2023.11.16.))

③ 적용대상 : 2024년 교감 자격연수 응시대상자부터 적용

④ 인정범위

- 한국사 능력 검정

- 기준일 : 교(원)감 자격연수과정 응시대상자 순위명부 작성일 현재
- 인정범위 :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3급 이상)에 합격한 경우

※ 개정 내용 : 5년 이내 인정 기간 삭제

- 증빙자료 : 합격증 사본 등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인정한 공적 문서

- 한국사 연수

- 기준일 : 교(원)감 자격연수과정 응시대상자 순위명부 작성일 현재
- 연수기관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에 따른 연수원
- 인정기준 : **임용일(교사 신규채용) 이후 연수 이수 실적에 한함**
- 연수범위 : 교원의 역사 인식 함양 및 관련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국사를 폭넓게 다루고, 한국사능력시험 3급 수준*의 연수과정 인정 권장

* 한국사의 흐름을 이해하고, 한국사의 개념과 전개과정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수준

- 인정방법 : 상기 연수원에서 운영하는 한국사 관련 과정은 운영 방법(집합/원격/혼합)에 관계없이 60시간 이상이면 인정

※ 60시간 이상 단일과정은 승진 평정요소 중 교육성적으로 인정 가능하며, 60시간 미만 과정은 가산점의 직무연수로 인정 가능
(단 중복인정은 불가)

- 증빙자료 : 이수증 사본 등 해당연수원에서 인정한 공적 문서

[자료 6.1]

교육부 지정 연구·시범·실험학교 일람표

학년도	학교명
1973	김해여고, 반성중, 사천농고, 언양농고, 울산여고, 진영농고, 진주기공, 창녕농고, 창녕중, 함안중고
1974	마산고, 마산동중, 마산여고, 밀양중, 사천농고, 울산일중, 진주중, 창녕농고, 함안중고, 함양중고
1975	고성농고, 사천농고, 울산일중, 진주기공, 진주여중, 진주중, 창녕농고
1976	고성농고, 김해고, 사천농고, 울산공고, 진주공고, 진주여중, 진해중, 창녕농고
1977	김해고, 김해여고, 남해중고, 사천농고, 울산공고, 울산일중, 진주공고, 진해여중, 진해중, 창녕농고
1978	남해수고, 남해중고, 마산동중, 마산여중, 밀양고, 밀양여고, 사천농고, 울산공고, 진주중, 창녕농고
1979	거창농림고, 거창여고, 김해고, 김해여중, 마산여중, 사천농고, 울산공고, 울산여고, 진해중, 창녕농고
1980	김해고, 남해수고, 밀양고, 사천농고, 산청중고, 울산공고, 진해중, 창녕농고
1981	남해수고, 사천농고, 산청중고, 울산공고, 진주고, 진주여고, 진해고, 창녕농고
1982	남해수고, 진주고, 진주여고, 창녕농고
1983	경남혜림학교, 진주여중, 통영고, 학성고
1984	경남과학고, 김해농고, 마산동중, 마산상고, 진주여중, 통영고, 학성고
1985	경남과학고, 김해농고, 마산동중, 양덕여중, 함안중고
1986	경남과학고, 고성여고, 마산상고, 양덕여중, 함안중고
1987	경남과학고, 마산상고, 진주기공
1988	경남과학고, 진주기공, 진주혜광학교, 창원기공, 창원중앙고
1989	경남과학고, 경원중, 마산중, 언양농고, 진주혜광학교, 창원중앙고
1990	경남과학고, 경원중, 마산중, 언양농고, 울산여중
1991	경원중, 삼천포제일여중, 울산여상, 진주여중, 진해여고
1992	경원중, 삼천포중앙여중, 영산중, 진주여중, 진주혜광학교, 진해여고
1993	경남과학고, 영산중, 진주혜광학교, 합포여중
1994	경남과학고, 마산고, 진주중, 합포여중

학년도	학교명
1995	마산고, 진주기공, 진주중
1996	고성여고, 마산양덕중, 신현중, 울산남고, 진해중, 창원기공, 충무여중
1997	경남자영고, 고성여고, 마산양덕중, 밀양여중, 삼정중, 신현중, 진주중앙중, 진해중, 창원기공, 충무여중, 합포중
1998	거창중, 경남자영고, 금남고, 김해농고, 김해여고, 남해정보산업고, 마산상고, 밀양여중, 삼정중, 삼천포중앙여중, 진주중앙중, 창녕중, 초계중, 초동중, 함안중, 함양여중, 합포중, 회화중
1999	거제여상, 거창중, 금남고, 김해농고, 김해여고, 남해정보산업고, 마산상고, 밀양초동중, 삼포중앙여중, 신어중, 진해고, 창녕중, 창원중앙중, 초계중, 함안중, 함양여중, 함양제일고, 회화중
2000	거제여상, 창원중앙중, 함양제일고
2001	경남과학고, 경남항공고, 밀양여중, 함양제일고
2002	경남과학고, 경남항공고, 장유고, 함양제일고
2003	경남항공고, 김해대청고, 김해여고, 양산고, 웅남중, 임호중, 장유고, 진영제일고, 진주여중, 창원남산고, 창원중앙여고, 팔룡중, 함안고
2004	거제공고, 김해대청고, 김해여고, 마산고, 마산여중, 마산합포고, 양산고, 웅남중, 진영제일고, 진주여중, 진해여고, 창원명곡고, 창원중앙여고, 통영중, 팔룡중, 함안고
2005	거제공고, 경남해양과학고, (5.1.남해정보산업고), (5.1.능동중), 동진중, 마산고, 마산여중, 생림중, 옥지중, 진영제일고, 진해고, 진해여고, 창원명곡고, 통영중, 팔룡중, 함안고, (5.1.합천중), 합포고, 호계중
2006	거제공고, 경남해양과학고, 경상대사대부설고, 경상대사대부설중, 경원중, 김해건설공고, 김해생명과학고, 남해정보산업고, 능동중, 마산가포고, 마산여중, 밀양여중, 삼성중, 생림중, 옥지중, 진영고, 진영제일고, 진주여고, 창원기계공고, 통영중, 함안고, 합천중, 합포고, 경남체육고, 창원명곡고
2007	거제여고, 거제옥포고, 경남과학고, 경남자영고, 경남항공고, 경원중, 김해건설공고, 김해삼문고, 김해생명과학고, 김해영운고, (남해정보산업고.4.30), (능동중.4.30), 대방중, 마산내서여고, 밀양공고, 밀양여중, 삼성중, 신주중, 안골포중, 안남중, 영운중, 진영고, 진전중, 진주여중, 창원기계공고, 창원사파고, (합천중.4.30), 합포고, 호계중
2008	경남과학고, 경남자영고, 경남항공고, 경남해양과학고, 김해삼문고, 마산내서여고, 밀양공고, 안골포중, 안남중, 영운중, 월산중, 진전중, 진주여중, 진해용원고, 창신고, 창원사파고, 호계중
2009	경남해양과학고, 진해용원고, 창신고. 끝.

[자료 6.2]

교육감 지정 연구·시범·실험학교 일람표

학년도	학교명
1973	거창여고, 김해여고, 마산동중, 마산여고, 마산여중, 방어진중, 진해동중, 진해중, 함양중고
1974	마산여고, 방어진중, 언양농고, 진주공고, 진해동중, 진해여고, 통영중
1975	김해고, 단성중, 마산동중, 방어진중, 통영고, 통영여고
1976	울산여고, 진해여중, 통영고, 함양여중
1977	김해여고, 남창고, 마산동중, 울산여고, 진주여고, 창북중
1978	김해여중, 김해중, 밀양중, 산청중, 진주여고, 진주중, 진해여고, 진해여중, 함양여고
1979	김해여고(직업반), 김해여고(체육), 밀양여고, 밀양중, 함양여중
1980	고성여중, 삼천포일중, 진교중, 진해여고, 진해여중, 통영여고, 함양중
1981	거제중고, 계성중, 김해여고, 김해중, 남해중고, 단성중고, 덕문중, 마산고, 마산상고, 마산여고, 마산여중, 밀양여고, 밀양여중, 울산여고, 울산여중, 울산일중, 진주여중, 통영여고, 통영중, 하청중, 한산중
1982	거창중, 김해여고, 남해중, 울산여고, 웅촌상고, 의령중, 지세포중, 진해여고, 진해중, 통영중, 합천중
1983	거창여중, 거창중, 고성여고, 고성여중, 기장중, 김해농고, 김해여고, 김해중, 남해상고, 남해중, 마산고, 마산여중, 밀양고, 밀양여중, 사천중, 산청중, 삼천포공고, 쌍백중, 양곡중, 연초중, 울산일중, 울산중양여중, 의령중, 진교중, 진주고, 진주중, 진해고, 진해여중, 창녕중, 창원공단중, 통영여고, 통영중, 학성여중, 함안중, 함양여중, 함양중, 합천중
1984	거창중, 고성동중, 고성여중, 기장중, 김해건설공고, 김해고, 김해중, 남해여중, 남해중, 마산여고, 마산여중, 밀양여중, 사천중, 산청중, 삼천포공고, 쌍백중, 양곡중, 양덕중, 양산중, 연초중, 울산남고, 울산여상, 울산중양고, 의령중, 진교중, 진영농공고, 진영여상진주고, 진주남중, 진주중, 진해여고(국민정신), 진해여고(생물), 진해여중, 창녕중, 창원기공, 창원여고, 통영중, 학성여중, 함안중, 함양여중, 합포여중
1985	가조중, 거제고현중, 거창여고, 고성여고, 고성중, 김해서중, 김해여중, 남수중, 대현중, 마산서중, 마산중, 밀양중, 법수중, 삼가고, 삼천포공고, 삼천포제일중, 성포중, 수동중, 신등중, 신반중, 양덕중, 양주중, 영산중, 옥종고, 울산중양고, 울산중양여고, 의령중고, 진영여상, 진주서여중, 진주중, 진주중양중, 진해고, 창덕중, 창원공단중, 초계중, 충무여중, 태화여중, 통영여고, 통영여중, 하동중양중, 학성여고, 학성중, 화진여중
1986	가조중, 거제여상, 거창여고, 경남천광학교, 고성여중, 고성중, 기장중, 김해여고, 김해여중, 남수중, 남해상고, 남해여고, 남해중고, 대곡중, 마산중, 마산중, 밀양고, 밀양중, 반송여중, 법수중, 부곡중, 삼가고, 삼천포공고, 삼천포제일중, 성포중, 수동중, 신등중, 신반중, 신정여중, 양주중, 영산중, 울산공고, 울산중양고, 진주중양중, 창덕중, 창원공단중, 창원기공, 창원중양고, 초계중, 태화여중, 통영여고, 통영여중, 통영중, 하동중양중, 화진여중
1987	거제제일중, 거창농고, 경남천광학교, 경호중, 계성중, 고현중고, 고현중(남해), 곤양중, 구암중, 금남중, 김해고, 김해여상, 농소중, 마리중, 마산여고, 무안중, 밀양여고, 반성중, 반송여중, 부곡중, 양곡중, 양덕중, 양산중, 여항중, 울산상고, 울산서여중, 울산중양중, 의동중, 진양고,

학년도	학교명
1987	진해중, 창원기공, 창원여고, 충무여중, 통영여고, 학성고(지구과학), 학성고, 함양여중고, 함양중합천중고, 회화중
1988	거제제일중, 거창여고, 경호중, 계성중, 고현중(남해), 곤양중, 금남중, 김해고농소중, 마리중, 마산동중, 마산중, 무안중, 밀양여중, 반성중, 반송여중, 사천농고, 삼천포중앙여중, 쌍책중, 양곡중, 양덕중, 양산고, 양산중, 연양농고, 연양여상, 여항중, 울산중앙중, 의동중, 진교중, 진서고, 진양고, 진영여상, 진영여중, 진주여중, 진해중, 창원여고, 충무여중, 통영여중, 학성고, 함양중, 합포여중, 회화중
1989	거창여중, 고성농고, 고성동중, 고성여고, 김해서중, 김해중, 남해수고, 남해여중, 단성중, 동진중, 마천중, 밀양여고, 밀양여중, 반송중, 부곡중, 산양중, 삼천포제일여중, 상동중, 신반여중, 신정여중, 악양중, 야로중, 양덕여중, 양산고, 연양중, 울산상고, 원동중, 진영여상, 진주남중, 진해고, 진해여중, 창원여고, 하청중
1990	거제수고, 고성여고, 구암여중, 김해농고, 김해여고, 남해수고, 대곡중, 덕산중, 동부중, 등대중, 마산상고, 밀양고, 서상중, 신정중, 용주중, 울산공고, 울산여고, 진주고, 진주기공, 진주여고, 진해중, 창녕농고, 청동중, 하동중앙중, 하일중, 학성여고, 한얼중, 함안중
1991	거제수고, 경남과학고, 김해건설공고, 김해여고, 마산고, 마산여중, 사천농고, 상남중, 양덕여중, 양정중, 울산상고, 울산여고, 울산중앙고, 진주남중, 창원기공, 창원여고, 함안중, 함양고, 합포고, 합포중
1992	거창중고, 고현중고, 곤양고, 남해수상고, 대곡고, 마산서중, 명신고, 삼천포공고, 연양중, 진영여상, 창북중, 창원중앙고, 충무고, 학성고, 함양여중
1993	거제여상, 거창중, 고성여고, 김해건설공고, 남해여고, 밀양중, 양정중, 울산공고, 진해여중, 창녕농공고, 토월중, 통영고, 학성고, 합천중
1994	거제고현중, 거제제일중, 거창여중, 마산상고, 밀양고, 양정중, 울산여고, 울산여상, 울산중앙고, 웅촌상고, 진주고, 진주기공, 진주중앙중, 창녕중, 창원기공, 창원중앙고, 통영여중, 화개중
1995	경남혜림학교, 고성농공고, 금곡중, 김해농고, 남해상고, 명신고, 밀양여고, 삼정중, 삼천포공고, 신월중, 울산상고, 울산제일중, 의령중고, 진해고, 진해중, 창원여고, 충무중, 하동중앙중, 학성고, 학성여고, 함양중, 합포고
1996	거창중, 경남과학고, 경남천광학교, 고성중, 금남고, 남창고, 동진여중, 마산중, 밀양고, 밀양여중, 반림중, 삼천포중앙여중, 연양여상, 영산고, 울산서여중, 울산중앙여고, 웅남중, 의령중, 진영농고, 진주중앙중, 진해여고, 창녕농공고, 하동중고, 함양실고, 화정실고
1997	가포고, 거제수고, 거제중앙고, 고성중, 곤양고, 김해고, 김해중, 남해중, 단성중, 덕산고, 마산여고, 명서중, 밀양여고, 사파중, 삼가고, 삼천포중앙고, 양덕여중, 양산고, 양산중, 연초중, 옥포중, 진교중, 진주고, 진주상고, 진주중, 진주해광학교, 진해고, 진해여중, 진해중고, 창녕중, 창원중앙고, 충무중, 한얼중, 함안중고, 함양실고, 합천중, 해운중
1998	거제여상, 거제중고, 거제중앙고, 거창여고, 경남은광학교, 경남항공고, 곤양중, 김해가야고, 김해대동중, 남해여중, 마산고, 마산서중, 명서중, 밀양공고, 밀양중, 산청고, 삼가중, 삼성중, 삼천포공고, 성포중, 신원중, 양덕여중, 영산중, 웅남중, 원동중, 진영농공고, 진주서여중, 진주여고, 진해여고, 창원대산고, 창원명지여고, 창원여고, 청도중, 초계중고, 토월중, 하동중고, 한얼중, 함양고, 함양중, 합포고, 해운중
1999	거제공고, 경남과학고, 경남혜림학교, 구암중, 금남중, 김해고, 김해중, 대방중, 덕곡중마산여고, 마산중, 무안중, 밀양고, 반송여중, 부곡중, 양덕중, 영산중, 웅상중, 의령고, 진영여상, 진주고, 진주여중, 진해여고, 진해중, 창북중, 창원기공, 창원명지여고, 창원중앙고, 충무고, 충무중, 통영여고, 평산중
2000	가포고, 거제중앙중, 경남과학고, 경남정보고, 경남천광학교, 경원고, 고성여고, 고성여중, 구암중, 김해가야고, 김해고, 김해서중, 남해중, 동진여중, 마산고, 마산동중, 마산여중, 명신고, 밀양여고, 반성중, 사천중, 삼가고, 삼천포공고, 삼천포중앙고, 삼현여고, 상동중, 수동중, 양곡중, 양산중, 옥포중, 웅상고, 위천중, 진교중, 진명여중, 진영제일고, 진주봉원중, 진주여고,

학년도	학교명
2000	진해고,진해동중,진해제일고,창녕중,창덕중,창원남산고,창원여고,창원중앙여고,충무여중,통영고,통영중,함안고,합포여중,회화중
2001	가조중,가포고,거제고현중,거제중고,거제중앙고,거창중,경남은광학교,고성여고,고성회화중,금남고,김해건설공고,김해경원고,김해고,김해대동중,김해농고,김해서중,김해여고,남해여중,마산고,마산구암고,마산동중,마산여중,명지여고,밀양고,밀양여고,봉림중,부곡중,사천중,삼정중,삼현여고,생초중,신반중,안의고,양곡중,양산고,양산중,양주중,옥중고,웅상중,위천중,의령고,진영고,진영제일고,진전중,진주명신고,진주봉원중,진주중,진주해광학교,진해고,진해동중,진해동진여중,진해동진중,진해여고,진해제일고,창녕계성중,창원남산고,창원반림중,창원여고,창원중앙여고,철성중,충무고,충무중,통영중,한얼중,함안중,함양수동중,합포고,혜성여중
2002	거제제일고,거제중고,거창중,경남은광학교,경남천광학교,경남체고,계성중,고성동중,고성여중,구남중(구산분교장),구암중,김해경원고,김해농고,김해중,남해중,내동중,내서중,단성고,대곡중,동진중,마산가포고,마산구암고,마산여고,마산용마고,마산중,명신고,무안중,밀양공고,밀양중,반송여중,반송중,삼가고,삼천포공고,삼천포중앙여중,수동중,신반정보고,신월중,신현중,쌍책중,안의고,양산고,영산고,영산중,웅남중,웅상중,임호중,진교중,진영여중,진영제일고,진주중,진해고,진해여고,진해여중,진해제일고,진해중,창녕중,창덕중,창원기계공고,창원명지여고,창원사파고,창원중앙여고,초계중고,충무고,충무여중,통영여고,하동고,한얼중,해성고,혜성여중
2003	거제공고,거제여상,거제제일고,거제해성고,거창중,경남자영고,경남천광학교,경남체고,고성여중,고성중앙고,구남중(구산분교장),김해건설공고,김해고,김해여중,김해중,남해제일고,남해중,단성고,대곡중,도산중,마산여고,마산중,명서중,무안중,밀양여고,반송여중,반송중,삼가고,삼천포공고,삼천포중앙고,삼천포중앙여중,신반정보고,신월중,양주중,영산고,영산중,옥포중,월산중,진명여중,진영고,진영여중,진주고,진주중앙고,진주중앙중,진해고,진해여중,진해중,창녕제일고,창원용호고,창원중앙고,초계중고,통영여고,하동고,함양중,합천중,합포여중,합포중
2004	가야중,거제여상,거제중고,거제중앙고,거제중앙중,거창여중,경남은혜학교,경남자영고,경남정보고,경운중,고성중(삼산분교장),고성중앙고,구남중(구산분교장),구암고,구암중,김해건설공고,김해경원고,김해고,김해대동중,김해여중,남산중,남해제일고,내서중,대방중,동진여중,동진중,마산동중,마산용마고,명서중,명신고,밀양고,밀양공고,밀양여고,분성고,사천중,산청고,삼계중,삼천포공고,삼천포중앙고,양주중,영산고,옥포중,웅상고,월산중,의령고,장유고,진명여중,진양고,진영고,진주고,진주여고,진주중,진해중,창녕중,창원기계공고,창원명지여고,창원신월고,창원여고,창원용호고,초계중고,초계중,하동중앙중,한얼중,함안중,함양고,합천고,합포중
2005	가야중,거제고현중,거제여상,거제제일고,거제중고,거제중앙고,거제중앙중,거창산업과학고,경남과학고,경남항공고,경운중,고성여중,고성중(분교장),고성중앙고,고현중,곤양고,구남중(구산분교장)구암중,금남중,김해가야고,김해건설공고,김해경원고,김해농고,김해대동중,김해대청고,김해분성고,김해삼계중,김해삼문고,김해서중,김해중,남산중,내동중,내서중,단성중,대방중,마산구암고,마산내서여고,마산여고,마산용마고,명신고,명지여고,밀양공고,밀양여고,반성중,봉림중,부곡중,사천중,산청고,삼가중,삼계중,삼정중,삼천포공고,서포중,신반정보고,신반중(분교장),신월고,안골포중,야로고,양덕중,양산남부고,영산고,웅상고,웅상중,의령고,임호중,장유고,진명여중,진양고,진주고,진주남중,진주중,진주중앙중,진주해광학교,진해여중,진해중,창녕제일고,창녕중,창덕중,창북중,창원기공,창원남산고,창원여고,초계중고,초계중,충무중,통영고,하동고,하동중앙중,한얼중,함양고,함양제일고,합천고

학년도	학교명
2006	거제제일고, 거제중고, 거제중앙중, 거창산과고, 거창여고, 거창중, 경남과학고, 경남자영고, 경남정보고, 경남항공고, 경운중, 고성여중, 고성중앙고, 고현중, 관동중, 김해대청고, 김해분성고, 김해분성여고, 김해서중, 김해여고, 김해외고, 김해중, 남해제일고, 남해중, 내동중, 내서중, 단성고, 단성중, 마산공고, 마산내서여고, 마산서중, 마산여고, 마산용마고, 마산중, 밀양고, 밀양공고, 밀양여고, 밀양중, 반성중, 반송중, 사천여중, 사파중, 산청고, 산청중, 삼가고, 삼가중, 삼천포공고, 삼천포제일중, 삼천포중앙고, 삼천포중앙여중, 신반정보고, 신현중, 안골포중, 양곡중, 양산남부고, 영산중, 웅남중, 웅상고, 웅상여중, 웅상중, 월산중, 위천중, 의령고, 진교고, 진전중, 진주기공, 진주여중, 진주해광학교, 진해여고, 진해제일고, 창녕제일고, 창녕중, 창덕중, 창원남산고, 창원사파고, 창원신월고, 창원중앙고, 창원중앙여고, 초계고, 충무고, 충무중, 토월중, 통영고, 하동고, 하일중, 함양고, 함양여중, 함양제일고, 함포여중, 호계중, 화개중
2007	거제고현중, 거제공고, 거제제일고, 거제중앙고, 거창산업과학고, 거창여고, 거창여중, 거창중, 경남산업고, 경남은광학교, 경남정보고, 경남체고, 경남해양과학고, 경운중, 계룡중, 계성중, 고성동중, 고성여중, 고성중(삼산분교장), 고성중앙고, 곤양고, 관동중, 구남중(구산분교장), 구암중, 금남고, 금남중, 김해경원고, 김해대동중, 김해대청고, 김해분성여고, 김해여고, 김해외국어고, 남산중, 남해여중, 남해정보산업고, 남해제일고, 내덕중, 내서중, 단성중(신안분교장), 대곡고, 덕산고, 덕산중, 도산중, 동부중, 동진여중, 동진중, 동해중, 마산가포고, 마산고, 마산공고, 마산서중, 마산여고, 마산여중, 마산용마고, 마산중, 마천중, 명곡여중, 명서중, 명석중, 무안중, 문산중, 물금고, 밀양여고, 반성중, 반송중, 범수중, 봉림중, 부곡중, 사천여중, 사천중, 사파중, 산청고, 산청중, 삼가중, 삼계중, 삼정중, 삼천포공고, 삼천포중앙고, 삼천포중앙여중, 상남중, 상리중, 생림중, 서포중, 석동중, 설천중, 신등중, 신반정보고, 신반중, 신어중, 신원중, 신월중, 신현중, 쌍백중, 안의고, 양덕중, 양산고, 양주중, 연초중, 영산고, 영산중, 영천중(영현분교장), 옥종고, 옥종중, 옥포중, 옥지중, 웅남중, 웅상고, 웅상여중, 웅상중, 원동중, 월산중, 의령고, 의령중(화정분교장), 임호중, 장유고, 지세포중, 지수중, 진교고, 진교중, 진명여중, 진서고, 진양고, 진영여중, 진영제일고, 진주고, 진주기계공고, 진주여고, 진주중앙고, 진해고, 진해여고, 진해여중, 진해용원고, 진해제일고, 차황중, 창녕고, 창녕제일고, 창녕중, 창덕중, 창원남산고, 창원명지여고, 창원신월고, 창원여고, 창원중앙고, 창원중앙여고, 창원토월고, 초계고, 초계중, 초동중, 충무고, 충무여중, 칠원고, 토월중, 통영여고, 팔룡중, 하동고, 하동중앙중, 한얼중, 함안고, 함안중, 함양고, 함양제일고, 함양중, 함천고, 화개중, 회화중
2008	가야중, 가조익천고, 거제공고, 거제옥포고, 거제제일고, 거제제일중, 거제중앙고, 거제중앙중, 거창여고, 거창여중, 거창중, 경남정보고, 경남천광학교, 경남체육고, 계룡중, 고성여중, 고성중(삼산분교장), 고성중앙고, 고현중, 곤양고, 관동중, 광려중, 구남중(구산분교장), 구암중, 금곡중, 금남고, 김해가야고, 김해건설공고, 김해고, 김해대동중, 김해대청고, 김해삼계중, 김해생명과학고, 김해여고, 김해여중, 김해외국어고, 김해중, 남산중, 남해여중, 남해정보산업고, 남해제일고, 내덕중, 내서중, 단성고, 단성중, 도산중, 동진중, 동해중, 마산동중, 마산서중, 마산여중, 마산용마고, 마산중, 명곡여중, 명신고, 무안중, 문산중, 물금고, 반성중, 반송여중, 반송중, 범어중, 범수중, 봉곡중, 봉림중, 부곡중, 사파중, 산청고, 산청중(차황분교장), 삼가고, 삼계중, 삼성중, 삼정중, 삼천포공고, 생림중, 생초고, 서포중, 석동중, 설천중, 성포중, 신반정보고, 신반중, 신원중, 신주중, 신현중, 아림고, 안의고, 양덕중, 양산고, 양주중, 연초중, 영산고, 영산중, 영천중, 옥종고, 옥종중(북천분교장), 옥포중, 옥지중, 웅상고, 웅상여중, 원동중, 위천중, 의령고, 의령중, 장유고, 지수중, 진교고, 진서고, 진양고, 진영고, 진영여중, 진영제일고, 진주기공, 진주남중, 진주봉원중, 진주여고, 진주중, 진주중앙고, 진해고, 진해제일고, 창녕고, 창녕제일고, 창녕중, 창덕중, 창북중, 창원남산고, 창원명곡고, 창원명지여고, 창원봉림고, 창원상남중, 창원용호고, 창원중앙고, 청암중, 초계중, 초동중,

학년도	학교명
2008	충무여중, 충무중, 칠원고, 토월중, 통영고, 통영여고, 통영여중, 팔룡중, 하동고, 하동중앙중, 하일중, 하청중, 함안고, 함안중, 함양제일고, 함양중, 합천고, 합천중(봉산분교장), 합포여중, 합포중
2009	가야중, 가조익천고, 가조중, 거제공고, 거제여고, 거제옥포고, 거제중앙고, 거제중앙중, 거창여고, 거창중, 경남과학고, 경남은광학교, 경남정보고, 경남체고, 계룡중, 고성중, 곤양고, 광려중, 구암중, 금남중, 김해건설공고, 김해대청고, 김해분성고, 김해삼문고, 김해영운고, 김해외고, 남해정보산업고, 능동중, 단성중, 대곡고, 덕산고, 마산내서여고, 마산서중, 물금고, 반림중, 범어중, 봉림중, 부곡중, 분성중, 사파중, 산양중, 삼가고, 삼정중, 삼천포공고, 생초고, 서창고, 성포중, 신반정보고, 신어중, 신현중, 쌍백중, 안의고, 양산중, 영산중, 영운중, 옥종고, 웅상고, 의령고, 진교중, 진영고, 진영여중, 진영제일고, 진영중, 진주기공, 진주여중, 진해제일고, 창녕제일고, 창덕중, 창북중, 창원기공, 창원사파고, 창원상남중, 창원용호고, 창원중앙고, 초계고, 통영고, 통영여중, 하동고, 하청중, 한얼중, 함안고, 함안중, 함양여중, 함양제일고, 합천고 {옥종중(북천분교장), 충무중, 합천중(봉산분교장)-8.31} (3.12-내동중, 산청고, 신반중, 양주중, 영천중, 진양고, 진진중, 팔룡중, 함양고, 화개중) (9.17-개양중, 경남항공고, 경운중, 고성동중, 고성여중, 고성중앙고, 고현중, 관동중, 남산중, 남해중, 대곡중, 덕산중, 도산중, 마리중, 마산중, 마천중, 무안중, 문산중, 밀양중, 법수중, 사천여중, 산청중(차황분교장), 삼가중, 삼천포제일중, 삼천포중앙여중, 상리중, 신원중, 신주중, 악양중, 양덕여중, 양보중, 연초중, 옥포중, 웅남중, 웅상중, 웅양중, 원동중, 장유고, 지세포중, 지수중, 진주중, 창녕중, 창원동중, 창원명곡고, 초계중, 초동중, 충무중, 하일중, 함양중, 합포여중, 활천중)
2010	가조익천고, 거제공고, 거제여고, 거제옥포고, 거제제일고, 거제중앙고, 거창중, 경남과학고, 경남산업고, 경남은혜학교, 경남항공고, 경호고, 계룡중, 고성동중, 고성여중, 고성중앙고, 곤양고, 곤양중, 광려중, 구남중(구산분교장), 구암여중, 금남중, 김해고, 김해대청고, 김해분성고, 김해삼문고, 김해여고, 김해영운고, 김해외고, 남해제일고, 남해중, 능동중, 단성중, 대곡고, 도계중, 동진중, 마산여고, 마산용마고, 명신고, 물금고, 밀양중, 범어중, 봉림중, 부곡중, 사천여중, 사천중, 산청고, 산청중(차황분교장), 삼가고, 삼천포공고, 삼천포제일중, 삼천포중앙여중, 서창고, 서창중, 성포중, 신반정보고, 신어중, 신현중, 안골포중, 안남중, 옥포성지중, 웅상고, 웅상여중, 장유고, 지세포중, 진교중, 진영여중, 진주고, 진주기공, 진주여고, 진해고, 진해용원고, 창녕제일고, 창덕중, 창원기공, 창원명지여고, 창원사파고, 창원여고, 창원용호고, 창원중앙고, 창원토월고, 초계고, 초동중, 충무중, 태봉고, 통영고, 통영여고, 통영여중, 함양고, 함양제일고, 합천고, 합포고, 호계중, 활천중 (9.1-거창여고, 고성중, 김해여중, 동진여중, 반림중, 사천고, 삼성중, 쌍백중, 진명여중, 하동고, 화개중)
2011	거제공고, 거제여고, 거제중앙중, 거창여중, 거창중, 경남과학고, 경남정보고, 경남체고, 경남항공고, 경상사대부설고, 경상사대부설중, 경운중, 계룡중, 곤양중, 광려중, 금곡중, 김해가야고, 김해건설공고, 김해고, 김해분성고, 김해분성여고, 김해삼문고, 김해영운고, 김해외고, 남해정보산업고, 남해제일고, 남해중, 내서중, 단성고, 덕산고, 도계중, 마리중, 마산내서여고, 마산동중, 마산여고, 마산용마고, 명신고, 반송여중, 분성중, 사천여중, 사천중, 사파중, 삼천포고, 삼천포공고, 삼천포중앙여중, 상리중, 서창고, 수월중, 신월중, 아림고, 안골포중, 안민중, 양덕중, 양보중, 영산고, 영산중, 옥포성지중, 옥포중, 용원중, 웅상여중, 위천중, 의령고, 장유고, 지세포중, 진교고, 진교중, 진영중, 진주고, 진주기공, 진주여고, 진해여고, 진해여중, 진해용원고, 진해제일고, 진해중, 창녕제일고, 창원기공, 창원남산고, 창원동중, 창원명곡고, 창원명지여고, 창원신월고, 창원여고, 창원중앙고, 창원토월고, 청암중, 초계고, 초동중, 충무여중, 충무중, 태봉고, 토월중, 통영고, 통영여고, 통영중, 하동중앙중,

학년도	학교명
2011	함안중, 함양고, 함양제일고, 함천고, 함포고, 호계중 (거창여고, 고성중, 김해여중, 동진여중, 반림중, 사천고, 삼성중, 쌍백중, 진명여중, 하동고, 화개중-8.31) (4.1-상동중), (9.1-경남해양과학고, 금남고)
2012	거제고현중, 거제공업고, 거제여고, 거제옥포고, 거제제일고, 거제제일중, 거제중앙고, 거창여중, 거창중, 경남과학고, 경남산업고, 경남정보고, 경남해양과학고, 경상사대부설고, 경상사대부설중, 계룡중, 고성동중, 고성여중, 고성중앙고, 구암여중, 금곡중, 금남고, 김해건설공업고, 김해경원고, 김해고, 김해대청고, 김해분성고, 김해삼문고, 김해서중, 김해여중, 김해외국어고, 김해울하중, 김해제일고, 남해중, 내동중, 대곡고, 대아고, 도계중, 마산고, 마산동중, 마산여고, 마산용마고, 명곡여중, 명신고, 문산중, 물금고, 밀양전자고, 반송여중, 범어고, 봉곡중, 봉명중, 사천여중, 산청중, 삼가고, 삼성중, 삼천포고, 삼천포공업고, 삼천포중앙고, 삼천포중앙여중, 석동중, 신등중, 신반정보고, 신반중, 신어중, 신월중, 신현중, 아림고, 안골포중, 안민중, 양덕중, 양산고, 연초고, 영산고, 영산중, 옥포중, 옥지중, 용원중, 웅천고, 율하중, 의령고, 의령중, 장유고, 진교고, 진양고, 진영고, 진영중, 진주고, 진주기계공업고, 진주여고, 진주중, 진주해광학교, 진해여고, 진해여중, 진해용원고, 진해중, 창덕중, 창원과학고, 창원기계공업고, 창원남산고, 창원명지여고, 창원사파고, 창원신월고, 창원여고, 창원중앙고, 창원토월고, 초계고, 토월중, 하동고, 한얼중, 함안고, 함안중, 함양제일고, 함양중, 함천고, 함포고, 함포중
2013	거제고현중, 거제공고, 거제제일고, 거제제일중, 거제중앙고, 거제중앙중, 거창여고, 거창여중, 거창중, 경남과학고, 경남산업고, 경남자영고, 경남정보고, 경남해양과학고, 계룡중, 고성동중, 고성중, 고성중앙고, 금남중, 김해건설공고, 김해경원고, 김해고, 김해대청고, 김해분성고, 김해삼문고, 김해삼방고, 김해생명과학고, 김해서중, 김해영운고, 김해외고, 김해울하중, 김해제일고, 내덕중, 내서중, 대곡중, 마산고, 마산동중, 마산여고, 마산용마고, 명곡여, 명신고, 문산중, 물금고, 밀양여중, 반성중, 반송여중, 범어중, 삼천포고, 삼천포공고, 삼천포중앙고, 서상중, 수월중, 신등중, 신반중, 신어중, 신현중, 안골포중, 안남중, 안의고, 양덕중, 양산고, 양산중앙중, 양주중, 연초고, 영산고, 옥포중, 옥지중, 용원중, 웅남중, 웅천고, 월산중, 율하중, 의령중, 진양고, 진영고, 대곡고, 진영여중, 진영제일고, 진영중, 호암중, 진전중, 진주고, 진주기계공고, 진주여고, 진주제일중, 진주중앙고, 진해여중, 창덕중, 창북중, 창원과학고, 창원기계공고, 창원남산고, 창원동중, 창원명지여고, 창원사파고, 창원신월고, 창원여고, 창원중앙고, 창원중앙여고, 초계고, 충무고, 하동고, 한산중, 함안고, 함안중, 함양제일고, 함양중, 함포여중, 함포중, 화개중, 회화중
2014	가조익천고, 거제공업고, 거제제일고, 거제중앙중, 거창여고, 거창여중, 거창중, 경남과학고, 경남정보고, 경원중, 경호고, 관동중, 구남중, 김해경원고, 김해고, 김해대동중, 김해대청고, 김해분성여고, 김해삼계중, 김해삼문고, 김해삼방고, 김해생명과학고, 김해여고, 김해여중, 김해울하중, 김해제일고, 남해여중, 단성중, 대곡중, 대청중, 동해중, 마산고, 명곡여중, 무안중, 밀양여중, 밀양중, 반성중, 범어중, 봉곡중, 사천중, 삼천포공고, 삼천포중앙고, 생림중, 서상중, 서창중, 신등중, 신반중, 신주중, 신현중, 야로고, 양보중, 양산고, 연초고, 영천중, 옥포성지중, 용원중, 웅상고, 웅상중, 웅천고, 임호중, 진양고, 진영고, 진영여중, 진영제일고, 진영중, 진주고, 진주기계공고, 진주봉원중, 진주제일중, 진주중, 진주중앙고, 창녕중, 창덕중, 창북중, 창원과학고, 창원동중, 창원신월고, 창원여고, 창원중앙고, 창원중앙여고, 초계중, 통영여중, 통영잠포학교, 통영중, 하동중앙중, 함안중, 함양여중, 함양제일고, 함천중, 함포여중, 함포중, 화개중, 활천중, (경남해양과학고-8.31)

학년도	학교명
2015	거제공업고, 거제제일고, 거제중앙중, 거창여고, 거창여중, 경남과학고, 경남꿈키움, 경남체육고, 경남항공고, 경남해림학교, 경원중, 고성중앙고, 공군항공과학고, 김해경원고, 김해고, 김해대동중, 김해분성고, 김해삼계중, 김해삼문고, 김해생명과학고, 김해올하고, 김해제일고, 남해여자중, 남해제일고, 내덕중, 마산고, 마산여자고, 마천중, 명곡여중, 물금고, 미조중, 반림중, 범어중, 봉곡중, 부곡중, 사천중, 산청고, 삼천포고, 삼천포공업고, 서창중, 신월중, 야로중, 양산고, 연초고, 영운중, 용원중, 웅상고, 웅상여자중, 웅천고, 진양고, 진영고, 진영여자중, 진영중, 진주고, 진주봉원중, 진주중, 진해여자고, 진해여자중, 창덕중, 창원과학고, 창원기계공고, 창원동중, 창원신월고, 창원중앙고, 초계중, 통영잠포학교, 통영중, 하동중앙중, 한얼중, 함양제일고, 함양중, 합천중, 화개중, 활천중
2016	경남과학고, 창원과학고, 창원기계공고, 경남항공고, 경남해림, 물금고, 웅상고, 창원신월고, 하동고, 김해영운고, 범어고, 합천고, 안의고, 김해분성고, 창원여고, 진주기계공고, 거제여상, 김해생명과학고, 경남체육고, 마산여고, 김해올하고, 창원사파고, 삼현여고, 진주고, 김해제일고, 창원중앙고, 거제제일고, 김해경원고, 김해고, 양산고, 진양고, 마산고, 웅천고, 삼천포공고, 거제공고, 범어중, 영운중, 함양중, 진영중, 신월중, 내덕중, 미조중, 창원동중, 용원중, 양산희망학교, 진주해광, 소가야중, 한다사중, 함안중, 함양여중, 대곡중, 거제제일중, 거창중, 거제장평중, 진주중, 창덕중, 경남꿈키움중, 남산중, 연초중, 생림중, 충무중, 진명여중, 서창중, 호암중, 계룡중, 한얼중, 남해여중, 금남중, 진영여중, 마천중
2017	창원중앙고, 창원여고, 창원명지여고, 창원기계공고, 창원신월고, 창원사파고, 마산고, 웅천고, 진주고, 진주기계공고, 진양고, 김해고, 김해분성고, 김해생명과학고, 김해제일고, 웅상고, 양산고, 거제상문고, 연초고, 거제여상고, 경남산업고, 거제제일고, 거제공고, 삼천포공고, 하동고, 합천고, 안의고, 양산희망학교, 진주해광학교, 창원천광학교, 남산중, 창덕중, 진주중, 진명여중, 경남꿈키움중, 대곡중, 진영여중, 능동중, 수남중, 월산중, 한얼중, 생림중, 금남중, 밀양여중, 거창여중, 거창중, 거제장평중, 거제제일중, 계룡중, 연초중, 충무중, 함안중, 호암중, 함양여중, 서창중, 남해여중, 김해경원고(중도포기 6.7.), 대청중(중도포기 6.7.)
2018	삼계중, 능동중, 옥포성지중, 수남중, 회화중, 밀양여중, 미리벌중, 사랑중, 동부중, 지세포중, 함성중, 율하중, 마산여고, 용원중, 창원사파고, 창덕중, 경남자동차고, 안골포중, 내동중, 거창여중, 월산중, 남해정보산업고, 거제상문고, 김해은혜학교, 창원천광학교, 김해영운고, 연초고, 김해수남고, 김해임호고, 함안고, 거제여상고, 경남자영고, 창원토월고, 창원기계공업고, 진주기계공업고, 창원명지여고, 창원중앙고, 마산고, 김해제일고, 웅천고, 김해경원고, 진양고, 진주고, 김해고, 거제제일고, 양산고, 삼천포공업고, 거제공업고
2019	삼계중, 옥포성지중, 회화중, 율하중, 창덕중, 안골포중, 내동중, 남해정보산업고, 김해영운고, 김해수남고, 김해임호고, 함안고, 거제여상고, 경남자영고, 창원토월고, 창원기계공업고, 진주기계공업고, 김해은혜학교, 창원중앙고, 김해제일고, 김해경원고, 마산고, 웅천고, 진양고, 진주고, 김해고, 거제제일고, 양산고, 삼천포공업고, 거제공업고, 영산중, 서창중, 거제중앙중, 고성여중, 진영중, 김해대동중, 설천중, 김해여고, 마산구암고, 김해건설공업고, 통영잠포학교, 경남꿈키움중, 범어고, 한국나노마이스터고
2020	영산중, 서창중, 거제중앙중, 진영중, 김해대동중, 설천중, 경남꿈키움중, 연초고, 마산여고, 김해임호고, 함안고, 거제여상고, 경남자영고, 김해여고, 마산구암고, 김해건설공고, 진양고, 양산고, 마산고, 김해고, 거제제일고, 진주고, 웅천고, 삼천포공고, 거제공고, 창원중앙고, 김해제일고, 김해경원고, 한국나노마이스터고, 범어고, 통영잠포학교

학년도	학교명
2021	양주중,진영중,창원용호고,김해대청고,김해여고,마산구암고,김해건설공고,연초고,마산여고,김해경원고,김해고,김해제일고,양산고,진주고,진양고,마산고,웅천고,창원중앙고,거제제일고,삼천포공업고,거제공업고,한국나노마이스터고
2022	양주중, 연초고, 마산여고, 창원용호고, 김해대청고, 고성중앙고, 김해여고, 진주고, 창원대암고, 창원중앙고, 김해경원고, 삼천포공업고, 거제공업고, 한국나노마이스터고
2023	서창중, 진주제일중, 양주중, 창원용호고, 김해대청고, 고성중앙고, 김해여고, 진주고, 창원대암고, 마산내서여고, 연초고, 진양고, 진영고, 삼천포공업고, 거제공업고, 한국나노마이스터고, 경남혜림학교, 창원천광학교
2024	관동중, 서창중, 신어중, 진주제일중, 거제공업고, 고성중앙고, 김해여고, 마산내서여고, 삼천포공업고, 연초고, 진양고, 진영고, 진주고, 창원대암고, 한국나노마이스터고, 경남혜림학교, 김해은혜학교, 밀양아리솔학교

[자료 6.3]

교육실습 대용학교 · 협력학교 일람표

학년도	학교명
2000	마산여고, 진주고, 진주여중, 창원중앙고, 합포중
2001	마산여고, 진주고, 진주여중, 창원중앙고, 합포중
2002	마산고, 양덕중, 진주남중, 진주여고, 창원여고, 창원중앙중
2003	경남혜림학교, 마산고, 양덕중, 진주남중, 진주여고, 창원여고, 창원중앙중
2004	경남혜림학교
2004	경남정보고, 마산가포고, 마산서중, 봉곡중, 안남중, 양덕여중, 진주기계공고, 진주봉원중, 진주중앙고, 창원봉림고, 창원상남중, 합포여중
2005	경남은혜학교, 경남정보고, 경남천광학교, 경남혜림학교, 김해여고, 김해여중, 마산가포고, 마산서중, 봉곡중, 안남중, 양덕여중, 진영여중, 진주기계공고, 진주봉원중, 진주중앙고, 창원봉림고, 창원상남중, 합포여중
2006	경남은광학교, 경남은혜학교, 경남천광학교, 경남혜림학교, 구암여중, 김해여중, 마산구암고, 명신고, 반림중, 반송여중, 진주남중, 진주제일중, 진주중, 진주중앙중, 진주혜광학교, 진해중, 창원용호고, 창원중앙중, 합포중, 해운중
2007	경남은광학교, 경남은혜학교, 경남천광학교, 경남혜림학교, 구암여중, 김해대곡중, 마산구암고, 명신고, 반림중, 반송여중, 진주남중, 진주제일중, 진주중, 진주중앙중, 진주혜광학교, 진해중, 창원용호고, 창원중앙중, 합포중, 해운중
2008	경남은광학교, 경남은혜학교, 경남천광학교, 경남혜림학교, 구산중, 마산가포고, 마산고, 명서중, 신월중, 양덕여중, 웅남중, 진명여중, 진주고, 진주남중, 진주제일중, 진주중앙중, 진주혜광학교, 진해여중, 창원신월고, 해운중
2009	경남은광학교, 경남은혜학교, 경남혜림학교, 김해중, 대방중, 마산고, 마산구암고, 마산동중, 명서중, 신월중, 양덕중, 진명여중, 진주고, 진주봉원중, 진주제일중, 진주중앙중, 진주혜광학교, 진해여중, 창원신월고, 창원천광학교
2010	개양중, 경남은광학교, 경남은혜학교, 경남혜림학교, 김해대곡중, 김해분성여고, 김해서중, 대방중, 마산가포고, 마산구암고, 마산중, 삼계중, 삼정자중, 석동중, 양덕여중, 진주남중, 진주봉원중, 진주중앙고, 진주중, 진주혜광학교, 창원남산고, 창원대암고, 창원중앙중, 창원천광학교, 통영잠포학교
2011	개양중, 경남은광학교, 경남은혜학교, 경남혜림학교, 경원중, 김해삼방고, 김해서중, 동진중, 마산가포고, 마산구암고, 마산여중, 삼계중, 석동중, 안남중, 진양고, 진주남중, 진주여중, 진주제일중, 진주중, 진주중앙고, 진주혜광학교, 창원대암고, 창원상남중, 창원천광학교, 통영잠포학교, 팔룡중

학년도	학교명
2012	개양중, 경남은광학교, 경남은혜학교, 경남혜림학교, 광려중, 김해가야고, 남산중, 대방중, 동진여중, 마산가포고, 마산중, 반송중, 양덕여중, 임호중, 진명여중, 진주봉원중, 진주여중, 진주중앙고, 진주중앙중, 진주혜광학교, 진해고, 창원대암고, 창원중앙여고, 창원천광학교, 통영잠포학교, 팔룡중
2013	가야중, 남산중, 마산가포고, 마산내서여고, 마산중, 명서중, 반송중, 봉림중, 삼정자중, 양덕여중, 진명여중, 진주남중, 진주봉원중, 진주여중, 진주중, 진주중앙중, 진해고, 창원용호고, 합포고, 호계중, 창원천광학교, 경남혜림학교, 진주혜광학교, 김해은혜학교, 경남은광학교, 통영잠포학교
2014	개양중, 광려중, 남산중, 도계중, 동진중, 마산가포고, 마산구암고, 마산동중, 마산서중, 마산여중, 삼계중, 삼정자중, 영운중, 웅남중, 진명여중, 진주남중, 진주여중, 진주중앙중, 창원대암고, 합포고, 경남혜림학교, 진주혜광학교, 양산희망학교, 김해은혜학교, 경남은광학교
2015	개양중, 관동중, 김해여자고, 마산가포고, 마산구암고, 마산동중, 마산용마고, 마산중, 반송여중, 반송중, 봉림중, 삼계중, 삼정자중, 삼정중, 석동중, 웅남중, 진명여중, 진주남중, 진주여중, 진주제일중, 진주중앙중, 창원대암고, 창원명지여자고, 창원중앙여자고, 호계중, 창원천광학교, 경남혜림학교, 진주혜광학교, 김해은혜학교, 경남은광학교
2016	가야중, 개양중, 경원중, 김해삼방고, 도계중, 마산가포고, 마산구암고, 마산중, 반송여중, 반송중, 석동중, 안남중, 율하중, 진주남중, 진주여중, 진주제일중, 진주중앙중, 창원대암고, 창원명지여고, 창원상남중, 팔룡중, 호계중, 창원천광학교, 경남혜림학교, 진주혜광학교, 김해은혜학교, 경남은광학교
2017	창원상남중, 반송여중, 대방중, 도계중, 안남중, 팔룡중, 마산서중, 마산중, 호계중, 마산동중, 석동중, 창원대암고, 마산구암고, 마산가포고, 마산여고, 진주남중, 진주제일중, 진주중앙중, 개양중, 진주여중, 율하중, 김해삼방고, 창원천광학교, 경남혜림학교, 진주혜광학교, 김해은혜학교, 경남은광학교
2018	창원상남중, 반송중, 반송여중, 대방중, 경원중, 팔룡중, 마산서중, 구암중, 호계중, 해운중, 진해중, 진주제일중, 진주중앙중, 진주여중, 개양중, 가야중, 대청중, 창원대암고, 마산내서여고, 마산구암고, 명신고, 경남자영고, 창원천광학교, 경남혜림학교, 진주혜광학교, 김해은혜학교, 경남은광학교
2019	창원상남중, 반송중, 반송여중, 경원중, 안남중, 팔룡중, 양덕중, 양덕여중, 구암중, 광려중, 해운중, 진해여중, 진주남중, 진주중앙중, 진주여중, 개양중, 문산중, 봉원중, 가야중, 관동중, 창원대암고, 마산여고, 합포고, 마산내서여고, 진주여고, 경남자영고, 김해율하중, 창원천광학교, 경남혜림학교, 진주혜광학교, 김해은혜학교, 경남은광학교
2020	도계중, 안남중, 창원상남중, 토월중, 팔룡중, 광려중, 삼계중, 양덕여중, 해운중, 진해냉천중, 진주남중, 진주중앙중, 진주여중, 개양중, 문산중, 진주중, 삼천포중앙여중, 구산중, 월산중, 창원대암고, 마산가포고, 명신고, 진주중앙고, 김해삼방고, 창원천광학교, 경남혜림학교, 진주혜광학교, 김해은혜학교, 경남은광학교

학년도	학교명
2021	구산중, 마산제일여중, 삼계중, 양덕여중, 해운중, 호계중, 도계중, 안남중, 창원상남중, 진해중, 개양중, 대곡중, 문산중, 진명여중, 진주남중, 진주여중, 진주중앙중, 삼천포중앙여중, 신어중, 활천중, 마산가포고, 마산내서여고, 창원대암고, 진주여고, 경남자영고, 창원천광학교, 경남해림학교, 진주해광학교, 김해은혜학교, 의령은광학교
2022	마산동중, 삼계중, 양덕여중, 해운중, 호계중, 마산가포고, 마산내서여고, 남산중, 대방중, 명서중, 삼정자중, 성지여중, 안남중, 창원신월고, 동진여중, 개양중, 대곡중, 문산중, 진명여중, 진주남중, 진주여중, 진주제일중, 진주중앙중, 진주기계공고, 진주여고, 삼천포중앙여중, 경남자영고, 김해구산중, 김해경운중, 김해모산중, 진영중, 활천중, 김해구산고, 서창중, 양산중, 양산고, 계룡중, 상포중, 거제옥포고, 거창중, 거창연극고, 창원천광학교, 경남해림학교, 진주해광학교, 김해은혜학교, 의령은광학교
2023	성지여중, 광려중, 삼계중, 호계중, 남산중, 반송여중, 봉곡중, 안남중, 동진여중, 용원중, 안골포중, 개양중, 대곡중, 문산중, 진명중, 진주남중, 진주여중, 진주중앙중, 경운중, 김해모산중, 능동중, 신어중, 영운중, 진영중, 고현중, 계룡중, 성포중, 수월중, 거창중, 단성중, 청암중, 함안중, 마산가포고, 마산여고, 창원신월고, 창원기계공고, 진해여고, 경남자영고, 물금고, 양산고, 거제중앙고, 창원천광학교, 진주해광학교, 김해은혜학교, 의령은광학교 ※ 교육실습생 미배정 학교: 삼천포중앙여중, 양산중, 영천중
2024	광려중, 구산중, 남산중, 마산중앙중, 반송여중, 봉곡중, 삼계중, 성지여중, 안골포중, 안남중, 용원중, 호계중, 마산가포고, 마산구암고, 마산여고, 진해여고, 창원기계공업고, 창원봉림고, 창원북면고, 합포고, 개양중, 대곡중, 문산중, 진명여중, 진주남중, 진주여중, 진주중앙중, 경남정보고, 삼천포중앙여중, 경남자영고, 가야중, 경운중, 김해모산중, 김해삼계중, 김해여중, 능동중, 신어중, 영운중, 월산중, 진영중, 김해삼문고, 김해임호고, 김해제일고, 진영제일고, 거제고현중, 거제장평중, 계룡중학교, 성포중학교, 수월중학교, 옥포성지중, 거제상문고, 거제옥포고, 거제중앙고, 물금고, 양산고, 양산남부고, 호암중, 영천중, 청암중, 거창중, 창원천광학교, 김해은혜학교, 경남해림학교, 의령은광학교

※ 경상국립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고등학교 포함

[자료 6.4]

도서·벽지·준벽지 교육기관 일람표

지역	기관명	지정일 급지	변경일 급지	해제일
통영	욕지중(도서)	1967.4.1. 나	1986.1.1. 다	
	사랑중(도서)	1967.4.1. 다		
	한산중(도서)	1967.4.1. 라	1986.1.1. 다	
거제	지세포중(준)	2014.1.1.		
함양	마천중	1968.5.1. 라	1970.1.1. 해제 1986.1.1. 다 2001.1.1. 라	
	함양중휴천분교장	1982.3.1. 라		1999.2.28. 폐교
	덕유학생교육원	1994.9.22. 라	2001.1.1. 다	
산청	산청야영수련원	1996.1.9. 다	2001.1.1. 라	
거창	신원중	1986.1.1. 라		2001.1.1. 해제
	거창중신원분교장(준)	2014.1.1.		2020.2.29. 폐교
	거창덕유중(준)	2021.3.1.		
합천	덕곡중	1972.3.1. 라		2008.2.29. 폐교
	합천중봉산분교장	1986.1.1. 라		2001.1.1. 해제
	합천종합야영수련원	1994.9.22. 라		2001.4.1. 민간이양
	합천장전학생야영수련원	2001.1.1. 라		
	야로중(준)	2014.1.1.		
	야로고(준)	2014.1.1.		
양산	원동중이천분교장	1967.4.1. 다	1986.1.1. 나 1989.9.1. 다	1999.2.28. 폐교
	원동중(준)	2014.1.1.		
하동	청암중	1989.9.1. 라		2010.3.1. 해제
	화개중(준)	2014.1.1.		
남해	물건중	1973.3.1. 라		1989.9.1. 해제
	학생교육원 남해분원	2001.1.1. 라		
	미조중(준)	2014.1.1.		
창녕	창녕학생야영수련원	2001.1.1. 라		
의령	경남학생교육원	2001.1.1. 라		
의창	덕문중(도서)	1967.4.1. 라		1989.1.1. 부산편입
	덕문고(도서)			
밀양	미리벌중(준)	2016.1.1		

* 종전(1967.4.1.~1985.12.31.) 갑지 중 문교부장관 지정 도서·벽지는 가지역으로, 갑지 중 나머지는 나지역으로, 을지는 다지역으로, 병지는 라지역으로 변경됨(1986.4.26. 부칙 제4조)

* 2014.1.1. 준벽지 지정(7개교), 2016.1.1. 준벽지 지정(1개교)

* 2021.3.1. 준벽지 지정(1개교)

[자료 6.5]

농어촌학교 등 일람표

지역	1995.3.1. 시작	2009.1.1. (내)지역 신설	2014.1.1. (타)지역 신설	2016.1.1.(라)지역 신설
거제	95.3.1. 거제여고, 거제제일고, 거제제일중, 경남산업고, 동부중, 성포중, 연초중, 하청중 95.3.1. 지세포중. 13.12.31 99.3.1. 거제고현중, 신현중, 거제공고, 거제중앙중, 거제중앙고 02.1.1. 옥포중 05.3.1. 계룡중 06.3.1. 거제옥포고 07.3.1. 옥포성지중	09.1.1. 거제고현중, 거제공고, 거제중앙고, 거제중앙중, 계룡중, 신현중, 옥포성지중, 옥포중(나) 10.3.1. 수월중(나) 11.3.1. 연초고(가) 13.3.1. 거제장평중, 거제상문고(나)	(가)동부중 (나)거제여상, 거제옥포고, 거제제일고, 거제제일중, 경남산업고, 성포중, 연초고, 연초중, 하청중 (타)거제고현중, 거제공고, 거제상문고, 거제장평중, 거제중앙고, 거제중앙중, 계룡중, 수월중, 신현중, 옥포성지중, 옥포중	
김해	95.3.1. 김해대동중, 생림중 96.11.4. 진영제일고 99.3.1. 진영고, 진영여중, 한얼중 01.3.1. 월산중, 장유고 02.9.1. 경남은혜학교 03.3.1. 능동중, 대청고 04.3.1. 김해삼문고, 관동중 06.3.1. 김해외국어고, 내덕중 07.3.1. 진영중	09.1.1. 경남은혜학교, 관동중, 김해대청고, 김해삼문고, 김해외국어고, 내덕중, 능동중, 월산중, 장유고(나) 10.3.1. 율하중(나) 11.3.1. 대청중, 율하고(나)	(나)김해대동중, 생림중 (타)경남은혜학교, 관동중, 김해대청고, 김해삼문고, 김해외고, 김해율하중, 내덕중, 능동중, 대청중, 월산중, 율하중, 장유고, 진영고, 진영여중, 진영제일고, 진영중, 한얼중	16.3.1. 수남중, 김해수남고(다) 17.3.1. 나머지(라) 장유지역 20.3.1. (해제) 20.3.1. 김해금곡고(금곡무지개고)(나) 21.3.1. 진영장동중(다)
마산	95.3.1. 구남중(구산분교장), 진전중 95.3.1. 진전중여향분교장. 99.8.31 99.3.1. 내서중 01.3.1. 삼계중 03.3.1. 호계중 04.3.1. 마산내서여고 07.3.1. 광려중	09.1.1. 광려중, 내서중, 마산내서여고, 삼계중, 호계중(나) 10.3.1. 태봉고(가)	(나)구남중(구산분교장), 진전중, 태봉고 (타)광려중, 내서중, 마산내서여고, 삼계중, 호계중	19.3.1. 구산중(해제) 19.3.1. 구산중구남분교장(나) 23.3.1. 경남온라인학교(다)
밀양	95.3.1. 무안중, 밀양공고, 상남중, 상동중, 청도중, 초동중		(나)무안중, 한국나노마이스터고, 상남중, 상동중, 초동중, 마티벌중(2015.3.1.-2015.12.31.)	17.3.1. 밀양영화고(나) 22.3.1. 밀양아리솔학교(나) (라)나머지
사천	95.3.1. 경남자영고, 곤양고, 곤양중, 서포중 99.3.1. 사천중 04.3.1. 사천여중		(나)곤양고, 곤양중, 서포중 (타)경남자영고, 사천여중, 사천중	(라)나머지
양산	95.3.1. 양주중 95.3.1. 원동중. 13.12.31 99.3.1. 웅상고, 웅상중 03.3.1. 웅상여중 06.3.1. 물금고, 서창중, 신주중 07.3.1. 범어중, 08.3.1. 서창고	09.1.1. 서창고, 서창중, 웅상고, 웅상여중, 웅상중(나) 11.3.1. 범어고, 양산희망학교(가)	(나)양주중, 서창고, 서창중 (타)물금고, 범어고, 범어중, 신주중, 웅상고, 웅상여중, 웅상중	23.3.1. 증산고(다) 23.3.1. 사송중(다) (라)나머지
진주	95.3.1. 금곡중, 대곡고, 대곡중, 명석중, 반성중, 지수중, 진서고, 진서중 96.11.4. 경남과학교, 경남체육고 99.3.1. 문산중, 진양고, 진주혜광학교		(나)경남과학교, 경남꿈키움중, 경남체육고, 금곡중, 대곡고, 대곡중, 반성중, 지수중, 진서고, 진서중 (타)명석중, 문산중, 진양고, 진주혜광학교	문산중, 진양고 17.3.1. (해제) 대곡중 20.3.1. (해제)
진해	02.1.1. 진해제일고 03.3.1. 안골포중 06.3.1. 진해용원고	09.1.1. 안골포중, 진해용원고, 진해제일고(나) 09.3.1. 용원중(나)	(타)안골포중, 용원중, 용원고, 진해용원고	19.3.1. 진해신항중(다) 21.3.1. 용원중(다)
창원	95.3.1. 창북중, 99.3.1. 창덕중	09.3.1. 창원동중(가)	(타)창덕중, 창북중, 창원동중	16.3.1. 감계중(다) 23.3.1. 창원북면고(다)
통영	95.3.1. 도산중 99.3.1. 산양중 08.3.1. 통영잠포학교		(나)통영잠포학교 (타)도산중, 산양중	(라)나머지

지역	1995.3.1. 시 작	2009.1.1. (내)지역 신설	2014.1.1. (대)지역 신설	2016.1.1.(라)지역 신설
거창	95.3.1.가북중,가조약천고,가조중,고재중, 마리중,웅양중,위천중 95.3.1.복상중.01.2.28 96.11.4.아림고 99.3.1.거창여고,거창여중,거창중 01.1.1.신원중.13.12.31		(개)고제분교장,웅양중,위천중 (내)나머지	19.3.1.거창내대학교(나) 20.3.1.거창연극고(가)
고성	95.3.1.고성동중,구만중,동해중,삼산중, 상리중,영천중,영현중,하일중,회화중 96.11.4.경남항공고 99.3.1.고성여고(고성중앙고),고성여 중,고성중		(내)모두	17.3.1.경남고성 음악고(나)
남해	95.3.1.남수중,남해고현중,남해수고 (경남해양과학고),남해정보고,물건중,설천중 95.3.1.미조중.13.12.31 95.3.1.서면중.99.8.31 96.11.4.남해제일고(남해종합고) 99.3.1.남해여중,남해제일고,남해중		(개)물건중 (내)나머지	19.3.1.꽃내중(나)
산청	95.3.1.경호고,경호중,단성고,단성중(신안 분교장),덕산고,덕산중,생초고,생초중,신등고, 신등중,차황중 99.3.1.산청고,산청중		(개)경 호고,경 호중,차황 분교장 (내)나머지	
의령	95.3.1.신반정보고,신반중,의동중,화정중 96.11.4.경남은광학교,의령고 99.3.1.의령중		(개)신반정보고,신반중 (내)의령은광학교(경남 은광학교),의령고,의령중	
창녕	95.3.1.계성중,등대중,부곡중,영산고,영산중 96.11.4.창녕제일고 99.3.1.창녕중		(내)모두	
하동	95.3.1.금남고,금남중,북천중,악양중,양 보중,옥종고,옥종중,진교고,진교중,횡천중 95.3.1.화개중.13.12.31 99.3.1.하동고,하동중앙중	10.3.1.청암중(개)	(개)악양중 (내)나머지	
함안	95.3.1.법수중 96.11.4.함안고 99.3.1.함안중	10.3.1.호암중(개)	(내)모두	
함양	95.3.1.백전중.99.2.28 95.3.1.서상고,서상중,수동중,안의고 96.11.4.함양제일고 99.3.1.함양고,함양여중,함양중		(개)서상고,서상중 (내)나머지	
합천	95.3.1.삼가고,삼가중,쌍백중,쌍책중, 용주중,초계중고,초계중 95.3.1.야로고,야로중.13.12.31 95.3.1.청덕중.01.2.28 96.11.4.합천고 99.3.1.합천중 01.1.1.합천중봉산분교장		(개)초계고,초계중 (내)나머지	
울산	1995.3.1.강동중,남창고,남창중,두광중,범서중,서생중,언양여상,언양여중,울산서여상,웅촌중,청량중 1996.11.4.언양농고 ※ 울산은 1997.7.15. 이전 근무자			

- ※ 2015.3.1. 초동중 상남중은 미리벌중으로 통폐합, 2018.3.1. 상동중은 미리벌중으로 통폐합
 ※ 2016.1.1.부터 라지역 신설 : 사천, 통영, 밀양, 양산(장유를 제외한 김해지역은 2017.3.1.부터 적용)
 ※ 2017.3.1.부터 농어촌 급지 해제 : 문산중, 진양고
 ※ 2020.3.1.부터 농어촌 급지 해제 : 장유지역
 ※ 학교이력 읽기 : 접두 연월은 '지정일'로, 접미 연월은 '해제일'로 읽음

[자료 6.6]

특수교육 일람표

지역	1980s	1990s	2000s	2010s
거제	85.거제고현중 86.거제제일중	91.옥포중	04.거제중앙중 06.거제중앙고 08.거제옥포고 09.성포중	11.지세포중 12.경남산업고, 옥포성지중 13.거제상문고, 거제장평중, 수월중, 연초중
김해	85.김해중.87 86.김해서중 88.김해여중		02.경남은혜학교 04.김해중 05.김해농고(김해생명과학고), 영운중 06.능동중, 진영제일고 07.경운중, 김해경원고, 김해여고 08.임호중, 진영중 09.김해삼계중, 내동중, 삼정중, 장유고	10.관동중, 월산중, 신어중, 활천중 11.김해가야고, 김해대동중, 김해대청고, 김해영운고, 분성중, 율하중, 진영고 12.구산중 16.대청중
마산	80.경남혜림학교 85.마산중 86.양덕여중		05.마산용마고 06.구암여중, 07.광려중 08.마산내서여고, 마산동중, 합포중 09.마산서중	10.구암고, 구암중, 내서중, 마산고 11.마산여중, 양덕중, 합포고 16.마산여고
밀양	85.밀양중.98 86.밀양여중.92		04.밀양중, 05.밀양여중 06.밀양고, 밀양여고	11.무안중
사천	85.삼천포제일중.98 88.사천중.98	90.곤양중.96 91.삼천포중앙여중 98.경남자영고	06.사천여중, 삼천포제일중 07.사천중, 08.곤양중 09.곤양고	10.삼천포중앙고 13.서포중
진주	85.진주남중 86.진주여중 87.진주해광학교	96.반성중	02.명석중 07.대곡중, 사대부설중 08.문산중, 진명여중 09.사대부설고, 진주중앙중	11.대곡고, 진주고 12.개양중, 진주여고 13.진주중앙고
진해	85.진해중 86.진해여중.03		05.진해여중, 진해제일고 07.석동중, 09.진해고	11.안골포중 12.진해여고
창원	85.경원중 86.창원천광학교 87.창북중 88.양곡중	92.창원중앙중 97.봉곡중	02.창원사파고 04.창원명곡고 05.토월중, 창원남산고 06.사파중, 창원토월고 07.남산중, 신월중, 창원대암고 08.창덕중, 창원명지여고, 창원봉림고, 창원신월고 09.명서중	10.반림중 11.대방중, 봉림중, 안남중, 창원동중 12.삼정자중, 용호고, 팔룡중 13.도계중
통영	85.통영여중.96 86.통영중.96		02.충무중 06.충무고, 충무여중, 통영중 08.통영잠포학교 09.통영고	10.통영중앙중 11.산양중

지역	1980s	1990s	2000s	2010s
거창	85.거창중 86.가조중.00 87.거창여중		05.거창산업과학고(아림고) 08.가조중.10	10.마리중, 19.거창나래학교 11.가조중(폐지) 13.웅양중
고성	85.고성여중	94.고성중.07	09.고성중,회화중	10.하일중 12.영천중 13.고성중앙고
남해	85.남해중 86.남해여중 87.고현중.10		05.설천중 06.남해정보산업고,미조중	11.고현중(폐지) 13.남해제일고
산청	85.단성중		05.덕산중 07.단성고 09.산청중	11.산청고,덕산고
양산	85.양산중.95 86.기장중.94	97.삼성중.97 98.양산중.06	03.양산남부중(양산중앙중) 05.양주중,웅상고 06.신주중,양산남부고 07.서창중 08.범어중,물금고 09.웅상중	10.삼성중 11.양산희망학교 11.웅상여중 12.서창고 13.양산고 16.범어고
의령	85.의령중 87.신반중 89.신반여중.93	96.경남은광학교	07.의령고	16.신반정보고
창녕	85.창녕중		04.영산중 05.창녕제일고	
하동	85.하동중앙중 86.금남중.88 86.진교중 89.옥중중.01		00.옥중고.04 07.옥중중,하동고	10.금남중 11.옥중고 12.진교고,화개중 16.한다사중
함안	85.함안중 86.법수중.00		08.함안고	
함양	85.함양중 86.마천중.95	95.함양여중	03.함양제일고	12.마천중 13.수동중
합천	85.합천중 86.삼가중.10 87.초계중.90		08.삼가고,초계중	10.야로중,합천고 11.삼가중(폐지) 13.삼가중
울산	85.학성중 86.무룡중	91.일산중 96.대현중		

* 읽기 : 개설 학년도, 학교명, 종료학년도

1. 강조사항

- 1) 이 문서는 중등교육과 자료실에 탑재함(서식 변형 금지)
- 2) 기관별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자기실적평가서’를 참작하여 평정함
- 3)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는 승진, 포상, 성과상여금 등에 활용되는 점을 인식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함
- 4) 파견근무자 : 근무기관에서 소속기관으로 평정자료 송달 <서식 1.3.2>
- 5) 평정(학)년도에 징계나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전보된 경우에는 해당 교육지원청이나 고등학교로 즉시 통보 바람
- 6) 11월말까지 NEIS 인사기록 정비를 완료해야 함
 - ① 중학교는 교육지원청 일정에 맞추고
 - ② 고등학교는 중등교육과에 인사기록 변경을 신청하고,
 - ③ 인사담당자(교감/장학사)는 등재 내용을 철저히 확인해야 함
- 7)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은 제출하고, 사본은 학교에 보관함
- 8) [자료 7.1] 기관번호를 확인하여 해당 서식에 기관번호를 기재해야 함

2. 근무성적 평정서류 제출

- 1) 전자문서제출하지 말 것(평정서류의 직인으로 갈음함)
- 2) 종이문서: 다음 일정에 따라 제출함

제출일자	대상		장소
	오전	오후	
2025.1.10.(금)	본청, 직속기관	창원교육지원청 김해교육지원청	경상남도교육청 소회의실(2층 강당 옆) 또는 중등교육과 인사담당(4층)
2025.1.13.(월)	중부지역 교육지원청 동부지역 교육지원청	중부지역 고등학교 동부지역 고등학교	
2025.1.14.(화)	서부지역 교육지원청	서부지역 고등학교	

① 교사 근무성적 평정서류

제출서류	제출처	제출일자	제출방법
〈서식 1〉 근무성적평정결과보고서 1부	중등 교육과	2) 종이문서 제출 일정과 동일	직접제출
〈서식 1.2〉 다면평가합산표 1부			
〈서식 1.3〉 근무성적평정표 1부			
〈서식 1.4〉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표 1부			
〈엑셀파일〉 2024.교사 최종평정점일람표 1부 (정보공개대응자료) - 고등학교, 특수학교, 교육지원청 - 파일명교번_교명(예시:123_한국중학교) - 교육지원청에서는 취합하여 제출	중등 교육과	2025. 1. 14.(화)	조재훈 장학사 업무메일

② 교감 근무성적 평정서류

제출서류	제출처	제출일자	제출방법
〈서식 1〉 근무성적평정결과보고서 1부 [복수교감 학교만]	중등 교육과	2025. 1. 14.(화) 도착	등기우편 또는 직접제출
〈서식 1.1〉 근무성적평정표 1부			
〈서식 1.1.1〉 자기실적평가서 1부			
〈서식 1.1.2〉 교육경력평정자료 1부			
〈서식 1.1.3〉 근무성적평정확인자료 1부			
※ ‘교감’의 근무성적평정표 는 자기실적평가서를 참고하여 교장(평정자)이 직접 작성, 날인 후 자기실적평가서(서식 1.1.1) 와 함께 봉인, 인비 처리하여 등기우편 또는 직접제출			
〈엑셀서식〉 근무성적평정확인자료 - 교육지원청에서는 취합하여 제출	중등 교육과	2025. 1. 14.(화)	송부호 장학사 업무메일

③ 장학사/교육연구사 근무성적 평정서류_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본청

제출서류	제출처	제출일자	제출방법
〈서식 1〉 근무성적평정결과보고서 1부 [초중 통합평정, 복수평정만]	중등 교육과	2025. 2. 12.(수)	직접제출
〈서식 1.1〉 근무성적평정표 1부 [초중 통합평정표, 중등평정표]			
〈서식 1.1.1〉 자기실적평가서 1부			
〈서식 1.1.3〉 근무성적평정확인자료 1부			
〈서식 1.1.4〉 중학교 교감 근무실적평정자료 1부 [교육장 작성_교육지원청만 제출]			
〈엑셀서식〉 근무성적평정확인자료 〈서식 1.1.4〉 중학교 교감 근무실적평정자료 1부 [교육장 작성_교육지원청만 제출]	중등 교육과	2025. 2. 12.(수)	송부호 장학사 업무메일

3) 행정처분 대상자 명단

- 교육지원청: 2025. 2. 12.(수)까지 제출[단, 추가내용 발생 시 즉시 공문 제출]
- 공립 중학교 교감(교사에서 승진자도 포함) 중 평정학년도에 행정처분(경고·주의)을 받은 사람의 명단을 아래 서식으로 도교육청에 공문 제출(해당 없음도 제출)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처분		처분일	사유
				종류	횟수		

3. [승진/자격연수 대상자] 명부작성용 평정서류 제출

1) 전자문서(명단 및 파일) 제출

- 2025. 1. 10.(금)까지: 중학교→교육지원청

고등학교, 특수학교→본청 중등교육과

- 2025. 1. 14.(화)까지: 직속기관, 지원청→본청 중등교육과

공문예시)

제목: 중등 교장·교감·장학(교육연구)관 승진후보자/자격연수대상자 명부 작성용 명단 제출

본문:

2025. 교육공무원 평정업무 처리요령에 따라 명단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교장·교감·장학(교육연구)관 승진후보자/자격연수대상자 명부 작성용 명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성별	과목	비고

붙임 교장승진_○○고_홍길동 1부. 끝.

① 기안문은 명부별로 각각 따로 작성

* 승진 : 교장/장학관/교육연구관/교감

* 자격연수 : 교장/교감

* 교장자격증 소지자 : 교장/장학관/교육연구관 승진후보자 명부 각각 가능

② 파일명: 교장승진_○○고_홍길동.xlsx / 교감자격연수_○○중_홍길서.xlsx

③ 보안관리: '비공개, 6호, 영구'로 설정

④ 중학교는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고등학교는 도교육청 중등교육과로 제출

⑤ 공문제목, 표제목: 해당 없는 부분 삭제하기

※ 의무제출 대상자

- 교장 승진후보자 명부: 교감·장학(교육연구)사 중 교장자격소지자

- 장학(교육연구)관 승진후보자 명부: 2년 이상의 장학(교육연구)사 경력이 있는 사람

2) 종이문서 제출

제출일자	대상		장소
	오전	오후	
2025.1.10.(금)	본청, 직속기관	창원교육지원청 김해교육지원청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인사담당(4층)
2025.1.13.(월)	중부지역 교육지원청 동부지역 교육지원청	중부지역 고등학교 동부지역 고등학교	
2025.1.14.(화)	서부지역 교육지원청	서부지역 고등학교	

① 교장/장학관/교육연구관 승진후보자(순서대로 개인별 클립 사용하여 묶음)

- 〈서식 2.1〉 승진후보자명부 1부.
- 〈서식 3〉 종합평정표 1부.
- 〈서식 4〉 경력평정표 1부.
- 〈서식 5〉 연수성적평정표 1부.
- 〈서식 6.1〉 경력 가산점 평정표 1부.
- 〈서식 6.2〉 실적 가산점 평정표 1부.
- 〈서식 6.3〉 농어촌경력 가산점 평정표 1부.

※ NEIS 인사기록 제출(명부작성 대상자 모두 제출)

② 교감 승진후보자(순서대로 개인별 클립 사용하여 묶음)

- 〈서식 2.2〉 승진후보자명부 1부.
- 〈서식 3〉 종합평정표 1부.
- 〈서식 4〉 경력평정표 1부.
- 〈서식 5〉 연수성적평정표 1부.
- 〈서식 6.1〉 경력 가산점 평정표 1부.
- 〈서식 6.2〉 실적 가산점 평정표 1부.
- 〈서식 6.3〉 농어촌경력 가산점 평정표 1부.

병적증명서 1부.(2024년 국립 또는 사립에서 전입 교감자격증 소지자)

※ NEIS 인사기록 제출(명부작성 대상자 모두 제출)

③ 교장/교감 자격연수대상자(순서대로 개인별 클립 사용하여 묶음)

- 〈서식 3〉 종합평정표 1부.
- 〈서식 4〉 경력평정표 1부.
- 〈서식 5〉 연수성적평정표 1부.
- 〈서식 6.1〉 경력 가산점 평정표 1부.
- 〈서식 6.2〉 실적 가산점 평정표 1부.
- 〈서식 6.3〉 농어촌경력 가산점 평정표 1부.

병적증명서 1부.(군경력을 승진경력으로 평정한 사람만 제출)

※ NEIS 인사기록 제출(명부작성 대상자 모두 제출)

3) NEIS 인사기록 제출(명부작성 대상자 모두 제출)

- ① NEIS 인사기록에 등재된 경력/실적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함
- ② NEIS에 등재되지 않은 경력/실적은 증빙서류(원본대조필) 제출
- ③ 인사담당자(교감 등)가 직접 출력하여 철저히 확인(원본대조필)
 - 인사카드(전체)에서 A4 단면으로 2쪽 모아찍기 출력
 - 평정에 사용한 항목마다 형광펜으로 표시
- ④ NEIS 인사기록 및 출력물 변조 절대 금지(지정 취소 및 강력 징계)

4. 기타사항

1) 기숙사 사감 인정대상자 명단 제출: 2024.11.29.(금)까지

연번	소 속	직위	성 명	담당기간	비 고
				2024.3.1.~2025.2.28.	

2) 낙동강학생교육원, 진산분원, 칠북분원 위스쿨 담임 인정대상자 명단 제출: 2024.11.29.(금)까지

연번	소 속	직위	성 명	담당기간	비 고
				2024.3.1.~2025.2.28.	

3) 인사 업무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담당 업무
268-1172	송부호	<u>교장</u> (장학관, 연구관) 승진, 전직, 전보, 자격연수, 교장공모제, 교육행정지도자과정 업무
268-1173	조재훈	<u>교감</u> (장학사, 연구사) 승진, 전직, 전보, 자격연수, 전문직 공채, 교사근무성적평정, 수석교사 선발·배치·재심사업무
268-1174	양광성	<u>교사 인사</u> 및 정 현원 관리, 특수교사 인사, 시간선택제, 초빙 교사(전보특례), 사서교사 인사
268-1175	김영란	<u>교원 복무</u> , 진로전담·영양교사 인사, <u>교원 징계</u> 및 면직, 교원 능력개발평가, 진로전담교사 선발
268-1176	강미라	<u>교원성과금</u> , 타 시·도 및 국·공립인사 교류, 전문상담·보건 교사 인사, 보직(담임)교사 관련 업무, 겸임, 학습연구년제, 공무국외 출장 관련 업무

4) 인사 업무 관련 서식 탑재 경로: K-에듀파인 → 업무지원 → 알림판(일반게시판)
→ 중등 교원 인사 → 게시물 목록

5. 인사서류 제출 일자(학교,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본청)

순	업무내용	경로 및 처리기관	제출(완료) 일자
1	작성방법 연수회 개최(학교)	학교 자체	2024.11.29.(금)~
2	나이스 인사기록 정리 완료(주소현행화 등)	학교, 교육지원청	2024.11.29.(금)~
3	기숙사 사감대상자 명단 제출 (전자문서 공문제출)	고등학교, 교육지원청 → 중등교육과	2024.11.29.(금) 79쪽 참조
4	낙동강학생교육원, 진산분원, 칠북분원 위스쿨 담임 인정대상자 명단 제출(전 자문서 공문제출)	직속기관 → 중등교육과	2024.11.29.(금) 79쪽 참조
5	교감, 교장 전보(전직) 엑셀 서식 업무메일 제출 및 전보(전직) 종이문서 직접 제출	중학교 → 교육지원청 고등(특수)학교 → 본청 중등교육과	2024.12.9.(월) 17:00까지
6	교감, 교장, 장학(교육연구)사, 장학(교육연구)관 전보(전직) 엑셀 서식 업무메일 제출 및 전보 (전직) 종이문서 직접 제출	직속기관·본청부서, 교육 지원청 → 본청 중등교육과	2024.12.12.(목) 17:00까지
7	교사(수석) 전보신청서 작성 및 공문 제출	중학교 → 교육지원청 고등(특수)학교 → 본청 중등교육과	2024.12.13.(금) 12:00까지
8	교사(수석) 전보신청서 작성 및 공문 제출	직속기관·본청부서, 교육 지원청 → 본청 중등교육과	2024.12.16.(월) 17:00까지
9	교사, 수석교사 전보서류 제출 (종이문서 직접제출)	중학교 → 교육지원청	2024.12.13.(금) 17:00까지
		고등·특수학교, 교육지원청, 본청 부서·직속기관 → 중등교육과	2024.12.16.(월)~ 12.20.(금)
10	교장(감) 승진·자격 서류 제출 (전자문서 공문제출, 종이문서 직접제출)	중학교 → 교육지원청 고등(특수)학교 → 본청 중등교육과	2025.1.10.(금)
11	교사, 교감 근무성적평정 자료 (종이문서 직접제출, 엑셀 서식 업무 메일제출)	고등·특수학교, 교육지원청, 직속기관·본청부서 → 중등교육과	2025.1.10.(금)~ 1.14.(화) 74쪽, 75쪽 참조
12	교장(감) 승진·자격 서류 제출 (종이문서 직접제출)	교육지원청, 직속기관·본청 부서 → 중등교육과	2025.1.10.(금)~ 1.14.(화) 78쪽, 79쪽 참조
	교장(감) 승진·자격, 장학(교육연구)관 승진, 교장 전직[장학(교육연구)사→교장] 서류 제출(종이문서 직접제출)		
13	중·고·특수 교감 근무성적평정 자료 (등기우편제출)	학교 → 도교육청	2025.1.14.(화) 75쪽 참조
14	교사 최종평정점일람표 자료 (담당자 업무메일로 제출)	고등·특수학교,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 중등교육과	2025.1.14.(화) 75쪽 참조
15	장학(교육연구)관 승진, 교장(감) 자격, 교장 승진[장학(교육연구)사→교장] 서류 제출(전자문서 공문제출)	교육지원청, 직속기관·본청 부서 → 중등교육과	2025.1.14.(화)
16	감점 대상자(행정처분자 포함) 명단 제출 (전자문서 공문제출)	교육지원청, 직속기관·본청 부서 → 중등교육과	2025.2.12.(수) 76쪽 참조
	교육전문직(장학사, 교육연구사) 근무성적 평정 자료 제출(종이문서 직접제출 및 엑셀 서식 업무메일 제출)		

[자료 7.1]

평정업무 기관번호 (공립)

번호	학교	번호	학교	번호	학교	번호	학교
	중학교	153	동진중	506	삼정중	805	웅상여중
101	경원중	154	동진여중	507	임호중	806	양주중
102	양곡중	155	안골포중	508	영운중	807	신주중
103	반송중	156	석동중	509	경운중	808	범어중
104	반송여중	157	용원중	510	가야중	809	서창중
105	창원중앙중	158	진해냉천중	511	봉명중	810	원동중
106	신월중	159	진해신항중	512	구산중	811	물금중
107	토월중	160	웅천중	513	김해삼계중	812	금오중
108	명서중	201	진주중	514	분성중	813	사송중
109	봉림중	202	진주남중	515	김해대곡중	901	의령중
110	반림중	203	진주중앙중	516	활천중	902	신반중
111	사파중	204	진주봉원중	517	한얼중	911	함안중
112	웅남중	205	진주여중	518	진영장등중	912	법수중(폐교)
113	봉곡중	206	진명여중	519	김해대동중	913	호암중
114	남산중	207	진주제일중	520	진영중	921	창녕중
115	대방중	208	개양중	521	생림중	922	영산중
116	안남중	209	반성중	522	월산중	923	부곡중
117	팔룡중	210	대곡중	523	능동중	931	고성중
118	창원상남중	211	금곡중	524	관동중	932	고성여중
119	명곡여중	212	진서중	525	율하중	933	고성동중
120	안민중	213	명석중	526	내덕중	934	회화중
121	삼정자중	214	지수중	527	대청중	935	영천중
122	창덕중	215	문산중	528	수남중	936	동해중
123	창북중	216	경남꿈키움중	529	김해모산중	937	소가야중
124	도계중	222	경사부중(국)	601	밀양중	941	남해중
125	창원동중	301	통영중	602	밀양여중	942	남해여중
126	감계중	302	충무중	603	무안중	943	미조중
131	마산중	303	통영여중	604	미리벌중	944	설천중
132	마산동중	304	충무여중	701	옥포중	945	꽃내중
133	양덕중	305	통영중앙중	702	옥포성지중	951	하동중앙중
134	마산서중	306	산양중	703	거제고현중	952	화개중
135	구암중	307	도산중	704	신현중	953	악양중
136	해운중	308	한산중	705	거제중앙중	954	청암중
137	합포중	309	육지중	706	수월중	955	금남중
138	마산여중	310	사랑중	707	하청중	956	진교중
139	양덕여중	401	삼천포제일중	708	거제제일중	957	옥종중
140	합포여중	402	삼천포중앙여중	709	연초중	958	한다사중
141	내서중	403	사천중	710	성포중	961	산청중
142	삼계중	404	사천여중	711	지세포중	962	덕산중
143	광려중	405	곤양중	712	동부중	963	단성중
144	호계중	406	서포중	713	계룡중	964	신등중
145	진전중	501	김해중	714	거제장평중	971	함양중
146	구남분교	502	김해서중	801	양산중	972	함양여중
147	구산중	503	김해여중	802	삼성중	973	마천중
151	진해중	504	내동중	803	양산중앙중	974	수동중
152	진해여중	505	신어중	804	웅상중	975	서상중

번호	학교	번호	학교	번호	학교	번호	학교
981	거창중	207	진양고	801	양산고	109	밀양아리솔학교
982	고제분교	208	진주기계공고	802	웅상고	본청/직속/지원청	
983	거창여중	209	경남정보고	803	양산남부고	1	경상남도교육청
984	웅양중	210	경남과학고	804	물금고	51	경남교육연수원
985	거창덕유중	211	경남체육고	805	서창고	52	경남미래교육원
986	신원분교(폐교)	222	경사부고(국)	806	범어고	53	경남과학교육원
987	가조중	301	통영고	807	증산고	54	과학교육원 우포생태분원
991	합천중	302	충무고	901	의령고	55	경남수학문화관
992	야로중	303	통영여고	902	신반정보고	56	경남학생교육원
993	초계중	401	삼천포중앙고	911	함안고	57	학생교육원 남해분원
994	삼가중	402	곤양고	921	영산고	58	덕유학생교육원
고등학교		403	경남자영고	922	창녕슈퍼텍고	59	낙동강학생교육원
101	창원중앙고	404	삼천포공고	931	고성중앙고	60	낙동강학생교육원 진산분원
102	창원여고	501	김해고	932	경남항공고	61	낙동강학생교육원 칠북분원
103	창원명지여고	502	김해여고	933	경남고성음악고	62	경남특수교육원
104	창원남산고	503	김해가야고	941	남해제일고	63	경남학생안전체험교육원
105	창원중앙여고	504	김해경원고	942	남해정보산업고	100	창원교육지원청
106	창원사과고	505	김해분성고	943	경남해양과학고	200	진주교육지원청
107	창원용호고	506	김해분성여고	944	남해보물섬고	300	통영교육지원청
108	창원신월고	507	김해영운고	951	옥종고	400	사천교육지원청
109	창원봉림고	508	김해삼방고	952	금남고	500	김해교육지원청
110	창원명곡고	509	진영고	953	진교고	600	밀양교육지원청
111	창원대암고	510	김해제일고	954	하동고	700	거제교육지원청
112	창원토월고	511	김해임호고	961	신등고	800	양산교육지원청
113	창원기계공고	512	김해올하교	962	산청고	900	의령교육지원청
114	창원과학고	513	장유고	963	덕산고	910	함안교육지원청
115	창원북면고	514	김해대청고	964	단성고	920	창녕교육지원청
131	마산고	515	김해삼문고	971	함양고	930	고성교육지원청
132	마산여고	516	구산고	972	서상고	940	남해교육지원청
133	합포고	517	김해건설공고	973	안의고	950	하동교육지원청
134	마산가포고	518	김해생명과학고	974	함양제일고	960	산청교육지원청
135	마산구암고	519	진영제일고	981	거창여고	970	함양교육지원청
136	마산용마고	520	김해외고	982	아림고	980	거창교육지원청
137	마산내서여고	521	김해수남고	983	거창송강기고	990	합천교육지원청
138	태봉고	522	김해금곡고	984	거창연극고		
139	창원예술학교	601	밀양고	991	야로고		
140	경남온라인학교	602	밀양여고	992	삼가고		
151	진해고	603	한국나노마이스터고	993	합천고		
152	진해여고	604	밀양영화고	994	초계고		
153	웅천고	701	거제중앙고	101	창원천광학교		
154	진해용원고	702	거제제일고	102	경남해림학교		
201	진주고	703	거제옥포고	103	진주해광학교		
202	진주여고	704	연초고	104	통영잠포학교		
203	명신고	705	거제상문고	105	김해은혜학교		
204	진주중앙고	706	경남산업고	106	양산희망학교		
205	대곡고	707	거제여상고	107	의령은광학교		
206	진서고	708	거제공고	108	거창나래학교		

[자료 7.2]

평정업무 기관번호(사립)

번호	학교	번호	학교	번호	학교	번호	학교
	중학교	705	장목예술중	106	창원성민여고	702	해성고
101	창원여중	801	양산여중	107	경상고	801	양산여고
102	창원중	802	개운중	108	창원대산고	802	양산제일고
103	창원남중	803	물금동아중	109	경남관광고	803	효암고
104	창원대산중	804	보광중	110	창원공업고	804	보광고
131	마산제일여중	901	의령여중	131	마산제일여고	805	경남외국어고
132	마산중앙중	902	정곡중	132	마산무학여고	901	의령여고
133	성지여중	903	지정중	133	마산제일고	911	칠원고
134	마산무학여중	911	칠원중	134	성지여고	912	명덕고
135	마산삼진중	912	함안여중	135	창신고	913	군북고
136	창신중	913	군북중	136	마산중앙고	914	경남로봇고
137	마산의신여중	914	대산중	137	마산삼진고	921	남지고
151	진해남중	915	칠성중	138	한일여고	922	창녕여고
152	웅동중	916	함성중	139	마산공업고	923	창녕옥야고
201	삼현여중	921	창녕여중	140	경남전자고	924	창녕고
202	진주동중	922	남지중	151	진해중앙고	925	창녕대성고
203	경해여중	923	남지여중	152	진해세화여고	926	한국과학기술고
204	대아중	924	신창여중	201	경해여고	931	고성고
205	진주동명중	925	대성중	202	대아고	932	철성고
206	선인국제중	926	성산중	203	삼현여고	941	남해고
301	동원중	927	창녕옥야중	204	진주동명고	942	남해해성고
302	충렬여중	931	철성중	205	진주제일여고	943	창선고
401	용남중	941	창선중	206	진주외국어고	951	하동여고
402	삼천포중	942	상주중	207	경남자동차고	961	경남간호고
403	삼천포여중	943	이동중	208	선명여고	962	간디고
404	남양중	944	해성중	209	경진고	963	지리산고
405	곤명중	951	하동중	210	경남예술고	981	거창대성고
501	장유중	971	안의중	301	동원고	982	거창중앙고
502	김해중앙여중	981	거창대성중	302	충렬여고	983	대성일고
503	진례중	982	샛별중	401	삼천포여고	984	거창고
504	한림중	983	혜성여중	402	사천고	991	합천여고
601	밀성여중	991	합천여중	403	삼천포고	992	합천평화고
602	밀성중	992	대병중	404	용남고	특수학교	
603	밀양동강중	993	해인중	405	사천여고	131	창원동백학교
604	세종중	994	가회중	501	김해중앙여고	701	거제애광학교
605	동명중	995	묘산중	502	김해한일여고		
606	삼랑진중	고등학교		601	밀성고		
607	홍제중	101	창원고	602	세종고		
701	거제중	102	창원남고	603	삼랑진고		
702	해성중	103	창원문성고	604	밀양동명고		
703	둔덕중	104	창원경일고	605	밀성제일고		
704	외포중	105	창원경일여고	701	거제고		

근무성적 평정결과 보고서				
1. 평정 대상자 : (일반/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복수교감/장학사/교육연구사				
* 위의 자격/직위별로 각각 따로 작성하여 제출함 * 일반교사에는 원로교사, 보건교사, 특수교사, 실기교사를 포함하여 평정함 * 복수교감은 작성하여 제출하고, 단수교감은 작성할 필요 없음 * 수석교사는 평정 대상자가 아님				
2. 평정 현황				
현원	평정 대상자수	제외 대상자수	제외 사유	
* 현원 = 평정 대상자수 + 제외 대상자수 * 평정 기준 : 3.1.부터 2월말일 까지 2개월이상 근무한 사람 - 휴직 상태일지라도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평정함 - 도교육청 직속기관 파견 근무자는 소속기관에서 평정함(기준 무관) * 제외 기준 : 3.1.부터 2월말일 까지 2개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사람 - 휴직, 휴가, 별도정원 등의 사유로 2개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사람은 평정할 수 없음 - 도교육청 소속 외의 기관(교원대의 연수 등) 파견 사유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평정할 수 없음 - 퇴(면)직자는 근무 유무에 관계없이 평정에 제외. 단, 2월말 퇴(면)직자는 포함				
3. 평정 결과				
등급	평정점	배분비율	평정인원수(명)	비고
수	95점 이상	30%		* 배분비율에 맞게 나왔는가? * 평정인원이 같게 나왔는가?
우	90점 이상 95점 미만	40%		
미	85점 이상 90점 미만	20%		
양	85점 미만	10%		
4. 확인 날인				
구분	소속	직위	성명	날인
평정자				(인)
확인자				(인)
접수자		장학사		(인)

- * 국립 : 평정자(교장), 확인자(총장), 교감 평정은 중고를 통합하여 복수교감으로 평정함
- * 평정자, 확인자는 1쪽, 2쪽에 따르며, 접수자는 대상자가 중학교 교사인 경우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 장학사, 고등학교 교사와 교감 등(장학사, 교육연구사)은 도교육청 업무 담당 장학사
- * 평정 결과 ‘양’이 없으면 ‘미’ 배분 비율에 포함

(교감/장학사/교육연구사) 근무성적 평정표											
평정기간			조정자				확인자		평정자		
2024. 3. 1.부터 2025. 2. 28.까지			부교육감 (인)				직위 (인)		직위 (인)		
대상자		평정 주체	평정요소				평 정 점	환 산 점	총 점	조 정 점	순 위
			태도	연구	지원	행정					
소속	성명		20	40	20	20					
창원 중학교	김동길	평정자									
		확인자									
전문직 예시		평정자							99.10 수		2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 * 관련 : 제17조
- * 제목은 대상자에 맞게 정리할 것
- * [성명]은 평정자가 직접 자필로 기재함
- * 평정자와 확인자 각각은 대상자를 등급별 비율에 따라 강제로 배분하여 평정해야 함
- * 대상자의 [평정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평정해야 함
- * 평정자의 [환산점] = [평정점] × 0.5, 확인자의 [환산점] = [평정점] × 0.5
- * 교감을 평정할 경우 평정자 행만 작성하고, 확인자 행은 비워 둠
- * 교육전문직원을 평정할 경우 [총점] 아래 연필로 (평가)를 기재함
- * [교감은 총점과 조정점, 교육전문직원은 조정점] : 기재하지 말 것
- * [교육전문직원의 순위] : 연필로 기재할 것
- * 칸이 부족할 경우 설명부를 삭제하고 행을 추가하여 작성할 것

(교감/장학사/교육연구사) 자기실적 평가서

1. 평가지침

- * 근무실적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 * 객관적 근거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평가기간 : 2024.3.1.부터 2025.2.28.까지

3. 인적사항(본인) 소속 : _____ 직위 : _____ 성명 : _____

4. 담당업무 :

5. 교육활동지원 및 교육연구

- * 추진목표 :
- * 추진실적 :

6. 교원지원

- * 추진목표 :
- * 추진실적 :

7. 행정사무관리

- * 추진목표 :
- * 추진실적 :

8. 종합평가

요소	내용	만족	보통	미흡
달성도	당초 설정한 목표에 대한 달성 정도			
창의성	담당 업무 등의 창의적인 업무수행 정도			
적시성	담당 업무를 기한내 효과적으로 처리한 정도			
노력도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공헌도			

2024년 월 일

작성자 _____ 서명 _____

- * 근무성적평정의 기초자료이므로 자신의 실적을 정직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할 것
- * 학력향상 및 특색교육 활동 등의 노력 및 향상도를 정확하게 기록할 것
- * 8.종합평가는 해당 결과에 ○를 표기함
- * 1면 분량을 초과하지 말 것

교감 교육경력 평정자료					
1. 대상자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만세)	
2. 경력 : 반드시 인사기록의 경력사항을 확인할 것					
기관/부서	직위	근무기간		월수	일수
		부터	까지		
통영중, 진주고	교감	12.03.01	25.02.28	156	0
마산교육청	장학사	10.09.01	12.02.28	18	0
교육연구정보원	연구사	09.09.01	10.08.31	12	0
함안고 등	교사	91.03.02	09.08.31	221	29
3. 교육총경력	33년 11월 29일		←	407	29
4. 상응직경력	14년 6월 00일		←	174	●
5. 확인 날인					
구분	소속	직위	성명	날인	
평정자				①	
확인자				①	

1.대상자의 [생년월일(만세)] : 2025.2.28.기준

2.경력 : 24~26쪽 참조

(교감/장학사/교육연구사) 근무성적평정 확인자료												
1. 대상자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만세)						
2. 경력/실적 등의 평정(교육총경력 : 2025.2.28.기준)(현임지, 상응직 경력 2025.2.28.기준)												
구분	① 교육 총경력	② 현임지 발령일 (경력)	③ 생년 월일 (만세)	④ 상응직 발령일 (경력)	⑤ 교감 자격 취득일	⑥ 교무 (장학) 실적	⑦ 특별 교육 실적	⑧ 업무 추진 능력	⑨ 확인자 평정점	⑩ 감점 처리	⑪ 평정 총점	⑫ 순위 점수 (평어)
내용	32.09	2021. 03.01. (3.00)	1966. 05.10. (57)	2014. 09.01. (08.06)	2017. 08.31.							
점수												()
3. 참고자료 :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것만 간결하게 요약(2024학년도)												
평정사항		평정요소			평정내용							
자질 및 태도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태도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		교육활동지원 및 교육연구			- 연구대회입상 실적 - 학위취득 실적 - 직무연수이수 실적 등 NEIS에 등재된 것							
		교원지원										
		행정사무관리										
감점요인⑩		행정처분 및 징계			주의 2회 등으로 기록							

[제목]에서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하고, 2.의 ⑧,⑨,⑩,⑪,⑫와 점수는 비워 둠

[①교육총경력]: 〈경력평정표〉의 경력(24~26쪽 참조)

- 경력이 3년 6개월 9일이라면 '03.06'으로 작성함

[③생년월일(세)]: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에 따른 나이 계산

[④상응직 경력]: 교감 경력에 장학사/교육연구사 경력을 더하여 작성함

- 사립학교 교감/교장 경력은 제외할 것(공무원 경력이 아님)

[⑥교무(장학)실적]: 업무혁신, 제안, 교육정책 추진, 교육활동 지원 등으로

- 교육감 이상의 기관 표창을 받은 기관의 교감/장학사/교육연구사(원본대조필)

[⑦특별한 교육실적]

- 교육감/교육부장관 지정 연구·실험·시범학교를 운영한 학교의 교감(원본대조필)

- 전국규모 체육대회에서 단체경기 3위 이상 입상한 학교의 교감(원본대조필)

- 기타 특별한 교육실적(원본대조필)

※ 각종 실적은 해당페이지만 2쪽 인쇄하여 제출(부피를 최대한 줄일 것)

[⑩감점]: 물의를 야기한 사람,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사람, 행정처분(경고 또는 주의)을 받은 사람, 건강, 성품 또는 자질 등에 문제가 있는 사람, 공문처리 미흡, 보고 지연 및 사무 착오로 사유서를 제출하였거나, 대장에 등재된 사람

〈서식 1.1.4〉 교육(지원)청 제출용

기관번호() ○○교육지원청 [직인]

중학교 교감 근무실적 평정자료							
순위	소속	성명	생년월일(만세)	교육 총경력 (2025.2.28. 기준)	상응직 경력 (2025.2.28. 기준)	근무실적	
						실적점	평정점
1	상남중	홍길동	66.05.10.(57)	33.11	08.06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 중학교 교감을 대상으로 확인자(교육장)가 작성함 (고등학교 교감은 작성할 필요 없음)
- * 근무성적 확인자 평정점 중 교육장이 부여하는 10점에 관한 평정 사항임
- * [순위]는 교육지원청에서 자체 기준을 설정하여 작성함
- * [근무실적]의 실적점 및 평정점은 기재하지 말고, 공란으로 제출함
- * 교육경력 산정 기준일: 2025.2.28. (24~26쪽 참조)
- * 상응직 경력 산정 기준일: 2025.2.28.
- * 원본파일은 인사담당 송부호 장학사의 업무메일로 제출

교사 다면평가 합산표						
① 평가기간		② 확인자			③ 평정자	
. . .부터 . . .까지		직위 성명 (인)			직위 성명 (인)	
		점수			④ 환산점	⑤ 총점
평가 대상자 소속	평가 대상자 성명	평가 종류				
		다면평가	정성			
			정량			
		다면평가	정성			
			정량			
		다면평가	정성			
			정량			
		다면평가	정성			
			정량			
		다면평가	정성			
			정량			
		다면평가	정성			
			정량			
		다면평가	정성			
			정량			
		다면평가	정성			
			정량			

〈서식 1.2.1〉 학교보관용

정성평가 방법에 따른 교사 다면평가표									
평가기간			확인자					평정자	
2024. 3. 1.부터 2025. 2. 28.까지			직위 : 성명 : (인)					직위 : 성명 : (인)	
대상자		평가 주체	평가요소					평가 점	환 산 점
			태도	학습	생활	전문성	업무		
소속	성명		10	40	30	5	15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 제28조의3 제1항 관련

* [환산점] = [평가점] × 0.32,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가 서명 날인함

〈서식 1.2.2〉 학교보관용

정성평가 평가자별 평가표

평가자 : 홍 길 동 (인)

[illegible]

* 평가자는 본인을 평가하지 않음

* 평가점(총점)은 등급별 비율에 따라 인원을 강제로 배분하여 상대평가를 실시함

정성평가 평가요소별 집계표

작성자 교감 홍길동 (인)

확인자 교장 홍길서 (인)

■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태도(10)

대상자		평가자별 평가점					합계	평균 (10)
연번	성명	평가자1	평가자2	평가자3	...	...		

* [합계]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들의 합계 (평가자수가 4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 [평균] = [합계] ÷ 유효평가자수

■ 학습지도(40)

대상자		평가자별 평가점					합계	평균 (40)
연번	성명	평가자1	평가자2	평가자3	...	...		

■ 생활지도(30)

대상자		평가자별 평가점					합계	평균 (30)
연번	성명	평가자1	평가자2	평가자3	...	...		

■ 전문성개발(5)

대상자		평가자별 평가점					합계	평균 (5)
연번	성명	평가자1	평가자2	평가자3	...	...		

■ 담당업무(15)

대상자		평가자별 평가점					합계	평균 (15)
연번	성명	평가자1	평가자2	평가자3	...	...		

〈서식 1.2.4〉 학교보관용

정량평가 방법에 따른 교사 다면평가표								
평가기간			확인자				평정자	
2024. 3. 1.부터 2025. 2. 28.까지			직위: 성명 : (인)				직위: 성명 : (인)	
대상자		평가 주체	평가요소				평가 점	환산 점
			학습	생활	전문성	업무		
소속	성명		30	30	10	30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 제28조의3 제1항 관련

* [환산점] = [평가점] × 0.08,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가 서명 날인함

서 약 서

○○○학교

교사 ○○○

1. 본인은 학교장이 정한 다면평가자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본인은 다면평가자로서 학교장이 정한 다면평가 절차 및 방법을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3. 본인은 다면평가 대상자를 공정한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4. 본인은 다면평가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비밀로 간직하겠습니다.
5. 본인은 이 서약을 어길 경우 평가에서 배제되고, 본인의 평가가 무효로 처리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 본인은 이 서약을 어겨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이를 감수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서명 _____

○○○학교장 귀하

〈서식 1.3〉 교육(지원)청 제출용

기관번호() ○○학교 [직인]

[illegible]

* 관련 : 제28조의3 제1항

* 평정자의 [환산점] = [평정점] × 0.2, 확인자의 [환산점] = [평정점] × 0.4, [총점]은 60점

* 평정자와 확인자 각각은 대상자를 등급별 비율에 따라 강제로 배분하여 평정해야 함

* 대상자의 [평정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평정해야 함

교사 자기실적 평가서

1. 평가 지침

근무성적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객관적 근거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평가 기간 : 2024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3. 평가자 인적사항

○ 소속 :

○ 직위 :

○ 성명 :

4. 평가자 기초 자료

○ 담당 학년 및 학급:

○ 담당 과목:

○ 담임 여부:

○ 담당 업무:

○ 보직교사 여부:

○ 주당 수업시간 수:

○ 연간 수업공개 실적:

○ 연간 수업개선 실적:

○ 연간 학생 상담 실적:

○ 연간 학부모 상담 실적:

○ 연간 장학자료 개발 실적:

○ 연간 학생경연대회 지도 실적:

○ 연간 교과연구회 활동 참여 실적:

5. 자기실적 평가

가. 학습지도

○ 학습지도 추진 목표(학년 초에 계획되었던 학습지도 목표)

○ 학습지도 추진 실적(학년 초에 목표한 내용과 대비하여 추진 실적을 구체적으로 작성)

나. 생활지도

○ 생활지도 추진 목표

○ 생활지도 추진 실적

다. 전문성개발

○ 전문성개발 추진 목표

○ 전문성개발 추진 실적

라. 담당 업무

○ 담당 업무 추진 목표

○ 담당 업무 추진 실적

○ 창의적 업무개선 사항

※ 자기 평가 종합 상황

자 기 평 가	목표달성도	설정한 목표에 대한 달성 정도	만족	보통	미흡
	창 의 성	학습지도, 생활지도, 전문성개발, 담당 업무 등의 창의적인 수행 정도	만족	보통	미흡
	적 시 성	학습지도, 생활지도, 전문성개발, 담당 업무 등을 기한 내에 효과적으로 처리한 정도	만족	보통	미흡
	노 력 도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공헌도	만족	보통	미흡

년 월 일

작성자(본인) 성명

서명(인)

파견교사 근무성적 평정자료			
1. 대상자			
소속기관	직위	성명	생년월일(만세)
명품중	교사	홍길동	66.10.10. (57)
2. 근무현황			
근무기관	근무부서	담당업무	근무기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과	○○담당	2024.03.01.부터 2025.02.28.까지
3. 참고사항 :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것만 개조식으로 요약			
평정사항	평정요소	참고사항	
자질 및 태도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태도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	학습지도		
	생활지도		
	전문성 개발		
	담당업무		
4. 작성/확인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24. . .			
작성자 : 장학관 홍길동 (인)			
확인자 : ○○과장 홍길서 (인)			

2. [근무기간] : 평정기간(3.1.~2월말일)과 파견기간이 겹치는 동안만 작성함
3.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는 [근무부서]의 [담당업무]를 기준으로 참고사항을 작성함
- * 근무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1월 3일(금)까지 다음 자료를 등기로 우송함(대외비)
- 대상자 본인이 작성한 〈교사 자기실적 평가서〉
 - 근무기관 담당자가 작성한 〈파견교사 근무성적 평정자료〉

교사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표						
평정기간		조정자		확인자		평정자
2024. 3. 1.부터 2025. 2. 28.까지		직위: 성명 : (인)		직위: 성명 : (인)		직위: 성명 : (인)
대상자		평정주체		환산점	총점 (합산점)	조정점
소속	성명					
		근무성적 평정	평정자			
			확인자			
		다면평가				
		근무성적 평정	평정자			
			확인자			
		다면평가				
		근무성적 평정	평정자			
			확인자			
		다면평가				
		근무성적 평정	평정자			
			확인자			
		다면평가				
		근무성적 평정	평정자			
			확인자			
		다면평가				
		근무성적 평정	평정자			
			확인자			
		다면평가				
		근무성적 평정	평정자			
			확인자			
		다면평가				

* 관련 : 제28조의3 제1항

* 평정자, 확인자, 조정자는 1쪽, 2쪽을 참조함

* 동명이인은 [성명(주민번호앞두자리수)]로 구별하여 작성함. 예 : 홍길순(63), 홍길순(93)

* [순위] 오른쪽에 (평가)를 기재함 예 : 1(수)

〈서식 2.1〉

(교장/장학관/교육연구관) 승진후보자 명부

[illegible]

* 관련 : 규정 제40조 제1항

* 제 목 : 필요 없는 부분 삭제하고, 승진할 직위별로 각각 작성

* 작성자

- [작성기관] : ○○고등학교, 경상남도○○교육지원청, 경상남도교육연수원 등
- [작성일] : '2025년 2월'로 통일하고, '일'은 작성하지 말 것
- [직위] : 고등학교는 교감, 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과장(중등교육과장), 직속기관은 부장(원장), 본청은 담당과장

* [순위]는 작성하지 말고, [근무성적], [합계]는 연필로 작성

* 대상자가 많은 지원청 : 쪽수를 표시하고, 작성자가 간인함(間印 : 결침 도장)

〈서식 2.2〉

교감 승진후보자 명부

[illegible]

* 관련 : 규정 제40조 제2항

* 작성자 : 상행만 작성하고, 하행의 기관명, 작성일, 직위, 성명 등을 작성하지 말 것

- [작성기관] : ○○고등학교, 경상남도○○교육지원청, 경상남도교육연수원 등

- [작성일] : ‘2025년 2월’로 통일하고, ‘일’은 작성하지 말 것

- [직위] : 고등학교는 교감, 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과장(중등교육과장), 직속기관은 부장(원장), 본청은 담당과장

* [순위]는 작성하지 말고, [근무성적]은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 조정점을 기록함

* [비고]에 전공과목을 구체적으로 기록 (예) 역사, 지리, 생물 등 ※ 잘못된 예 : 사회, 과학

* 대상자가 많은 교육지원청 : 쪽수를 표시하고, 작성자가 간인함(間印 : 결침 도장)

〈서식 3〉

(교장/장학관/교육연구관/교감 승진후보자/자격연수대상자)

종합 평정표

(2025.3.31.자 명부작성용)

1. 대상자						
기관번호	소속기관	직위	성명(한글)	성명(漢子)		
생년월일	최종학력	전공과목	소지자격	취득일	상응직경력	
			중등() 제()호		○년	
전화번호(학교)		휴대폰		생활근거지		
				○○시/군 ○○동/리		
2. 평정점						
근무 성적 평정	평정연도	평정기관(소속)	평정점	반영비율	환산점	합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경력 평정		기본경력				
		초과경력				
연수성적 평정		자격연수성적				
		직무연수성적				
		연구(학위취득)실적				
가산점 평정						
평정 총점						
3. 확인 날인						
구분	소속		직위	성명	날인	
작성자					인	
평정자					인	
확인자					인	

* 엑셀로 작성된 평정프로그램에서 인쇄한 출력물로 제출함

* 근무성적평정(교사) : 다섯 개 모두 입력하면, 최근부터 34%, 33%, 33% 순으로 자동 계산됨

* 작성자, 평정자, 확인자는 [입력시트]에서 자동으로 연결됨

* 평정자는 반드시 대상자의 해당자료를 철저히 확인하고 평정할 것

* 평정자, 확인자 : 19쪽 참조

* 교감, 장학사, 교육연구사의 근무성적평정의 평정점 : 미기재(비워둠)

〈서식 4〉

경력 평정표

(2025.3.31.자 명부작성용)

1. 대상자						
소속		직위		성명		날인
						인
2. 경력 평정						
경력별		근무처 직명	재직기간	월수/일수	평정점	합계
기본경력	가경력					
	나경력					
	다경력					
	소계					
초과경력	가경력					
	나경력					
	다경력					
	소계					
합계						
3. 확인 날인						
구분	소속		직위	성명	날인	
평정자					인	
확인자					인	

- * 관련 : 규정 제13조 제1항
- * 이 서식은 엑셀로 작성된 평정프로그램에서 인쇄한 출력물로 제출함
- * 대상자, 평정자, 확인자 정보는 [입력]시트에서 자동으로 연결됨
- * 평정자는 반드시 대상자의 해당자료를 철저히 확인하고 평정할 것
- * 평정자, 확인자 : 19쪽 참조

〈서식 4.1〉

휴직기간 경력인정 확인서

○○고등학교/경상남도○○교육지원청 [직인]

연번	직위	성명	제청기관	휴직기간	휴직사유	인정기간
			○○중	0000.00.00.부터 0000.00.00.까지	제7호 (첫째)	0000.00.00.부터 0000.00.00.까지

- * 휴직 경력이 있는 평정 대상자의 모든 휴직을 대상으로 작성함
- * [제청기관] : 휴직원을 제출할 당시의 근무기관(학교)을 기재함
- * [휴직기간] : 나이스 인사기록 [경력]탭에 기록된 기간
- * [휴직사유]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의 해당 호수를 기재함. 제1호, 제7호(첫째) 등
- * [인정기간] : [휴직기간] 중에서 평정 대상으로 인정되는 기간만 기재함
 - 육아휴직(첫째) 사유로 1년 8월 동안 휴직한 경우 최초 1년 기간만 기재함
 - 대상자가 분할 휴직한 경우 상황을 판독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2행으로 나누어 작성함
- * 평정자는 반드시 대상자의 NEIS 인사기록을 철저히 확인하고 작성할 것

〈서식 5〉

연수성적 평정표

(2025.3.31.자 명부작성용)

1. 대상자									
소속			직위			성명		날인	
								인	
2. 자격연수성적 평정									
교육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교육성적		평정점	
3. 직무연수성적 평정									
교육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환산성적		평정점	
4. 연구대회입상실적 평정									
주관기관	대회명	입상일	전국규모			시·도규모			평정점
			1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5. 학위취득실적 평정									
구분		취득일	학위명		수여기관			평정점	
6. 연수성적 평정점 합계(2+3+4+5)									
7. 확인 날인									
구분		소속		직위		성명		날인	
평정자								인	
확인자								인	

* 관련 : 규정 제31조 제2항

* 이 서식은 엑셀로 작성된 평정프로그램에서 인쇄한 출력물로 제출함

* 대상자, 평정자, 확인자 정보는 [입력]시트에서 자동으로 연결됨

* 평정자는 반드시 대상자의 해당자료를 철저히 확인하고 평정할 것

* 평정자, 확인자 : 19쪽 참조

〈서식 6.1〉

경력 가산점 평정표

(2025.3.31.자 명부작성용)

1. 대상자						
소속		직위		성명	날인	
					(인)	
2. 경력 가산점 평정						
종류	근무기관	근무기간	평정대상		기간(월.일)	평정점
			시작일	종료일		
(공통)연구학교						
(선택)연구학교						
(공통)재외파견						
(선택)국내파견						
도서벽지						
준벽지						
농어촌 등						
교육활동우수교사						
도심지역 학교 등						
특수학교 특수학급						
보직교사						
장학사 교육연구사						
담임교사						
3. 합계						
4. 확인 날인						
구분	소속	직위	성명	날인		
평정자				(인)		
확인자				(인)		

- * 이 서식은 엑셀로 작성된 평정프로그램에서 인쇄한 출력물로 제출함
- * [근무기관], [근무기간], [평정대상기간] : 가산점 종류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적을 것
 - [근무기간]과 [평정대상기간]은 다를 수 있음
 - 일 평정은 2009.1.1. 이후 평정부터 적용
- * 평정자는 반드시 대상자의 자료를 철저히 확인하고 평정할 것
- * 평정자, 확인자 : 19쪽 참조

〈서식 6.2〉

실적 가산점 평정표

(2025.3.31.자 명부작성용)

1. 대상자						
소속		직위		성명		날인
						(인)
2. 직무연수실적 평정						
근무기관	연수기관	연수기간	연수과정명	연수시간	평정점	
3. 기타실적 평정						
종류	근무기관	근무기간	실적연도	실적수	평정기준	평정점
학폭대응						
교육연구대회						
영재교육						
발명교육						
기능경기대회						
학력향상						
청소년단체						
경로효행						
기술자격						
4. 평정점 합계(2+3)						
5. 확인 날인						
구분	소속		직위		성명	날인
평정자						(인)
확인자						(인)

- * 이 서식은 엑셀로 작성된 평정프로그램에서 인쇄한 출력물로 제출함
- * 평정자는 반드시 대상자의 자료를 철저히 확인하고 평정할 것
- * [평정기준], [평정점] : 월 단위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월·일로 기재할 것
- * 평정자, 확인자 : 19쪽 참조

〈서식 6.3〉

농어촌경력 가산점 평정표

(2025.3.31.자 명부작성용)

1. 대상자									
소속				직위		성명		날인	
								(인)	
2. 경력 가산점 평정									
종류	근무경력기간	급지	근무기관	근무기간	평정대상		기간 (월,일)	평정점	평정점 (합계)
					시작일	종료일			
농어촌 학교									
창원 과학고									
산업 수요 등									
3. 확인 날인									
구분	소속			직위		성명		날인	
평정자								(인)	
확인자								(인)	

* 이 서식은 엑셀로 작성된 평정프로그램에서 인쇄한 출력물로 제출함

* 평정자는 반드시 대상자의 자료를 철저히 확인하고 평정할 것

* [평정기준], [평정점] : 월 단위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월·일로 기재할 것

* 평정자, 확인자 : 19쪽 참조

2025 평정업무 처리요령

부 록

[부록]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시행 2024. 3. 1.] [대통령령 제33528호, 2023. 6. 13., 일부개정]

교육부(교원정책과-초중등교원) 044-203-648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의 경력,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 등의 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 25.>

제2조(적용대상) ①이 영은 다음 각호의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중 근무성적평정(교사의 경우에는 다면평가,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 결과의 합산을 포함한다)에 관한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7. 5. 25.>

1. 각급학교의 교감(유치원의 원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그가 근무하는 학교 또는 이와 동등급학교의 교장(유치원의 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증을 받은 자
2. 각급학교의 교사로서 그가 근무하는 학교 또는 이와 동등급학교의 교감의 자격증을 받은 자
3.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에 달한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교감·교사·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② 수석교사에 대해서는 이 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 10. 25.>

③ 제1항에서 “동등급학교”라 함은 교원의 자격증제도에 있어서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11. 10. 25.>

제2장 경력평정

제3조(평정의 기준) 경력평정은 당해 교육공무원의 경력이 직위별로 담당직무수행과 관계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평정의 기초) 경력평정은 당해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평정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기록카드의 기재사항의 정확여부를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5조(평정자와 확인자) 경력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가 정한다.

제6조(평정의 시기) 경력평정은 매 학년도(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이하 같다)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신규채용·승진·전직 또는 강임된 자가 있거나 상위자격을 취득한자가 있는 때에는 그때부터 2개월 이내에 정기평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평정한다. <개정 2007. 5. 25., 2015. 12. 31.>

제7조(경력종류) 경력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나눈다.

제8조(경력의 평정기간) 기본경력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경력으로서 평정시기로부터 15년을 평정기간으로 하고, 초과경력에는 기본경력전 5년을 평정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 5. 25.>

제9조(평정대상 경력의 종별과 그 등급) 평정대상 경력은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교육연구경력 및 기타 경력으로 하되, 그 경력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경력별 평정점) ① 기본경력 및 초과경력의 등급별 평정점은 별표 2와 같다.
② 경력평정점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수점이하는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제11조(경력의 기간 계산) ① 경력평정의 평정기간 중에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 또는 정직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재직기간으로 보아 평정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0. 2. 23., 2001. 7. 7., 2005. 2. 25., 2005. 7. 27., 2011. 11. 30., 2012. 11. 6., 2018. 9. 18., 2023. 6. 13.>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휴직기간 전부

가.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원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나. 법 제44조제1항제2호·제4호·제7호·제7호의2 및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 다. 법 제44조제1항제6호의 사유(상근으로 근무한 경우만 해당한다)로 인한 휴직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 가. 법 제44조제1항제5호 및 제8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 나. 법 제44조제1항제6호의 사유(비상근으로 근무한 경우만 해당한다)로 인한 휴직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해제기간
- 가. 법 제4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해당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
 - 2)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 나. 법 제4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 다. 법 제4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1) 법 제4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소속 교육기관의 장 등이 법 제51조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 경우
 - 나) 해당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
 - 다)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한 징계처분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 2) 법 제4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를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를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와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했으나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② 경력평정에 있어서 평정경력기간은 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일 단위로 계산한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5 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4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평정경력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7. 5. 25., 2014. 11. 4.>

[제목개정 2012. 11. 6.]

제12조(평정의 채점) 경력평정의 채점은 기본경력 평정점수와 초과경력 평정점수를 합산하여 행한다.

제13조(평정표) ①경력평정의 평정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경력평정표를 사용하여 평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표는 평정자와 확인자가 서명날인하고, 평정자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평정결과의 보고) 확인자는 경력평정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경력평정표에 기록하여 평정후 10일이내에 평정대상자의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30.>

제15조(평정결과의 공개) 경력평정의 결과는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제3장 근무성적평정 등 <개정 2007. 5. 25.>

제1절 교감·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근무성적평정 <신설 2007. 5. 25.>

제16조(평정의 기준) ①교감·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이하 “교감등”이라 한다)의 근무성적의 평정은 당해 교감등의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를 평가한다. <개정 2007. 5. 25.>

② 근무성적평정자는 평정대상자로 하여금 평정대상기간동안의 업무수행실적에 대하여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자기실적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야한다. <개정 2007. 5. 25., 2015. 12. 3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실적평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 5. 25.>

④ 근무성적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시 다음 각호의 기준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대상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자기실적평가서를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25.>

1. 직위별로 타당한 요소의 기준에 의하여 평정할 것
2. 평정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평정할 것
3.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장하도록 할 것
4. 평정대상자의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할 것

제17조(평정표) ① 근무성적평정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제23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정요소별 평정점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제23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정요소별 평정점을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3. 28.]

제18조(평정자와 확인자)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정한다.

제19조(평정의 시기) 근무성적평정은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5. 12. 31.>

제20조(평정의 예외) ① 교감등이 휴직, 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평정단위 학년도 중 2개월 미만을 근무한 경우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5. 25., 2015. 12. 31., 2016. 12. 30.>

② 교감등이 평정단위 학년도의 10개월을 초과한 연수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외의 기관에의 파견으로 인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이 있는 때까지 파견전 2회의 근무성적평정의 평균을 당해 교감등에 대한 평정으로 갈음한다. <개정 2007. 5. 25., 2015. 12. 31.>

③ 교감등이 2개월이상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연수외의 사유로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파견 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 또는 파견되는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16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개정 2007. 5. 25.>

④ 교감등이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때에는 당해 교감등의 근무성적평정표를 지체없이 그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25.>

⑤ 교감등이 신규채용되거나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2개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감에서 교사로 강임된 사람이 교감으로 다시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이전의 교감 직위에 있어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즉시 평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25., 2016. 12. 30.>

⑥ 교감등이 상위의 교원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그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에 상위의 교원자격 취득전의 평정을 참작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25.>

⑦ 교감등이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된 해당 학년도 평정외의 평정은 전직되기 전의 직위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해당 평정으로 한다. 다만,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의 경우에는 교감등의 직위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해당 평정으로 한다. <개정 2002. 6. 25., 2007. 5. 25., 2015. 12. 31.>

제21조(평정점의 분포비율) ① 교감등의 근무성적은 평정결과가 다음 각 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무성적평정점에 해당하는 자가 없거나 그 비율 이하일 때에는 제4호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3호에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07. 5. 25.>

1. 수(95점 이상) 30퍼센트
2. 우(90점 이상 95점 미만) 40퍼센트
3. 미(85점 이상 90점 미만) 20퍼센트
4. 양(85점 미만) 10퍼센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점의 분포비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정자 및 확인자는 소속 평정대상자의 직위별로 평정분포 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③ 평정대상 교감등의 근무성적 총평정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25.>

제22조(평정의 채점) ① 교감등의 근무성적의 평정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평정자의 평정점과 확인자의 평정점을 각각 50퍼센트로 환산한 후 그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개정 2007. 5. 25.>

② 확인자가 교감등의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에는 근무성적평정확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7. 5. 2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확인위원회는 근무성적평정확인자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하되, 그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설치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3조(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 ① 교감등의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에는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조정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7. 5. 25.>

② 조정위원회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 단위기관별로 둔다. 다만, 초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등급학교의 교감의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 단위기관외에 교육장 소속하에 둘 수 있다. <개정 2007. 5. 25.>

③ 조정위원회는 평정대상자의 상위직공무원중에서 그 설치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5인 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그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가 된다.

제24조(근무성적평정의 조정) ①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평정대상 교감등의 평정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5. 25.>

1. 평정대상 교감등 전원의 분포비율
 2. 소속기관간 및 보조기관간의 균형
 3. 기타 근무성적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조정위원회의 설치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위원회에 대하여 이의 재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평정결과의 보고) 제14조의 규정은 교감등의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보고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 5. 25.>

제26조(평정결과의 공개)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최종 근무성적평정점을 알려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7. 5. 25.]

제27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활용) 교감등의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전보·포상등 인사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25.>

제28조(특별근무성적평정) ①「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특별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 1. 4., 2007. 5. 25.>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근무성적평정 실시의 방법·시기 및 횟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제2절 교사의 근무성적평정 등 <신설 2007. 5. 25.>

제28조의2(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의 실시 등) ① 교사에 대하여는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교사의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에 관하여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각각의 결과를 합산한다. <개정 2015. 12. 31.>

- ②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하되, 교사의 자기실적평가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7. 5. 25.]

제28조의3(평정표 등) ① 근무성적평정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다면평가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르며,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표는 별지 제4호의3

서식에 따른다.

②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무성적평정표 및 다면평가표의 요소별 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본조신설 2007. 5. 25.]

제28조의4(평정자 등) ①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정하고, 다면평가자는 제2항에 따라 근무성적의 확인자가 선정한다. <개정 2016. 12. 30.>

② 근무성적의 확인자는 평가대상자의 동료 교사로서 제4항제1호에 따른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 이상을 다면평가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13.>

1. 평가대상자가 15명 이하인 경우: 3명
2. 평가대상자가 16명 이상 20명 이하인 경우: 4명
3. 평가대상자가 21명 이상 25명 이하인 경우: 5명
4. 평가대상자가 26명 이상 30명 이하인 경우: 6명
5. 평가대상자가 31명 이상 35명 이하인 경우: 7명
6. 평가대상자가 36명 이상인 경우: 8명

③ 근무성적의 확인자는 근무성적의 평정자를 위원장으로 하고, 평가대상자의 동료 교사 중 3명 이상 7명 이하를 위원으로 하는 다면평가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정한다. <신설 2015. 12. 31., 2016. 12. 30.>

④ 위원회는 다면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정한 업무 처리 기준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 12. 30.>

1. 다면평가자의 선정기준 마련
 2. 제28조의7제2항에 따른 다면평가점 산출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업무
 - 가. 정성(定性)평가에 따른 다면평가 평가지표 중 학습지도와 관련한 평가지표(영양·보건·전문상담 또는 사서 교사 등 학생에 대한 수업이 주된 업무가 아닌 평가대상자에 대한 평가지표로 한정한다)의 추가·삭제 및 수정
 - 나. 정량(定量)평가에 따른 다면평가 평가지표의 추가·삭제 및 수정
- ⑤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 결과의 합산은 근무성적의 평정자와 확인자가 행한다.

〈개정 2015. 12. 31., 2016. 12. 30.〉

[본조신설 2007. 5. 25.]

제28조의5(평정 등의 예외) ①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의 예외에 관하여는 제2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 교사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때에는 그 교사의 근무성적평정표와 다면평가표,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표를 지체 없이 그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5. 25.]

제28조의6(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의 분포비율) ① 근무성적평정점과 다면평가점을 합산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이하 “합산점”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 없거나 그 비율 이하일 때에는 제4호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3호에 가산할 수 있다.

1. 수(95점 이상) 30퍼센트
2. 우(90점 이상 95점 미만) 40퍼센트
3. 미(85점 이상 90점 미만) 20퍼센트
4. 양(85점 미만) 10퍼센트

② 평정대상 교사의 합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5. 25.]

제28조의7(평정 등의 채점) ① 근무성적의 평정점은 평정자가 100점 만점으로 평정한 점수를 20퍼센트로, 확인자가 100점 만점으로 평정한 점수를 40퍼센트로 환산한 후 그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60점 만점으로 산출한다. 〈개정 2015. 12. 31.〉

② 다면평가점은 다면평가자가 수업교재 연구의 충실성 등 정성평가의 방법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점수를 32퍼센트로, 주당 수업시간 등 정량평가의 방법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점수를 8퍼센트로 각각 환산한 후 그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40점 만점으로 산출한다. 〈개정 2015. 12. 31., 2016. 12. 30.〉

③ 합산점은 근무성적평정점과 다면평가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산출한다.

[본조신설 2007. 5. 25.]

제28조의8(합산점 조정) ① 교사의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의 결과를 합산할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야 한다.

② 제23조제2항 본문에 불구하고 중학교 또는 이와 같은 등급학교 및 초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등급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를 승진후보자명부작성 단위기관 외에 교육장 소속하에 둘 수 있다.

③ 합산점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 5. 25.]

제28조의9(결과의 보고 등에 관한 준용) ①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의 결과를 합산한 때에 그 결과 보고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하되, 근무성적의 확인자는 근무성적 평정표와 다면평가표,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표를 모두 평정대상자의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평정점과 다면평가점을 합산한 결과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하여는 제26조 및 제27조를 각각 준용하되, 제26조의 최종 근무성적평정점은 최종 합산점으로 본다.

③ 교사의 특별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 5. 25.]

제4장 연수성적의 평정

제1절 총칙

제29조(평정의 구분) 교육공무원의 연수성적평정은 교육성적평정과 연구실적평정으로 나눈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연수성적평정은 교육성적평정만으로 한다. <개정 2007. 5. 25., 2020. 2. 28.>

제30조(평정자와 확인자) 연수성적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정한다.

제31조(평정의 시기 및 평정표) ① 연수성적의 평정은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거나 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시기에 실시한다. <개정 2015. 12. 31.>

② 연수성적평정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2절 교육성적평정

제32조(교육성적평정) ① 교육공무원의 교육성적평정은 직무연수성적과 자격연수성적(당해 직위 또는 별표 1에 의하여 가경력으로 평정되는 직위에서 방송통신대학교 초등교육과를 졸업하고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교사자격기준에 따라 상위자격을 취득한 경우나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교사자격기준에 따라 상위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성적을 말한다)으로 나누어 평정한 후 이를 합산한 성적으로 한다. <개정 2000. 2. 28., 2001. 1. 29., 2002. 6. 25., 2007. 5. 25., 2008. 2. 29., 2013. 3. 23.>

② 직무연수성적의 평정은 당해 직위에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연수기관에서 10년 이내에 이수한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성적을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환산한 직무연수환산성적 및 직무연수이수 실적(교장·장학관·교육연구관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자는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평정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이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 전의 직위 중의 이수한 직무연수(교육전문직원경력에 있는 교감은 교감자격증을 받은 후의 직무연수에 한하고, 교육전문직원은 교감등의 직위에서 이수한 직무연수에 한한다)를 포함하여 평정하며,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는 직무연수성적평정의 대상이 되는 직무연수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2. 6. 25., 2007. 5. 25., 2008. 2. 29., 2013. 3. 23.>

③ 자격연수성적의 평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연수성적에 대한 평정은 승진대상직위와 가장 관련이 깊은 자격연수성적하나만을 평정대상으로 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교장자격연수성적
2.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교감자격연수성적
3.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당해 직위 또는 교원의 직위에서 받은 자격연수성적중 최근에 이수한 자격연수성적

④ 직무연수성적 및 자격연수성적의 평정점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 <개정 2000. 2. 28., 2002. 6. 25.>

1. 직무연수성적
 - 가. 교장·장학관·교육연구관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자 : 6점
 - 나. 교감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자 : 18점(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 1회에 대한 연수성적의 평정점은 6점으로 한다)
2. 자격연수성적 : 9점

제33조(교육성적의 평정점) ①교육성적은 다음 계산방식에 의하여 평정하되, 교육성적이 만점의 8할 미만(교육성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일 때에는 그 성적을 만점의 8할로 하여 평정한다. 다만, 교육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일 때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 6. 25., 2007. 5. 25.>

1. 직무연수성적평정점
 - 가. 교장·장학관·교육연구관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자 : $6\text{점} \times \text{직무연수환산성적} / \text{직무연수성적만점}$

나. 교감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자 : 6점×직무연수환산성적/직무연수성적만점 + 6점×직무연수횟수(2회에 한한다)

다. 직무연수성적은 다음 표에 따라 환산한다.

직무연수성적	직무연수환산성적
95점 초과	100점
90점 초과 ~ 95점 이하	95점
85점 초과 ~ 90점 이하	90점
85점 이하	85점

2. 자격연수성적평정점=9점-(연수성적만점-연수성적)×0.05

② 자격연수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자격연수가 분할 실시되어 그 성적이2 이상인 때에는 이들 성적을 합산 평균하여 자격연수성적으로 평정한다.

③ 직무연수성적 및 자격연수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 그 성적이 평어로 평가되어 있는 때에는 다음의 성적으로 평정한다. <개정 2000. 2. 28.>

1. 최상위 등급의 평어 : 만점의 90퍼센트

2. 차상위 등급의 평어 : 만점의 85퍼센트

3. 제3등급이하의 평어 : 만점의 80퍼센트

④ 자격연수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 당해 직위 또는 별표 1에 의하여 가경력으로 평정되는 직위에서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하였거나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한 자격연수성적은 다음 표에 의하여 평정한다. <개정 2001. 1. 29., 2002. 6. 25., 2008. 2. 29., 2013. 3. 23.>

성적	평정점
A 학점 이상	만점의 90퍼센트
B 학점 이상	만점의 85퍼센트
D 학점 이상	만점의 80퍼센트

제3절 연구실적평정

제34조(연구실적평정) 교육공무원의 연구실적평정은 연구대회입상실적과 학위취득실적으로 나누어 평정한 후 이를 합산한 성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 25.>

제35조(연구대회입상실적평정) ①연구대회입상실적평정은 해당 직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이 전직을 한 경우에는 전직하기 전의 직위에서 입상한 연구실적을 포함하여 평정한다. <개정 2001. 1. 29., 2002. 6. 25., 2007. 5. 25., 2008. 2. 29., 2012. 11. 6., 2013. 3. 23., 2020. 2. 28.>

1. 국가·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개최하는 교육에 관한 연구대회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전국규모의 연구대회(이하 “전국규모연구대회”라 한다)에서 입상한 연구실적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청·지방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등이 개최하는 교육에 관한 연구대회로서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시·도규모의 연구대회(이하 “시·도규모연구대회”라 한다)에서 입상한 연구실적

② 연구대회입상실적이 2인 공동작인 경우에는 각각 입상실적의 7할로 평정하고, 3인공동작인 경우에는 각각 그 입상실적의 5할로 평정하며, 4인이상 공동작인 경우에는 그 입상실적의 3할로 평정한다.

제36조(학위취득실적평정) 교육공무원이 해당 직위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학위 중 하나를 평정대상으로 하고, 교육공무원이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 이전의 직위 중의 학위취득실적을 포함하여 평정한다. 다만, 제33조제4항에 따라 자격연수성적으로 평정된 석사학위취득실적은 평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2. 6. 25., 2007. 5. 25., 2020. 2. 28.>

제37조(연구실적평정점) ① 연구실적평정점은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 5. 25.>

② 연구대회입상실적은 다음 표에 따라 평정하되, 한 학년도에 2회 이상의 연구대회입상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점수가 부여되는 1회의 연구대회입상실적만을 반영한다. <개정 2007. 5. 25., 2016. 12. 30.>

입상등급	전국규모연구대회	시·도규모연구대회
1등급	1.50점	1.00점
2등급	1.25점	0.75점
3등급	1.00점	0.50점

③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실적은 다음 표에 의하여 평정한다. 이 경우 직무와 관련 있는 학위의 인정기준은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정한다. <개정 2002. 6. 25., 2007. 5. 25.>

박사	직무와 관련 있는 학위	3점
	그 밖의 학위	1.5점
석사	직무와 관련 있는 학위	1.5점
	그 밖의 학위	1점

제4절 평정결과의 보고 및 공개

제38조(평정결과의 보고) 제14조의 규정은 연수성적평정의 결과보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9조(평정결과의 공개) 제15조의 규정은 연수성적평정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장 승진후보자명부

제40조(명부의 작성) 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승진될 직위별로 나누어 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를 작성하되, 경력평정점 70점, 근무성적평정점 100점, 연수성적평정점 15점을 각각 만점으로 평정하여 그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승진후보자의 순서대로 등재하며, 그 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2. 28.>

②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을 사용하여 명부를 작성하되, 경력평정점 70점, 합산점 100점, 연수성적평정점 30점을 각각 만점으로 평정하여 그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승진후보자의 순서대로 등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직위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평정점의 평균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정한 평정점은 해당 평정단위 학년도의 평정점으로 본다. <개정 2015. 12. 31.>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 이내 평정점 × 34/100) + (최근 1년전 2년 이내 평정점 × 33/100) + (최근 2년전 3년 이내 평정점 × 33/100)

④ 제2항에 따른 합산점은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직위에서 평정한 합산점 중에서 평정대상자에게 유리한 3년을 선택하여 다음의 계산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합산점의 평균을 계산할 때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 및 다면평가점은 각각 해당 평정단위 학년도의 평정점 및 평가점으로 본다. <개정 2010. 4. 13., 2015. 12. 31.>

합산점 =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학년도의 합산점 × 34/100) +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두 번째 가까운 학년도의 합산점 × 33/100) +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세 번째 가까운 학년도의 합산점 × 33/100)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 또는 합산점(이하 “평정점등”이라 한다)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대상기간 중 평정점등이 없는 평정단위 학년도가 있는 때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평정대상기간에 불구하고 그 평정단위 학년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등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 학년도의 평정점등으로 한다. 이 경우 평정점등이 없는 평정단위 학년도 전의 평정점등이 없는 때에는 그 평정단위 학년도 전의 평정점등은 85점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정점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는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전문개정 2007. 5. 25.]

제41조(가산점) ① 교육공무원으로서 해당 직위에서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가산점이 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명부작성권자가 제40조에 따른 각 평정점의 합산점수에 가산점을 더하되, 전직을 한 경우에는 전직하기 전의 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교육 전문직원 경력이 있는 교감은 교감의 자격증을 받은 후의 가산점만을 말하며, 교육 전문직원은 교감등의 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만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개정 2001. 7. 7., 2007. 5. 25., 2012. 11. 6.>

② 가산점은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1. 7. 7.>

③ 공통가산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1. 7. 7., 2007. 5. 25., 2008. 2. 29., 2012. 11. 6., 2013. 3. 23., 2015. 12. 31., 2016. 12. 30.>

1.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연구학교(시범·실험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월 0.018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0.0006점). 이 경우 가산점의 총합계는 1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교육공무원으로 재외국민교육기관에 파견근무한 경력은 월 0.015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0.0005점). 이 경우 가산점의 총합계는 0.5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연수중 동 규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이수실적이 학점으로 기록·관리되는 경우에는 1학점당 0.02점. 이 경우 명부작성권자는 0.12점의 범위안에서 학년도별 상한점을 정할 수 있고, 1점의 범위안에서 가산점의 총합계를 정할 수 있다.

4. 교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응 관련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1항에 따라 교육감이나 그 밖의 명부작성권자가 부여하는 가산점 0.1점. 이 경우 가산점의 총합계는 1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상담

나. 학교폭력 발생 점검 및 실태조사

다. 학교폭력 대응 조치 및 사후관리

④ 제3항제4호의 가산점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응과 관련된 일년간의 실적 전체를 하나의 실적으로 보아 산정하며, 해당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2. 11. 6., 2013. 3. 23.>

⑤ 선택가산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에게 명부작성권자가 항목 및 점수의 기준을 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택가산점의 총합계는 10점을 초과할 수 없고, 그 기준은 평정기간이 시작되기 6개월 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25., 2012. 11. 6.>

1.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2. 읍·면·동지역의 농어촌 중 명부작성권자가 농어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한 지역의 학교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3. 그 밖의 교육발전 또는 교육공무원의 전문성 신장 등을 위해 명부작성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력이나 실적이 있는 경우

⑥ 명부작성권자는 가산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평정기간 중 2 이상의 가산점 경력 또는 실적이 중복하는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인정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공통가산점의 경우에는 제3항제1호에 따른 연구학교에 근무한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 한하고,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간 경력 또는 실적이 중복되어 그 중 하나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통가산점이 우선한다. <개정 2007. 5. 25., 2012. 11. 6.>

⑦ 가산점의 평정경력기간은 월수를 단위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일 단위로 계산한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5 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4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가산점 평정경력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7. 5. 25., 2012. 11. 6., 2014. 11. 4.>

⑧ 가산점의 평정은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거나 명부조정시기에 실시한다. <개정 2012. 11. 6., 2015. 12. 31.>

⑨ 가산점 평정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2. 11. 6.>

제42조(명부의 작성권자) ①명부작성권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한다. 다만,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명부작성권자는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이 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2023. 3. 28.>

제43조(명부의 작성시기) 명부는 매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개정 2015. 12. 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부작성권자는 교원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교육공무원의 소속기관별 또는 담당과목별로 명부에 분할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1. 1. 29., 2001. 7. 7.>

제44조(명부의 조정) 명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작성권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5. 25.>

1. 교육공무원의 전입이 있는 때
2.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평정을 하였거나, 제20조제2항·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 또는 다면평가를 한 때
3.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를 이수하였거나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실적의 인정을 받은 자가 있는 때
4.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 자격기준에 달한 자가 있는 때

제45조(동점자의 순위결정) ①명부의 작성에 있어서 동점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그 순위자를 결정한다.

1.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2. 현직위에 장기근무한 자
3. 교육공무원으로서 계속 장기근무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서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명부작성권자가 그 순위를 결정한다.

제46조(명부의 제출) 명부작성권자는 그가 작성한 명부를 작성시기로부터 10일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명부를 조정한 경우에 조정된 부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제47조(명부에서의 삭제) 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강임·전직되거나 명부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명부에서 이를 삭제하고 그 사유를 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25.>

제48조(명부순위의 공개) 명부작성권자는 명부에 등재된 교육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본인의 명부 순위를 알려 주어야 한다.

부칙 <제33528호, 2023. 6.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의 기간 계산에 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중등)

[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24-20호][개정 2024.07.0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원의 자격연수대상자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필요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의 가산점 평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교육공무원과 중등학교(보건교사 포함) 및 특수학교 교원에게 적용한다.

1. 교장 자격증을 소지한 교감
2. 교감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
3.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에 달한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4.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에 달한 교감 및 교육전문직원
5.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에 달한 교사 및 교육전문직원

제3조(가산점) ①가산점은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으로 구분한다.

② 교육공무원으로서 해당 직위에서 제2장 및 제3장에 따라 가산점이 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명부작성권자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0조에 따라 합산한 점수에 가산점을 더하되, 전직을 한 경우에는 전직하기 전의 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교육전문직원 경력에 있는 교감은 교감의 자격증을 받은 후의 가산점만을 말하며, 교육전문직원은 교감 등의 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만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제2장 공통가산점

제4조(경력가산점) 경력가산점은 다음 각 항에 따라 평정한다.

- ①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연구학교(시범·실험학교 포함)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월 0.018점(일 0.0006점)으로 한다.
- ② 재외국민교육기관에 교육공무원으로 파견되어 근무한 경력은 월 0.015점(일 0.0005점)으로 한다.

제5조(실적가산점) 실적가산점은 다음 각 항에 따라 평정한다.

- ① 직무연수 이수 실적은 1학점(15시간)을 0.02점으로 평정하고, 연 0.08점을 초과

할 수 없다. 해당 직무연수는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른 직무연수 중 같은 규정 제8조의3에 따라 학점으로 기록·관리되는 직무연수를 말한다. 단,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2조에 따라 교육성적으로 평정한 직무연수 실적은 가산점 평정에서 제외한다.

②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실적은 연 0.1점으로 평정하고, 다음 각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1.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상담
2. 학교폭력 발생 점검 및 실태조사
3. 학교폭력 대응 조치 및 사후관리

제3장 선택가산점

제6조(경력가산점) 경력가산점은 다음 각 항에 따라 평정한다.

① 연구학교 등에 근무한 경력은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1. 교육감이 지정한 연구학교(시범·실험학교 포함)에 근무한 경력은 월 0.0129점(일 0.00043점)으로 한다.
2. 교육실습협력학교에 근무한 경력은 월 0.0129점(일 0.00043점)으로 한다.
3. 교육실습대용학교(부설학교 포함)에서 2004.2.29.까지 근무한 경력은 월 0.018점(일 0.0006점)으로 한다.
4. 꿈나르미학교에 근무한 경력은 월 0.0129점(일 0.00043점)으로 한다.

② 국내 교육기관 등에 교원으로 파견되어 근무한 경력은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1.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서 교육과 관련된 업무(교재연구, 강의, 특강, 연수 등)를 직접 수행한 경력은 월 0.017점(일 0.00057점)으로 한다.
2. 학생교육원 남해분원에 근무한 경력은 월 0.017점(일 0.00057점)으로 한다.
〈개정 2020.7.13.〉
3. 낙동강학생교육원에 근무한 경력은 월 0.017점(일 0.00057점)으로 한다.
4. 낙동강학생교육원 진산분원에 2014.1.1. 이후 근무한 경력은 월 0.017점(일 0.00057점)으로 한다. 〈개정 2020.7.13.〉
5. 경상남도교육감소속 교육기관(연수, 연구, 수련, 행정 등)에 파견 근무한 경력은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2016.2.28. 이전은 월 0.0105점(일 0.00035점)

2016.3.1. 이후는 월 0.015점(일 0.0005점)

6. 우포생태교육원에 근무한 경력은 월 0.015점(일 0.0005)으로 한다.
7. 낙동강학생교육원 칠북분원에 2019.3.1. 이후 근무한 경력은 월 0.017점(일 0.00057점)으로 한다. <신설 2020.7.13.>
8. 특수교육원에 2023.3.1. 이후 근무한 경력은 월 0.017점(일 0.00057점)으로 한다. <신설 2022.7.11.>

③ 도서·벽지 교육기관에 근무한 경력은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1. 1997.2.28. 이전
 가지역에 근무한 경력은 월 0.125점(일 0.00417점)
 나지역에 근무한 경력은 월 0.096점(일 0.00320점)
 다지역에 근무한 경력은 월 0.066점(일 0.00220점)
 라지역에 근무한 경력은 월 0.037점(일 0.00123점)
2. 1997.3.1.부터 1997.12.31.까지
 가지역에 근무한 경력은 월 0.084점(일 0.00280점)
 나지역에 근무한 경력은 월 0.068점(일 0.00227점)
 다지역에 근무한 경력은 월 0.050점(일 0.00167점)
 라지역에 근무한 경력은 월 0.034점(일 0.00113점)
3. 1998.1.1. 이후
 가지역에 근무한 경력은 월 0.042점(일 0.00140점)
 나지역에 근무한 경력은 월 0.034점(일 0.00113점)
 다지역에 근무한 경력은 월 0.025점(일 0.00083점)
 라지역에 근무한 경력은 월 0.017점(일 0.00057점)
4. 2006.3.1. 이후 타시·도 전입자는 제3호를 준용한다.

④ 준벽지 학교에 근무한 경력은 월 0.0084점(일 0.00028점)으로 평정하고, 준벽지 학교는 다음과 같다.

1. 2014.1.1. 이후 지세포중학교, 원동중학교, 미조중학교, 화개중학교, 거창중학교신원분교장, 야로중학교, 야로고등학교
2. 2016.1.1. 이후 미리벌중학교
3. 2021.3.1. 이후 거창덕유중학교 <신설 2020.7.13.>

⑤ 농어촌학교 등에 근무한 경력은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1. 1995.3.1.~1998.2.28.(가산점인정자명부등재자)와 1998.3.1.~2008.12.31.
 농어촌학교에 근무한 경력은 월 0.015점(일 0.0005점)
2. 2009.1.1.~2013.12.31.

- 가지역에 근무한 경력은 월 0.015점(일 0.0005점)
 나지역에 근무한 경력은 월 0.012점(일 0.0004점)
3. 2014.1.1. 이후
 가지역에 근무한 경력은 월 0.018점(일 0.0006점)
 나지역에 근무한 경력은 월 0.015점(일 0.0005점)
 다지역에 근무한 경력은 월 0.012점(일 0.0004점)
4. 2016.1.1. 이후
 라지역에 근무한 경력은 월 0.009점(일 0.0003점)
5. 농어촌의 급지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설정하고, 학교 등의 급지는 교육감이 지정한다.
 가지역: 시·군의 면지역 학교 중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
 나지역: 시의 면지역 학교, 군의 읍·면지역 학교, 시군 접경지역 학교 중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
 다지역: 시의 읍지역 학교, 시의 면지역 학교 중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학교, 이미 지정된 동지역 학교(단, 장유지역, 문산중, 진양고 제외)
 라지역: 교육환경이 열악한 동지역 학교
6. 창원과학고등학교에 2011.3.1. 이후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월 0.015점(일 0.0005점)으로 평정한다.
7.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에 2011.9.1. 이후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월 0.015점(일 0.0005점)으로 평정한다.
- ⑥의1. 교육활동 우수교사 경력은 2016.3.1. 이후 월 0.005점(일 0.00016점)으로 평정 하고,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2017.3.1부터 폐지)
1. 인사자문위원회에서 교사 정원의 15%(소수절상)를 추천한다.(단, 교사정원이 11~15명인 학교는 3명 추천)
 2.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교사 정원의 10%(소수절상)를 선정한다.
 3. 교육감이 승인한다.
- ⑥의2. 도심지역 학교에 교사로 근무한 경력은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1. 도심지역이란 ③도서벽지, ④준벽지, ⑤농어촌학교 등에 근무한 경력가산점이 없는 지역을 말한다.
 2. 2017.3.1부터 월 0.004점(일 0.00013점)으로 하고 상한점은 0.48점으로 한다.
 3. 특례1. 2017.2.28. 기준으로 농어촌학교 등 경력가산점이 1.25점에 도달한 교사가 농어촌 학교 등에 근무한 경력도 2017.3.1.부터 2020.2.29.까지 3년간만

도심지역 경력가산점을 평정한다.

4. 특례2. 농어촌학교 등 경력가산점이 1.25점에 도달한 전문교과 교사가 특성화 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에 근무한 경력도 2호와 같이 평정한다.

⑦ 특수학교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월 0.018점(일 0.0006점), 특수학급을 직접 담당한 경력은 월 0.009점(일 0.0003점)으로 평정한다. 단, 1994.9.22. 이전에 특수학급을 담당한 경력과 1994.9.22. 이전에 특수학급을 맡아 1995.02.28.까지 담당한 경력은 월 0.018점(일 0.0006점)으로 한다. 또, 2017.1.1. 이후에 특수학교에 근무한 경력 및 특수학급을 직접 담당한 경력은 특수학교 교사에게만 적용하고, 중등학교 교사 및 중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특수학교 교사 자격을 취득한 교사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보직교사 근무 경력은 월 0.021점(일 0.0007점)으로 평정한다.

⑨ 장학사·교육연구사 근무 경력은 월 0.015점(일 0.0005점)으로 평정한다.

⑩ 담임교사 등의 경력은 월 0.00595점(일 0.000198점)으로 평정하고, 해당경력 및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2012.9.1. 이후 담임교사 경력 중 통산 3년을 초과하는 경력
2. 2016.3.1. 이후 부장교사 경력 중 제8항 경력으로 평정하지 아니한 경력,
단, 2012.9.1.이후 담임교사, 2016.3.1.이후 부장 또는 기숙사 사감 경력 중 통산 3년을 초과하는 경력
3. 2016.3.1. 이후 기숙사 사감 경력, 단 2012.9.1.이후 담임교사, 2016.3.1. 이후 부장 또는 기숙사 사감 경력 중 통산 3년을 초과하는 경력
4. 기숙사는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운영하는 국·공립학교의 기숙사로 한다.

2018.3.1.이후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으로 등록된 기숙사를 운영하는 국·공립 학교의 기숙사로 한다. <신설 2018.3.1.실적부터>

2023.3.1.이후 경상남도교육청 내에서 기숙사를 운영하는 국·공립 학교의 기숙사로 한다. <신설 2023.3.1.실적부터>

5. 사감 경력 인정 인원은 3월에 보고된 수용 학생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정한다.

학생수 50명 미만 기숙사는 3명

학생수 50명 이상 100명 미만 기숙사는 4명

학생수 100명 이상 150명 미만 기숙사는 5명

학생수 150명 이상 200명 미만 기숙사는 6명

학생수 200명 이상 기숙사는 7명

6. 사감 경력 인정 대상자는 학교장이 선정하고, 교육감이 승인한다.
7. 2022.3.1.이후 낙동강학생교육원, 진산분원, 칠북분원에 파견된 교사로서 위스쿨 학급당 1명의 담임 경력 <신설 2021.7.12.>
- ⑪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한 경력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고 6조 ②항과 합산하여 0.75점을 초과할 수 없다.(2017.3.1.이후 실적)
1. 월평정점 0.0084점 일평정점은 0.0003점으로 하고 상한점은 0.4점으로 한다.
2. 전입 후 3년 이내의 연속 근무 경력 중 최초 1년을 공제하고 남은 기간을 대상으로 평정한다.

제7조(실적가산점) 실적가산점은 다음 각 항에 따라 평정한다.

- ① 교육연구대회 입상 실적은 도 단위 대회 3위 이상 입상 실적에 대하여 등급의 구별 없이 연 0.05점으로 평정하되, 연구대회입상실적이 2인 공동작인 경우에는 각각 입상실적의 7할로 평정하고, 3인 공동작인 경우에는 각각 그 입상실적의 5할로 평정하며, 4인 이상 공동작인 경우에는 그 입상실적의 3할로 평정한다. 단,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5조에 따라 연구대회 입상 실적으로 평정한 실적은 제외한다.
- ② 영재교육 실적은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연 0.1점으로 평정한다. 단, 2013년, 2014년, 2015년에 한하여 1년 미만 실적이 인정된 사람은 월 0.0084점(일 0.0003점)으로 평정한다.
 1.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기관에서 운영하는
 2. 영재교육원의 강사로 임명되어
 3. 영재학급 담임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4. 영재학급 수업을 연 34시간 이상 담당한 교사
- ③ 발명교육 실적은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연 0.05점 또는 연 0.1점으로 평정한다. 단, 2013년, 2014년, 2015년에 한하여 1년 미만 실적이 인정된 사람은 월 0.0084점(일 0.0003점)으로 평정한다. <개정 2021.3.1.이후 실적>
 1. 지도교사 인정 요건은 다음과 같다.
 -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기관에서 운영하는
 - 나. 영재교육원 발명영재학급에서
 - 다. 수업을 연 34시간 이상 담당하고
 - 라. 실적물 전시회(지도교사 성명이 포함된 공문이 경상남도교육청에 보고된 것)를 연 1회 이상 운영하고

마. 다음 제2호의 가, 나, 다 요건의 학생을 직접 지도한 교사의 가산점은 연 0.1점으로 평정하고, 가, 나, 라 요건의 학생을 직접 지도한 교사는 0.05점으로 평정한다.〈개정 2021.3.1.이후 실적〉

2. 학생 인정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8.〉

가. 영재교육원 발명영재학급의 학생이거나

나. 영재교육원 발명영재학급 지도교사가 소속된 학교의 재학생으로서

다.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장려상 또는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동상 이상을 수상한 학생에 한한다. (2021.2.28.이전 실적)

라. 경남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금상을 수상하고, 동일연도에 동일학생 동일 작품으로 출원하여,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등록한 학생에 한한다. (2021.2.28.이전 실적)

마.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우수상 또는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우수상 이상 (특별상 포함)을 수상한 학생에 한한다. (2021.3.1. ~ 2022.2.28. 실적)

바. 경남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금상 또는 전국학생발명품경진대회 장려상 또는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장려상을 수상한 학생에 한한다. (2021.3.1. ~ 2022.2.28. 실적)

사.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우수상 또는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은상 이상 (특별상 포함)을 수상한 학생에 한한다. (2022.3.1. 이후 실적)

아. 경남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금상 또는 전국학생발명품경진대회 장려상 또는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동상을 수상한 학생에 한한다. (2022.3.1. 이후 실적)

3. 특허권 등은 출원연도별로 1건만 인정한다. (2021.3.1. 폐지)

4. 특허권 등은 등록연도의 실적으로 보고 평정한다. (2021.3.1. 폐지)

5. 단,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5조에 따라 연구대회 입상 실적으로 평정한 실적은 제외한다.

④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 학생 지도 실적은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1. 금메달은 연 0.1점

2. 은메달은 연 0.05점

3. 동메달은 연 0.025점

4. 단, 동일연도에 2개 이상의 메달을 획득한 경우 상위 하나만으로 평정한다

5. 단,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5조에 따라 연구대회 입상 실적으로 평정한 실적은 제외한다.

⑤ 학력향상 유공 실적은 연 0.05점으로 평정한다. 단, 1년 미만 실적이 인정된

사람은 월 0.00417점으로 평정한다. (2015.3.1. 폐지)

⑥ 청소년단체 지도 실적은 연 0.04점으로 평정한다. 단, 1년 미만 실적이 인정된 사람은 월 0.0034점으로 평정한다. (2015.1.1. 폐지)

⑦ 경로효행 실적은 연 0.1점으로 평정한다. (2012.3.1. 폐지)

⑧ 기술자격 취득 실적은 다음 각 항에 따라 평정하되, 1회로 한정하고, 자격증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상위 자격증 하나만으로 평정한다.

1. 다음 실적은 0.3점으로 평정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분야 자격증(기술사, 기능장, 기사1·2급, 산업기사, 기능사1급, 서비스1급·1단) 또는 선박직원법에 따른 해기사면허증(1~3급)을 소지하고, 실업계고교에서, 관련 있는 과목의 수업을 직접 담당하거나 담당했던 실적에 한한다. 단, 공업계 이외의 실업계는 1994.9.22. 이후 수업 담당자에 한함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분야 자격증(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무자동화산업기사)〈개정 2024.7.8.〉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자격증은 2025.3.1. 이후 취득부터 적용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사무분야자격증(워드프로세서 1급, 2012.1.1. 이후에 취득한 워드프로세스 단일등급, 컴퓨터활용능력 1·2급) 〈개정 2017.7.10.〉

2. 다음 실적은 0.1점으로 평정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분야 자격증(기능사2급 및 등급이 없는 경우, 서비스2·3급) 또는 선박직원법에 따른 해기사면허증(4~6급)을 소지하고, 실업계고교에서, 관련 있는 과목의 수업을 직접 담당하거나 담당했던 실적에 한한다. 단, 공업계 이외의 실업계는 1994.9.22. 이후 수업 담당자에 한함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분야 자격증(정보처리기능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개정 2024.7.8.〉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자격증은 2025.3.1.이후 취득부터 적용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사무분야 자격증(워드프로세서 2·3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개정 2017.7.10.〉

제8조(기타) 그 밖에 명부작성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력 및 실적이 있는 경우에 가산 항목 및 점수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택가산점의 총합계는 10점을 초과할 수 없고, 이를 시행할 때에는 사전에 예고하여 시행한다.

제4장 계산 등

제9조(합산 상한점) 경력가산점의 합산상한점은 [별표1]과 같고, 실적가산점의 합산상한점은 [별표2]와 같다.

제10조(중복평정의 금지)

- ① 공통가산점 경력과 선택가산점 경력이 중복될 경우에는 공통가산점 경력이 우선한다.
- ② 동일기간에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마다 유리한 경력 하나만 평정한다.
 - 1. 연구학교 경력, 교육실습협력학교 경력, 꿈나르미학교 경력
 - 2. 파견 근무 경력, 도서·벽지 근무 경력, 준벽지 근무 경력, 농어촌 등 근무 경력
 - 3. 도서·벽지 근무 경력, 특수교육 경력
 - 4. 도서·벽지 근무 경력, 장학사·교육연구사 경력
 - 5. 준벽지 근무 경력, 특수교육 경력
 - 6. 농어촌학교 근무 경력,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근무 경력
 - 7. 농어촌학교 등 근무 경력, 특수교육 경력
 - 8. 보직교사 경력, 담임교사, 기숙사 사감경력
- ③ 동일학년도에 실적과 실적이 중복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마다 유리한 실적 하나만 평정한다.
 - 1. 여러 연구대회 입상 실적
 - 2. 영재교육 실적, 발명교육 실적
 - 3. 전국기능경기대회 여러 입상 실적

제11조(경력기간의 계산) 경력기간은 월수를 단위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일수를 단위로 계산하고, 경력가산점은 경력별로 소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 자리까지 산출한다.

제12조(평정 시기) 가산점의 평정은 매년 2월 말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명부조정이 있을 경우에 실시한다.

부칙(2015.5.15. 인사위-171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1] 경력가산점일람표에서 합산상한점 1.8은 다음과 같이 연차적으로 적용한다.

1. 2017.2.28. 평정할 때에는 2.0점
2. 2018.2.28. 평정할 때에는 1.9점
3. 2020.2.28. 평정할 때에는 1.8점

부칙(2016.5.25. 인사위-18630)

제1조(경과조치) 제6조(경력가산점)⑤항5호의 다음 해당사항은 연차적으로 적용한다.

1. 김해지역(장유, 진영지역 제외)에 근무한 경력 월 0.009점(일0.0003점)부여(2017.3.1.부터)
2. 장유지역 농어촌 급지 해제(2020.3.1.)
3. 진주혁신도시 이설학교(문산중, 진양고) 농어촌 급지 해제(2017.3.1)

부칙(2016.8.26. 인사위-307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7.10. 인사위-2017-0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7.17. 인사위-2018-0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7.13. 인사위-2020-0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7.12. 인사위-2021-0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22학년도 시행안 예고) 이 안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장 공통가산점

제4조(경력가산점) 경력가산점은 다음 각 항에 따라 평정한다. <시행일: 2022.4.1.>

- ①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연구학교(시범·실험학교 포함)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월 0.018점(일 0.0006점)으로 한다.
- ② 재외국민교육기관에 교육공무원으로 파견되어 근무한 경력은 0.015점(일 0.0005점)으로 한다.

제3장 선택가산점

제6조(경력가산점) 경력가산점은 다음 각 항에 따라 평정한다.

①연구학교 등에 근무한 경력은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시행일: 2022.4.1.>

1. 교육감이 지정한 연구학교(시범·실험학교 포함)에 근무한 경력은 월 0.0129점(일 0.00043점)으로 한다.
2. 교육실습협력학교에 근무한 경력은 월 0.0129점(일 0.00043점)으로 한다.
3. 교육실습대용학교(부설학교 포함)에서 2004.2.29.까지 근무한 경력은 월 0.018점(일 0.0006점)으로 한다.
4. 꿈나르미학교에 근무한 경력은 월 0.0129점(일 0.00043점)으로 한다.

경력가산점 일람표<시행일: 2022.4.1.>

조.항.경력	구분	월평정점	소요기간	상한점		
4.①.연구학교(공통)	교육부장관지정	0.018	55.6월(5년)	1.00	1.00	1.00
6.①.연구학교(교육감) 등	연구학교	0.0129	77.6월(7년)	1.00		
	꿈나르미학교	0.0129	77.6월(7년)	1.00		
	교육실습협력학교	0.0129	45.0월(4년)	0.58		
	교육실습대용학교	0.018	32.3월(3년)	0.58		
4.②.파견근무(공통)	재외국민교육기관	0.015	33.4월(3년)	0.50	0.50	1.80
6.②.파견근무(국내)	한국교육방송공사	0.017	23.5월(2년)	0.40		
	남해학생야영수련원	0.017	23.5월(2년)	0.40		
	낙동강학생교육원	0.017	23.5월(2년)	0.40		
	진산학생교육원	0.017	23.5월(2년)	0.40		
	우포생태교육원	0.015	20.0월(2년)	0.30		
	교육기관파견	0.015	20.0월(2년)	0.30		
		0.0105	28.6월(3년)			
	특수교육지원센터	0.0084	60월(5년)	0.40		

부칙(2022.7.11. 인사위-2022-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경력가산점 일람표

조.항.경력	구분	월평정점	소요기간	상한점		
4.①.연구학교(공통)	교육부장관지정	0.018	55.6월(5년)	1.00	1.00	1.00
6.①.연구학교(교육감) 등	연구학교	0.0129	77.6월(7년)	1.00		
	꿈나르미학교	0.0129	77.6월(7년)	1.00		
	교육실습협력학교	0.0129	45.0월(4년)	0.58		
	교육실습대용학교	0.018	32.3월(3년)	0.58		
4.②.과건근무(공통)	재외국민교육기관	0.015	33.4월(3년)	0.50	0.50	1.80
6.②.과건근무(국내)	한국교육방송공사	0.017	23.5월(2년)	0.40		
	남해분원	0.017	23.5월(2년)	0.40		
	낙동강학생교육원	0.017	23.5월(2년)	0.40		
	진산분원	0.017	23.5월(2년)	0.40		
	칠북분원	0.017	23.5월(2년)	0.40		
	특수교육원	0.017	23.5월(2년)	0.40		
	우포생태교육원	0.015	20.0월(2년)	0.30		
	교육기관과건	0.015	20.0월(2년)	0.30		
		0.0105	28.6월(3년)			
	특수교육지원센터	0.0084	60월(5년)	0.40		
6.③.도서벽지	다지역(덕유교육원)	0.025	36월(3년)	0.90	0.90	
	라지역	0.017	36월(3년)	0.60		
6.④.준벽지	(14.1.준벽지)	0.0084	35.7월(3년)	0.30	0.30	
6.⑤.농어촌학교 등	(95.3.가지역)	0.018	69.5월(6년)	1.25	1.25	
	(09.1.나지역)	0.015	83.4월(7년)	1.25		
	(14.1.다지역)	0.012	104.2월(9년)	1.25		
	(16.1.라지역)	0.009	138.9월(12년)	1.25		
	(11.3.창원과학고)	0.015	83.4월(7년)	1.25		
	(11.9.마이스터고)	0.015	83.4월(7년)	1.25		
6.⑥.교육활동우수교사	16.3.부터	0.005	15회(15년)	0.06	0.06	
6.⑥의2.도심지역 학교 등	17.3.부터	0.004	120월(10년)	0.48	0.48	
6.⑦.특수교육	(69.3.특수학교)	0.018	55.6월(5년)	1.00	1.00	1.00
	(73.3.특수학급)	0.009	111.2월(10년)	1.00		
6.⑧.보직교사	71.1.부터	0.021	59.6월(5년)	1.25	1.25	1.75
6.⑨.장학사·연구사		0.015	50월(5년)	0.75		
6.⑩.담임교사 등	12.9.부터	0.00595	85월(3+7년)	0.50	0.50	

※ 특수교육원(월 0.017점): 2023.3.1.이후 경력부터 적용

[별표2] 실적가산점 일람표

조.항.실적	인정기간	연평정점	소요기간	상한점		
5.①. 직무연수(공통)	해당직위	0.08	(13년)	1.00	1.00	1.00
5.②. 학교폭력(공통)	13.1.부터	0.10	10회	1.00	1.00	1.00
7.①. 교육연구대회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5조 의거)	16.1.부터	0.05	4회(4년)	0.20	0.50	0.80
7.②. 영재교육	06.3.부터	0.10	(2년)	0.20		
7.③. 발명교육	06.3.부터	0.10	(2년)	0.20		
	21.3.부터	0.10	(2년)			
		0.05	(4년)			
7.④. 전국기능경기대회		0.10	금 2회(2년)	0.20		
7.⑤. 학력향상	10.3.~15.2.	0.05	5회(5년)	0.25		
7.⑥. 청소년단체	10.3.~14.12.	0.04	1년 10월	0.074	0.174	
7.⑦. 경로효행	10.3.~12.2.	0.10	1회	0.10		
7.⑧. 기술자격		0.30	1회	0.30	0.30	
		0.10	1회	0.10		

부칙(2023.7.10. 인사위-2023-0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26학년도 시행안 예고) 이 안은 2026년 3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제3장 선택가산점

제6조(경력가산점) ⑥의2.

5. 거제, 양산 지역의 농어촌 지역 학교 일부를 해지하여 도심지역 학교로 전환한다.<시행일: 2026.3.1.>

거제(6개교): 거제상문고, 거제중앙고, 고현중, 거제중앙중, 계룡중, 신현중

양산(7개교): 물금고, 범어고, 증산고, 신주중, 물금중, 양산중앙중, 금오중

부칙(2024.7.8. 인사위-2024-0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5. 교육공무원 평정업무 처리요령

2024년 11월 인쇄
2024년 11월 발행



발행인 :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발행처 : 경상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인쇄처 : 문성인쇄사 ☎282-9922